

2009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행정안전부

목 차

I. 2009년 지방공기업 예산운영방향	1
1. 2009년 재정운영 여건	3
2. 2009년 지방공기업의 예산운영 방향	3
II.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의 성격과 개선사항	7
1.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의 성격	9
2. 2009년 예산편성기준의 주요 개선사항	10
III.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공통)	13
1.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원칙	15
2.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체계	26
3.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27
가. 지방직영기업	27
나. 지방공사·공단	37
IV. 사업별 예산편성기준	57
V. 행정사항	81
VI. 예산과목구조 및 과목해소	87
VII. 예산편성서식 및 참고자료	205

I . 2009년 지방공기업 예산운영방향

1 2009년 재정운영 여건

- ① '09년 이후 국내경제는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의 본격 추진과 지속적인 규제개혁 등을 통한 적극적인 투자 촉진 및 고용 창출로 소비·투자 등 내수시장이 회복되어 성장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②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재정의 실용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과도한 지출소요가 있거나 불합리한 관행이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절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 배분 운영 전망
- ③ 이에 지방공기업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세출부문에 대한 투자수요 증대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운용이 요구

2 2009년 지방공기업의 예산운영 방향

① 지방공기업의 자율적·상시적 경영혁신 강화

- 성과관리, 예산사업 성과평가 등을 통한 지출 구조조정 및 경상경비 절감 등으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최대한 억제
- 연봉제, 사장경영성과계약제, 직원의 성과관리 등 성과에 따른 보상 체계 시스템을 내실 있게 운영
 - 우수종사자에 대한 포상, 인사우대 및 부실경영자 제재
- 외부 회계감사 및 통합 경영공시제도 등을 내실 있게 운영

② 지방공기업 경영의 자율역량 및 책임성 강화

- 직영기업 관리자 및 공사공단 임원 등 경영진의 전문성 및 책임성 제고
 - 관련분야 유경험자 또는 전문가를 우선 임명하고, 임기제 실시 추진
 - 공사·공단의 사장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확대 운영
- 지방공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임·직원에 대한 직무 및 소양교육 강화
 - 전문기관·우수 민간기업·국내 대학 및 대학원 위탁교육, 해외훈련, 국내외 선진기업 시찰 등을 통한 경영개념 고취 및 신경영기법의 적극 도입
 - 전보제한, 기업행정직렬 신설 등 전문화촉진 제도 보완·발전
- 노사간 합의를 통한 퇴직연금제의 조기 도입으로 민간부문 선도

③ 지방공기업의 적정사업 유지로 재정건전성 강화

- 민간부문과의 중복투자 및 사경제영역 사업 추진 엄격 제한
- 부채축소 및 수익성 강화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 공기업 설립 및 투자사업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 철저
 - 공기업 설립기준에 의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신중히 결정
- 지자체간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광역과 기초간 설립전 협의를 통해 광역·기초간 또는 자치단체 산하 지방공사·공단간 공동사업 수행으로 자치단체 공동발전 도모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기준 도달사업 공기업 전환
 - 기준 미달사업의 원가산정 지도 등 공기업 전환 바탕 마련

④ 예산편성·집행의 투명성 강화

- 제3섹터 법인의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사·공단·공단의 공통 기준(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및 ‘민관공동출자법인’ 예산과목 준용하도록 지도감독 강화
-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 반영
 - 성과미흡 사업, 시민단체·감사원·자치단체·의회 등에서 지적된 사업 중 성과가 낮거나 예산낭비사례로 판정된 사업은 축소·폐지
- 공기업별로 고유업무와 핵심사업 중심으로 재원을 중점 배분
- 비핵심 사업분야에서 대상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외부위탁(Outsourcing) 또는 지출 구조조정 노력 강화
- 기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아웃소싱을 제외하고는 자회사 신설 및 관련법인에 대한 출자는 최대한 억제
 - 자회사 설립시에는 출자타당성 실시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거쳐 관련예산을 반영
- 유사·중복사업을 사업목표 중심으로 통폐합·단순화
- 전자조달시스템 활용, 조달·구매예산은 수의계약 축소, 경쟁 확대 등을 통해 관련예산 절감
- 전년도 예산불용·이월·이용·전용 등의 규모와 원인을 파악하여 실제로 필요한 최소 소요 반영

⑤ 지방공기업의 공공성 기능 강화

- 사업별 특성에 맞는 여성채용 목표 설정 운영 및 채용·승진 등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방안 강구
 - 육아보육시설의 설치·확대 등 여성근무환경 개선

- 장애인력 및 고령자 채용 확대를 위한 사업별 특성에 맞는 직종·직무의 발굴 및 직장내 근무환경 개선 및 차별대우 방지 방안 강구
 - 장애인 또는 고령자 채용에 따른 정부장려금의 자체 직원복리후생 지원 예산으로의 활용 적극 검토(공단의 경우에는 자치단체 세입조치 지양)
- 지방대 출신의 채용 확대 방안 강구 및 지방대 총장 등에 의한 추천 채용제 활성화
 - 신규채용시에 지역·연령 등의 제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는 방안 강구
- 창출된 이익의 지역 공익사업 등에 기부하는 방안 적극 검토
- 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 제품 구매 확대
- 민원전자창구 운영, 일괄민원처리시스템 구축, 고객헌장 제정 및 실천, 관심도가 높은 예산정보 제공 등 고객중심의 경영체제 구축
- 필수유지업무제도시행에 따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된 지하철 등 공기업의 경우 노사간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시행

Ⅱ.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의 성격과 개선사항

1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의 성격

□ 근거 및 적용대상

가. 지방직영기업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편성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전년도 7. 31까지 통보(법 제23조)

나. 지방공사·공단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공사·공단의 예산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전년도 6.30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법 제 66조의2, 제76조), 자치단체장은 이를 근거로 7.31까지 작성하여 해당 공기업에 통보(시행령 제60조)

다. 지방공사·공단의 출자법인(제3섹터)

- '07년도부터 지방공사·공단의 공통기준 및 '민관공동출자법인' 예산 과목을 준용(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

□ 기준의 성격 및 적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과 연계하여 지방공기업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제시
 - 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의 형평성 및 지방공기업간 균형 유지
 - 예산운영의 건전성·효율성·생산성을 도모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경영실적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
- 본 기준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지방공기업 재정운영의 기본이 되며, 본 기준 범위내에서 자체적인 여건과 특성을 가미하여 세부지침을 마련·시행(7.31까지)

- 지방공사·공단은 인건비 등 예산편성 공통기준에 대해 적극적인 노사간 협의를 통하여 본 기준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반영

2 2009년 예산편성기준의 주요개선사항

- 종전 예산편성기준이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새정부 출범에 따른 재정 운영의 방향과 기조를 반영
 - 유가,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인한 성장둔화로 세입환경은 어려운 반면, 세출수요는 증대할 것으로 예상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국가공기업 예산편성지침과의 연계성 유지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과 연계한 자율적 예산절감 유도

- 자체 예산절감계획 및 절감된 예산의 투자재원 활용계획 수립
- 유사 동종 공기업과 비교하여 임원연봉이 과다 책정된 경우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정

② 책임경영체제에 부합되도록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 업무추진비 집행용도 등 집행기준 구체화(클린카드 사용 등)
-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 도입시 이에 따른 기준 제시(유사수당 통폐합 등)

③ 성과지향적 예산운용을 위한 예산의 자율성 강화

- 총인건비 범위내에서 속인적 수당을 제외한 전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의 기본급화를 허용하되, 유사 수당의 추가신설은 금지

- 지방공사·공단인 개인인센티브성과급에 대한 사장(이사장)의 결정권한을 확대하고, 사장·임원인센티브성과급 및 기관인센티브성과급의 지급 기준은 별도 '08년도 경영평가실시계획에 의하도록 함
- 일반회계(하수도특별회계)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부담하는 하수도 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범위인 하수도 수입금의 1~2%를 자치단체 실정을 감안하여 실 소요경비로 부담할 수 있도록 개선

4 지방공사·공단 인건비 예산에 대한 통제기능 강화

- 인건비 인상율을 초과하여 편성 집행한 경우 익년도 인건비 인상율 책정은 전년도 인건비 인상율 기준을 적용하여 인건비를 산정
- 그간 총인건비에서 제외한 호봉승급분을 총인건비에 포함하는 한편, 정원을 초과한 현원에 대한 인건비 및 인력증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별도 편성 운영하고, 집행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집행

5 지방직영기업의 일부 예산과목 변경

- 기존 예산과목 중 일반회계 예산과목과 일부 상이한 예산과목 개선

구 분	현 행	개 선
과목명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급량비, 피복비, 임차료	사무관리비
	공공요금및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공무원의료비	공공운영비

- 지방직영기업과 관련이 없는 일부 예산과목 삭제
 - 징수교부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의료 및 구료비, 입영장정지원비 등

6 기타 변경사항

- 「경영평가미실시 기관」 및 「경영평가결과 ‘부진’등급 기관 중 경영진단 대상기관」은 성과급 지급대상 에서 제외하는 한편, 혁신평가를 경영평가에 통합됨에 따라 기존 혁신인센티브성과급은 폐지
- 지방공단의 대행사업에 따른 수입금의 납부 시기는 설립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탄력적(일, 주, 월, 분기 단위 등)으로 자율적용토록 개선
- 지방직영기업의 공무원단체업무(상수도본부) 및 계약업무담당자(시도, 시군구)에 대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지급
- 지방공사·공단의 계약업무담당자에 대해 월 80,000원씩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경비편성기준에 포함하는 한편, 기존 혁신부서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지급대상에서 삭제

Ⅲ.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공통)

1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원칙

가. 독립채산의 원칙이행

- 지방공기업은 그 설립목적인 경영의 합리화에 의한 지방자치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당해 사업의 수입으로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 공기업의 사업수행과 지자체 또는 국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수반되는 비용은 그 원인자에게 최대한 부담토록 하여야 함

(1) 일반회계 등의 경비부담(지방직영기업)

□ 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5조

- 경비의 성질상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비 또는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성질상 그 경영에 수반한 수입만으로 충당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
 -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요금 등의 공급가격이 발생원가 이하로 책정되거나 발생원가 이하로 유지됨에 따른 발생원가와 공급가격과의 차액
 - 지역개발 등에 따른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그 시설유지비 및 외부차입금의 상환원리금
 - 주택 및 토지개발사업 완료후 관리기관에의 인계 또는 분양 완료시까지 소요되는 기본경비
 - 궤도·하수도·의료사업, 기타 사업별로 조례가 정하는 경비 등

□ 경비부담절차

-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다음연도에 부담하여야 할 경비에 대하여 전년도 관련 결산자료 등을 첨부 2008. 9.15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거나 요금조정 등 적절한 조치 강구
- 일반회계에 경비를 부담시킬 경우 부담기준에 적합한 예산과목에 계상 하되 일괄적인 계상 금지

□ 예산편성

- 관리자는 2009년 일반회계부담경비를 2008. 9.15까지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요구
- 정상적운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구분하여 예산 계상
 - 정상적운영보조금 : 사업예산의 영업외수입중의 일반회계부담금 또는 타특별회계부담금에 계상
 - 자본보조금 : 자본예산의 자본잉여금수입중 건설보조금 등에 계상

(2)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지방공사·공단)

□ 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77조, 영 제63조, 제67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업무를 지방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사업실시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용역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인건비 및 부대경비

- 사업의 종료후 결산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이전까지 사이에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 기타 사업집행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 지방공단으로부터 역무를 제공받는 자는 역무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함

□ 경비부담절차

- 공사·공단은 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체결
 - 위탁계약 체결시 사업별 위탁계약 체결 방식의 적극 활용으로 공단의 효율적 경영운영 도모
 - 사업위탁에 따른 자금집행계획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제출, 해당기관은 다른 자금에 앞서 이에 대한 자금을 우선 지원
 -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비용정산 시행
- ※ 자금집행계획에는 반드시 당해사업의 집행에 관련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함
- 특히 지방공단의 경우 위탁비용 청구시 감가상각비를 제외함으로써 손익계산서 작성시 적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 예산편성

- 위탁대행사업비(역무수수료 포함) 수익은 사업수익의 위탁대행사업 수입에 계상
 - 위탁대행수수료율은 계약체결시 결정
- 위탁대행사업비용은 위탁대행사업수익에 대응한 수입액 범위내에서 영업비용의 해당비목별로 계상

나. 발생주의원칙 준수

□ 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16조, 제64조의2

-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계리하여야 하며
 - 수익 및 비용의 연도소속 구분은
 - 수익은 실현주의원칙에 따라 그 수익을 조사결정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여야 하며, 이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속한 기간이 속하는 연도에 포함
 - 비용은 발생주의원칙에 따라 지급을 수반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채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함
 - ※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을 행하여야 할 날이 속한 연도
- 지방공사·공단은 회계거래의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

□ 예산편성

- 세입예산은 재화 및 서비스공급의 공급량과 요율·공급가격조정계획을 감안 요금수입 등 사업수익을 적정하게 계상하고
 - 이자수입 등 각종 영업외수입은 현실성있게 적정 계상
 - 일반회계 또는 타회계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회계간 경비부담구분 원칙에 의해 계상
 - 지방채(사채)수입은 발행승인을 받은 것에 한하여 계상
- 세출예산은 예산편성단계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 과다발생 등 재원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편성
 - 경상비는 영기준(Zero Base) 예산활용, 편성단계에서부터 예산절감 적극 추진

-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정확한 예측수요에 의한 사업비를 책정하고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등을 적극 검토 추진하되, 계속사업, 미완공사업의 마무리위주로 사업추진
- 법령에 근거한 「재정투·융자심사」 등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은 반드시 사전적 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편성
- 부채감축을 위한 채무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상환원리금 등 법정 필수경비는 연간 소요액을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

다.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계상

□ 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25조

-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에 관하여는 예산없이 그 발생된 경비를 계상할 수 있음
 - 감가상각비, 자산감모비, 제품·상품의 매출원가
 - 자산의 정리 또는 변동에 수반하는 장부가액의 삭제금액
 - 발생품 등의 사용시의 발생품 장부가액, 부채성 충당금계정으로의 편입액
 - 기타 발생주의의 회계기준에 의하여 대응계상되는 손비 등
- 지방공사·공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

□ 예산편성

- 지방공기업의 예산은 일반회계예산과는 달리 단순한 수지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업연도의 사업운영을 위한 예상손익계산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이를 잘 나타내기 위하여는 비현금지출경비를 계상하여야 함

- 감가상각비는 각 자산별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유보재원 등 보전재원을 최대한 확보
- 이익잉여금 등 보전재원은 예산총칙의 「자본적수입 및 자본적지출」에 명시하고, 자본적수입의 예산과목에는 반영하지 않음
- 기타 경비는 사업별로 합리적으로 편성

〈 보 전 재 원 〉

- 보전재원은 공기업내부에 유보되어 있는 자금으로 자본적 수입의 부족을 충당하여 주는 재원으로서
 - 감가상각비 등 현금지출이 수반되지 않은 비용에 의한 당년도 손익 계정 유보자금과 이월이익잉여금 및 당년도 이익잉여금(당기순이익)이 이에 해당
- 예산계상시는 그 금액에 해당되는 현금예금, 즉 순이월현금(예산이월에 상당하는 현금예금제외, 미수금·미지급금을 가감)이 있는지 확인 후 그 범위내에서 계상
 - ※ 전년 및 당년도말 예상대차대조표의 「유동자산-유동부채=순운전자금」의 범위내로 하되, 차년도중 회수가 불확실한 미수금, 예산이월재원, 일정량 보유필요저장품은 제외

라. 지방공기업의 여유금 운용 및 출자범위

□ 근 거 : 지방공기업법 제17조, 제54조, 제69조, 제76조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사업을 위하여

- 일반회계·특별회계에서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 출자

- 지방공사·공단에 자본금의 전액 또는 50%이상 출자

※ 지방공단은 전액 출자

○ 지방공사·공단의 업무상 여유금 운용은

- 국채·지방채의 취득, 한국은행 기타금융기관에의 예입

• 금융기관에의 예입은 원금이 확실히 보장되는 조건하에 내부적으로 자금운용규정을 마련하여 금융상품 선정

※ 정기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 기업어음(CP), 채권형(국채, 지방채) 수익증권, RP(환매조건부채권), MMF(단기금융상품/CD, CP 구성상품 가능)

□ 지방공사·공단의 출자

○ 지방공사·공단의 업무상 여유금은 통상적인 기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자금을 제외한 모든 자금을 통칭(이익잉여금, 투자사업비 등 포함)

○ 이 여유금의 운용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 지방공사·공단은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특정사업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그 성격상 수익성만을 추구할 수 없는 바,

- 주식이나 사채에의 투자는 지방공기업 설립취지에 위배되므로 이를 금지하여 지방공기업 나아가서는 출자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 공사는 당해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 가능(지방공기업법 제54조)

- 당해 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현재의 업무를 아웃소싱 등의 목적이 아닌 단순히 사업의 외연확장 수단으로의 자회사 신설 또는 출자는 최대 억제

- 자회사 설립시 당해 공사는 업무의 효율성, 아웃소싱 효과 등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를 자체적으로 거쳐야 함

※ 출자한도 : 공사의 직전연도말 자본금의 10%이내

마. 지방채 및 사채발행

□ 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68조, 동법시행령 제62조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정상적인 운전자금충당, 회전기금의 재원충당, 건설 또는 개량비에 충당하거나 유사사업의 매수자금으로 필요한 경우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부담으로 지방채발행 가능

※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지방공기업 사업의 투자재원확보와 지역 개발을 위한 기금 조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음

- 지방공사·공단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 차관을 할 수 있음(일정기준 초과시 사전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필요)

□ 발행방법

- 사채 및 공단체(차입포함)는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은 범위내에서 발행(순자산액의 4배이내/단,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은 10배이내)

- 행정안전부장관 사전 승인대상

- 직전년도 부채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경우
- 최근 3년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 사채발행예정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 지방채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고 투·융자심사를 거친사업에 한하여 발행승인신청

- 지방채 및 사채·공단채 발행시 자체재원인 보전재원의 정확한 산출로 기재수입을 최소화
-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영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바. 이익잉여금 처분

□ 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17조, 제67조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으며,
- 출자를 받은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이익상황에 따라 예산에 의하여 전년도의 이익금의 일부를 그 출자한 회계에 납부할 수 있음(공영개발사업의 경우 전출가능)
- 공사는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익준비금 등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이를 적립한 후 잉여가 생긴 때에는 이익을 배당하고 잔여금액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립

□ 이익잉여금 처분방법

- 결산시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작성할 때에 지방공기업법 제37조, 제38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이익금을 처분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이익정산금(납부금, 전출금, 배당금)을 계상하여 의회(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이익배분
- 지방직영기업은 자본예산의 「기타자본적지출」항에 「이익정산금」 과목으로 결산시 승인받은 납부금 또는 전출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등에 대한 정산금으로 계상·집행

- 지방공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금운영계획상 「배당금」 계정과목에서 집행

※ 공영개발사업의 경우 재해복구,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 다른 지방직영기업에의 경비지원, 재정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의 사용인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가능(지방공기업법 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2)

- 공영개발사업에 있어 향후사업계획이 없거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어 재투자를 하지 않고 사실상 특별회계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놓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의 폐지 또는 사업의 청산 방안을 강구

사. 에너지절약용역사업 지원

□ 근 거

-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활성화방안(기획재정부)
- 에너지기술개발 및 대체에너지 보급 및 용자계획(지식경제부)
-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환경부)

□ 주요내용

- 에너지절약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활용한 절약시설투자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강화 및 성과배분계약에 의한 에너지절약 확산

□ 집행방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규정을 준용

- 에너지절약사업용역비를 총용역 부가계약금액으로 하고 연차별 절약액을 연차별 계약금액으로 지급
- 계상과목 및 대상 : 일반운영비에 계상(공사·공단은 공공요금 및 제세) 또는 연료비에 계상
 - 공공요금 :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상환금
 - 연 료 비 :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냉난방시설 교체 설비투자상환금
- 집행방법 :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상환금(또는 시설교체 투자상환금)은 공공요금의 절약액(또는 시설교체에 따른 절약액) 범위내에서 집행 가능

2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체계

□ 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24조, 제25조, 제65조

-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은 그 사업의 운영계획과 기능에 따라 구분
 - 예산의 내용 : 예산총칙,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운영계획
 - 사업예산 : 수익적수입, 수익적지출
 - 자본예산 : 자본적수입, 자본적지출
 - 예산과목 : 관·항·세항·목으로 구분
- 지방공사·공단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및 예산은 직영기업에 준하여 작성

□ 예산편성방법

-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의 과목은 각 사업별로, 성질별로 분류한 것으로서 이는 예산편성의 통일성유지 및 공기업결산 및 경영분석의 기초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각 지방공기업에서는 기준에서 정한 「과목구분 및 해소」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 다만, 지방공사·공단의 경우에 본 기준에서 정한 과목이 사업의 성질에 맞지 않아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업회계기준 등을 참고하여 해당사업에 맞게 과목을 설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전에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야 함
- 상·하수도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계정을 구분(공통, 상수도, 하수도)하여 통합효과와 기능별 사업성과의 측정이 용이하도록 예산 편성

3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1) 지방직영기업

지방직영기업은 본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과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

- 세출예산 편성기준 및 조례를 적용

가. 인건비성 경비

□ 편성기준일

- 2008. 10. 1 현재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

□ 지급대상 및 방법

- 급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편성·지급
 -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거 편성·지급
- 복리성 인건비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에 정한 경비이외에 별도로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음
 -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 인건비는 반드시 법령에 지급근거가 있어야 하며, 법령에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지침에서 정하는 대로 따라야 하고 임의로 정하여 집행할 수 없음

□ 인건비의 타비목 전용금지

- 인건비 관련비목에 잉여재원이 발생하더라도 인건비 관련비목 상호간을 제외한 다른 비목 또는 세목으로 전용할 수 없으며, 다만, 다음 사유와 같이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용이 가능함
 - 조직축소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받기 위해 전용한 경우
 - 업무의 외부위탁에 따라 관련인건비를 위탁사업비로 전용하는 경우
 - 기타 공공요금 등 지출이 불가피한 경비에 부족이 발생하여 관리자가 특별히 전용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 연봉액 계상방법

- 연봉제 공무원의 연봉은 총액으로 인건비 과목의 101-01(기본급)에, 계약직공무원 급여는 101-08(기타직보수)에 계상·집행

□ 별도정원의 관리

-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에 의해 정원외 인원으로 한시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예산계상·집행

□ 복리성 인건비 편성기준

- 경비성격
 -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한 「2008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수당 업무 처리지침」에서 정한 비목 및 지급방법 등에 의해 편성·집행

나. 업무추진비

□ 일반집행지침

- 일반집행지침적용대상경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집행시 유의사항
 -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 집행 또는 물품의 구매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현금지출은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
 - 개신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의 영수증을 첨부하고
 - 현금으로 최종수요자에게 지출한 경우에는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 다만, 상대방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 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서를 현금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함
 -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음
 -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 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를 반드시 기재
 - 업무추진비를 자치단체장(관리자) 위주로 집행하여서는 안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지출할 수 없다
 - 개인명의로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각출성 성금

□ 경비별 편성기준 및 지급방법

(1) 직책급업무추진비

< 공무원의 직위별 당해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

○ 지급기준액

(단위 : 천원)

구 분	월 액	연 액
○ 1급 · 기 관 장 · 보조기관	750 700	9,000 8,400
○ 2~3급 · 기 관 장 · 보조기관	650 600	7,800 7,200
○ 4급 · 기 관 장 · 보조기관	400 350	4,800 4,200
○ 5급 · 시도과장 · 기 관 장 · 보조기관	350 150 100	4,200 1,800 1,200
○ 6급 · 기 관 장 · 보조기관	100 50	1,200 600

(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와 사업소장이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활동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 직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제반경비 >

- 경조사와 관련된 경비는 정부의 「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에 의한 기준에 맞게 집행하되 기관으로서 공적인 사항에 대하여만 집행
 - 축·조의금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하여야 함
- 단체장 홍보를 위한 광고비, 언론, 방송사등의 보도사례비 지급금지
-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내부 소속구성원에게도 집행가능
- 동문회비나 학위취득, 축하연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금지
- 편성기준
 - 상수도사업본부장

구 분	기 준 액(연액)	비 고
서 울	25,800천원	
부 산	23,400 "	
기타광역시	22,000 "	

- 상수도사업본부를 제외한 지방직영기업(시·도, 시·군의 본청에 설치된 경우)
 - 일반회계 시·도의 사업소장, 시·군의 실·국장 기준액 범위내에서 계상
- 상수도사업본부, 시·도, 시·군의 공기업특별회계소속 사업소장(4, 5급)
 - 일반회계의 사업소장(시·도, 시·군·구)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을 준용하되 급수인구 등을 감안하여 계상여부 및 금액규모는 관리자가 결정
 - ※ 5급인 사업소장도 4급과 동일 적용

(3)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을 위한 제경비 >

- 부서운영 공통경비 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음

- 실, 과, 소, 전체 직원의 사기양양 경비로 사용
- 과운영비
 - 자치단체 직제에 반영된 과·담당관실·팀·반 등 과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보조기관의 기본운영 경비
 - 과 운영을 위한 소규모 소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음

과 인원수	5인이하	15인 이하	30인이하	비 고
월 지급액	100천원	250천원	350천원	정원31인 이상1인 초과시 월 5천원추가

- 기관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무용품 구입 등을 일반운영비에서 추가 집행 가능

(4)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 >

- 연간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한다
- 동호인 취미클럽 지원은 취미클럽으로부터 행사계획 등을 제출받아 형평성 있게 지원하여야 한다
- 적용대상
 - 특별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의 본부 및 사업소
 - 시·도, 시·군·구의 공기업특별회계 설치조직(실·과 사업소)
 - ※ 공기업특별회계가 시·도, 시·군의 본청 실·과에 설치되어 일반회계와 함께 운영되는 경우, 특별회계 관리공무원이 일반회계의 정원가산금에 포함되어 있으면 공기업특별회계에 별도계상 불가
- 적용기준 : 소속공무원의 총정원수를 기준(2008.10. 1. 기준)

○ 기준액(1인당 연간금액)

- 시·도, 시·군·자치구의 본청, 서울·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정 원	100명까지	101~300명	301~600명	601~800명	801명이상
1인당기준액	80,000원	60,000원	45,000원	30,000원	15,000원

- 자치구가 아닌 구, 상수도사업본부 및 시·군의 사업소

정 원	100명까지	101~400명	401~1,000명	1,001명이상
1인당기준액	40,000원	30,000원	25,000원	20,000원

(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 >

- 축·조의금 집행 및 월정액 지급 금지
- 기관별 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하고, 경비의 목적에 따라 편성
- 기준액
 - 특별시·광역시의 상수도사업본부

구 분	기 준 액	비 고
서 울	130,000천원	
부 산	80,000천원	
대구·인천	70,000천원	
광주·대전·울산	60,000천원	

※ 상기기준을 준수하되 신규시설확장사업, 재해복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직급·유사조직에 계상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규모를 감안하여 편성 가능(직급·회계간 형평성고려)

- 상수도본부를 제외한 사업소 및 기타 지방직영기업

- 투자사업비의 규모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기준을 준수하여 편성

구 분	기 준 액	비 고
100억원미만	3,000천원	
100억원이상~500억원미만	4,000천원~5,000천원	
500억원이상	10,000천원	

(6)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구 분	대 상	지급액(1인/월)
① 공기업종사 공무원	○ 자치단체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종사 5급이하 공무원 ※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지급여부, 지급범위, 지급액(8만원 한도) 조정 가능	80,000원
	○ 자치단체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종사 청원경찰	30,000원
	○ 공영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써 5급이하 실무담당공무원 (사업소장, 과장 제외)	80,000원
② 요금과징 담당공무원	○ 상수도사업본부, 시군본청, 구청의 검침원 등 요금과징업무 실무담당공무원 (5급이하 공무원)	80,000원
③ 누수관련업무 담당공무원	○ 누수탐사, 누수수리업무 담당공무원 (5급이하공무원)	80,000원
④ 수도계량기 관리담당공무원	○ 계량기수급, 수선, 교체업무 직접담당공무원 (5급이하공무원)	80,000원
⑤ 경영평가 실무 담당공무원	○ 지방직영기업의 경영평가 담당공무원 (5급이하공무원)	80,000원
⑥ 예산·결산·계약 업무담당공무원	○ 상수도사업본부 본청 예산·결산·계약업무 담당공무원(5급이하 공무원)	80,000원
	○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결산·계약업무 직접담당공무원	80,000원
⑦ 공무원단체업무 담당공무원	○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단체업무 직접담당 공무원	80,000원

- 주) 1. 특정업무수행활동비와 일반회계의 대민활동비의 병급 불가. 단,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대민활동비와 병급 지급 가능
2. ①항의 공기업중사공무원 특수활동비와 ②·③·④·⑤·⑥·⑦항의 특수활동비는 병급가능
- ※ ②·③·④·⑤·⑥·⑦항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업무의 겹치시 병급불가 및 동일 업무를 업무분장 수행하더라도 주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에게만 지급 가능
3. 요금과징업무에 대해 포상금제를 시행하는 때에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 불가
4. 상수도사업본부 감사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감사담당공무원 지급 기준적용 가능
5. 하수도특별회계의 경우 ②, ③, ④항의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지급 가능
6. 팀장급 민간검침원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성격의 활동지원비(월 8만원 범위내 지급 가능)는 305-02(민간검침원 활동 지원비) 과목에 편성

다. 기타 집행기준

- 상수도사업본부 등에서는 필요한 경우 경상예산총액편성제도를 운영할 수 있음
 -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관계법령 및 2009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을 적용
- 홍보물은 발간의 필요성 재검토, 유사한 성격의 홍보물은 통폐합 발간하되,
 - 신문·방송·TV 등 광고는 기업목적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 실시하고, 일반운영비 과목에서의 보도사례금 집행불가
- 행사관련경비는 최대한 절약하여 편성하되 「행사운영비」, 「행사관련시설비」 과목에 계상
- 인건비·상환금은 다른 비목으로, 업무추진비는 다른 비목에서 「전용」 불가
- 지방공기업에서는 「당겨사용」을 할 수 없음
 - ※ 당겨사용 : 당해연도내의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함에 있어 부족이 생긴 경우 다음연도의 수입을 앞당기어 이에 충당·사용하는 것을 말함

- 지방공기업에서는 사업량의 증가로 인하여 경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당해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가수입의 상당한 금액을 그 증가수입에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에 보고
- 투자사업비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계상하되, 사업별로 사업시기, 사업규모 등 투자심사를 강화하여 예산 편성후 미집행으로 재원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 상환시기가 도래한 기존 채무상환액은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하여 연도내 조기상환으로 이자부담을 최대한 경감조치
 - 상환원금은 자본적지출의 고정부채상환금에, 지급이자 는 영업외비용의 지급이자 과목에 각각 계상
- 공영개발사업(도시개발공사 포함)에 있어 용지조성 및 주택건설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건설에 직접 투자되는 비용중 장기차입금에 대한 지급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은 자본적지출의 재고자산에 계상하여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
 - 지급이자 는 매출원가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수익비용에서 제외, 재고 자산에 포함함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회계절차를 개선

2) 지방공사·공단

가. 인건비성 경비

① 정원계상기준

- 각 법인에서 조정한 2008년말 정원을 기준으로 계상
 - 총인건비 산정시 정원은 2008년말 정원을 기준으로 하되, 정원감축 계획에 의거 2008년말까지 감축되는 인원의 인건비는 전액 삭감
 - 정원과 현원이 차이에 해당되는 인건비와 신규채용 등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는 '08년도말 보수체계 내에서 엄밀히 산정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사장(이사장)의 연봉액은 지방공기업 「CEO경영성과계약」 운영계획 및 「CEO업무성과평가」 실시계획(2006년 7월)에 따라 기존 연봉액 대비 △10%~+10%범위안에서 조정하되, 원칙적으로 CEO 업무성과 평가 등급에 의한 「연봉조정표」를 기준으로 조정
 - 경영성과 계약 이행실적 평가·경영평가·사장평가 결과에 따라 상향 또는 삭감 가능
 - ※ 사장(이사장)의 연봉책정은 지방자치단체 및 동종기관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하고, 과다 책정된 경우 자치단체장이 조정
- 2009년도 인건비를 인상함에 있어 임원은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정책 인상율, 임원을 제외한 연봉제 직원은 가율 적용
 - 연봉제 직원의 가율을 결정함에 있어 근무성적별(수, 우, 양, 가)에 따라 구체적인 인상율은 전체 인상율 범위내에서 자율 결정
 - ※ 지방공사·공단의 인건비 인상율은 하반기(11월중)에 별도 시달

② 일반계상원칙

- 2008년도 인건비 집행실적 수준에서 각 항목별 편성
 - 임금(제수당 포함) 및 복리후생적경비는 각 법인별로 자체보수규정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편성·지급
 - 원칙적으로 법령 및 자체규정에 지급대상·지급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인건비성 경비는 예산에 편성·지급할 수 없으나,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지침으로 정하여 주는 경비는 지침이 규정한 대로 편성·지급가능
- 2009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08년도 총인건비 예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구체적인 인건비 인상율 범위는 추후 시달('08.11월중)
 - 다만, '08년도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의 인건비 인상율을 초과하여 '08년도 예산을 편성·집행한 기관의 경우 초과분을 제외한 '08년도 총인건비를 기준으로 인건비 인상율을 적용하여 '09년도 총인건비를 산정
 - 총인건비는 모든 인건비와 인건비 항목 외에 계정과목 및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임직원의(정원외직원 제외)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
 - 잡급직원(직제상 정원외의 직원)의 인건비, 퇴직급여충당금, 성과급은 총인건비에서 제외
-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개인별·항목별 등 구체적인 증감은 법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새로운 수당 또는 복리후생비 신설은 억제하고, 속인적수당이 아닌 모든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을 기본급화하고자 할 경우 총인건비 한도내에서 설립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결정

③ 인건의 타비목 전용금지

- 인건비 관련비목에 잉여재원이 발생하더라도 인건비 관련비목 상호 간을 제외한 다른 비목으로 전용 불가. 다만, 다음 사유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용 가능
 - 자체경영혁신에 의한 조직축소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 절감액의 성과금지급 → 포상금으로 전용 후 지급
 - 공사의 업무를 외부 위탁하는 경우의 관련인건비를 위탁사업비로 전용하는 경우
 - 기타 공공요금 등 지출이 불가피한 경비의 부족이 발생하여 전용하는 경우로서 사장(이사장)이 특별히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 업무추진비, 행사비용 등으로의 전용은 불가

4 연봉액 지급비목

- 연봉대상자의 연봉액에 대한 예산계상은
 - 기본연봉액은 기본급, 부가되는 급여액은 제수당 또는 복리후생비에 편성
 - 경영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기관성과급 과목에 편성
- 계약직직원에 대한 임금은 기타직보수 등에 계상
- 연봉은 각 기관별 자체적으로 대상직위에 대하여 업무의 중요도, 책임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등급별로 연봉액의 범위를 설정하고, 업무성과를 반영하여 연봉액을 차등 결정
- 연봉대상자 : 임원 및 팀장(과장)이상 직원
 - ※ 팀장은 정관의 직제상 직급과 관계없이 과장 또는 팀장으로 표시된 직위를 말함
 - 연봉제 실시대상은 기관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전 직원에게로 확대 실시 가능, 다만, 연봉제가 임금인상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유의

5 연봉제 임·직원의 기본연봉 계상

< 기본연봉의 인상 계상 : 기준기본급+기준가산급 >

○ 사장(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기준가산급 : 기준기본급×정책인상률

- 2009년도 기본연봉은 2008년도 기본연봉을 기준기본급으로 책정하여 기준가산급을 산정 합산하되, 지방자치단체 및 동종기관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하고, 과다 책정된 경우 자치단체장이 조정
- 2007년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정책인상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되, 별도 인상을 범위는 별도 시달('08.11월중)

○ 임원을 제외한 연봉제 직원의 기준가산급 : 기준기본급×가율

- 가율은 별도 시달하는 2009년도 인건비 인상률을 기준으로 하여, 연봉제 대상 직원의 2008년도 근무성적 평가를 토대로 지방공사(공단)의 사장(이사장)이 결정
- 가율결정을 위한 인상을 범위는 별도 시달('08.11월중)

○ 팀제 전환에 따른 연봉제(가율) 적용 대상자는 팀장보직 유무에 관계 없이 팀장급 보직에 해당하는 직급 보유자에게 모두 적용

〈 연봉제 직원의 기준가산급 산정 요령 〉

○ 가율을 결정함에 있어 근무성적별(수, 우, 양, 가) 구체적인 인상률은 전체 인상률 범위내에서 자율 결정

- 연봉대상자의 등급별 가율 및 인원비율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예시) 인건비 인상률이 3.0%인 경우

구 분	수	우(기준)	양	가	계
인원배분 비율	20%	40%	30%	10%	100%
가 율	4.5%	3.0%	2.5%	1.5%	3.0%

○ 기관별로 연봉대상직원이 1~2인인 경우에는 기준등급을 적용

○ 본부장급 이상은 직종에 관계없이 직급별로 통합하여 평가하고, 팀장급은 직종·직급별로 평가 실시 다만, 팀장이상 연봉대상자가 기관전체 3~4명인 경우에는 직급, 직종에 관계없이 통합하여 조정

⑥ 2009년도 연봉제 신규적용자의 기본연봉

- 법인의 보수규정에 규정된 인건비(복리후생비 포함)의 각 항목을 연봉제규정상의 기준기본급, 부가급여로 구분·전환하여 연봉액을 책정
 - 2008년도 1월 승급자는 승급한 해당호봉 승급액 전액을, 7월 승급자는 승급액의 1/2를 연액으로 산정하여 기본연봉으로 전환
- 연도 중에 연봉대상자로 승진 또는 임용된 자의 연봉
 - 임용당해연도 1년간(1회계연도)의 연봉을 산정한 후, 임용일로부터 2009.12.31까지의 근무기간을 월수로 산정, 예상근무월수만큼 연봉으로 계약
 - 2개 회계연도에 걸친 연봉계약 체결금지
 -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과는 별도로 연봉액 산정은 상기 기준을 적용
- ※ 연도중에 승진 또는 임용되어 연봉제 대상자가 된 때에는 당해연도의 잔여기간 동안은 호봉제 체계로 보수를 지급하고 익년도 1. 1부터 연봉제로 전환 가능

나. 업무추진비

① 편성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 의한 손금인정한도와 2008년도 경상경비절감실적 등을 고려하여 편성
 -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은 정부출자기관에 해당(국세청 예규/서면2팀-1227, 2004.6.15)
- 사업추진을 위한 접대비 성격의 예산은 업무추진비에 일괄 계상하되, 사장(이사장) 등 임원 위주로의 집행을 억제하기 위해 부서 또는 사업단위로 배분하여 편성

② 업무추진비의 범위와 요건

○ 업무추진비의 정의

- 업무추진비라 함은 교제비·사례금·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

○ 업무추진비의 범위

- 교제 등의 비용
 - 법인이 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업상의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선물기증 등으로 지출하는 모든 금액
- 사 례 비
 - 사전 약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정보제공, 거래의 알선, 중개 등 법인의 사업상 효익을 유발시킨 자에게 의례적으로 지출하는 답례비
- 기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경비

○ 업무추진비의 요건

- 거증책임
 - 지출의 상대방, 지출목적, 지출금액, 접대비의 내용 등을 증빙서류에 명시
- 유형별 지출의 증빙
 - 음식·숙박의 제공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표 등
 - 물품의 기증 : 물품구입세금계산서, 사용부서 책임자의 물품인수증 등
 - 사 례 비 :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사실을 기재한 지출결의서, 수령자의 주소 및 성명이 기재된 영수증(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
 - 경 조 비 : 사회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을 지급부서의장이 서명한 지출전표

※ 회의비와 업무추진비의 구분

- 법인의 사업목적수행을 위한 회의시에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다과, 음식물 제공(회의직전·직후의 인근 음식점을 이용한 식사제공 포함) 등을 포함하여 회의개최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회의비로 보아 업무추진비와 구분
- 사내에서 고객과 상담·협의 시 제공하는 차와 다과의 비용은 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함(기타잡비 등에 계상)

③ 업무추진비 집행방법

○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 경비집행 또는 물품의 구입은 신용카드 중 클린카드로 집행하여야 함

-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 서류에 반드시 기재

※ 여신전문금융법 제14조에 의거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금융기관에 해당부서별로 클린카드를 공용카드로 발급받아 운영

- 다만, 일반카드의 불가피한 사용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최소한으로 법인별로 별도의 일반카드 발급은 가능

○ 업무추진비 사용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의 범위내에서 업무추진비의 사용범위 및 집행절차 등에 대한 자체 세부지침을 마련 시행

○ 아래 업종에 대해서는 클린카드의 사용을 제한하고,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제한 업종을 자율적으로 추가하는 등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자체 세부지침을 개선·시행

〈 클린카드(법인카드) 사용제한 업종 〉

- 유흥업종(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등 대인서비스)
- 레저업종(실내·외 골프장, 당구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 현금지출은 격려금·축의금·조의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
 - 개산금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의 영수증 첨부
 - 현금으로 최종수요자에게 지출한 경우에는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 단 상대방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 확인서를 첨부하거나 현금 전달자로부터 징구
- 간담회 등 접대비는 1인 1회당 4만원 이하에서 집행하되, 다만 불가피한 경우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음

다. 인센티브 성과급제도 운영

(1) 사장 인센티브 성과급

- 적용대상 : 사장, 이사장
- 지급시기 : 2009년도 12월
- 예산편성 : 기관성과급 과목에 월 기본급의 450% 이내로 편성
- 지급기준 : CEO 경영성과계약 및 업무평가에 따른 등급별 「성과급 지급율표」를 기준으로 지급
- 지급율 조정
 -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경영평가·사장평가 결과에 따라 상향 또는 삭감 가능
 - 각 지급률의 상한과 하한수준 내에서 자율적으로 차등지급률을 정함
 - 경영평가 미실시기관 및 ‘부진’ 등급기관 중 경영진단대상 기관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평가등급		우수	정상	부진	비고
지급율	상 한	750%	350%	150%	
	하 한	350%	150%	0%	

※ CEO가 사업연도 중에 퇴임하는 경우 퇴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성과급은 당해 사업연도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후 확정된 성과급을 퇴임일 까지 근무 기간에 대하여 월할 계산 지급

※ 구체적인 사항은 「'08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실시계획」에 의함

(2) 임원 인센티브 성과급

- 적용대상 : 부사장, 상임이사, 감사
- 지급시기 : 2009년도 12월
- 평가방법 : 당해 공사·공단에 관한 당해연도 경영평가
- 예산편성 : 기관성과급 과목에 총액으로 계상
(임원수×월 기본급의 450%)
- 지급기준 : 경영평가 등급별로 아래의 지급율에 따라 지급
 - 구체적인 지급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 경영평가 미 실시 기관 및 ‘부진’등급 기관 중 경영진단대상 기관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경영등급	“우수” 급	“정상” 급	“부진” 급	비 고
지 급 율	300~450%	150~300%	0~150%	

※ 구체적인 사항은 「'08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실시계획」에 의함

(3) 직원의 인센티브 성과급

(가) 개인 인센티브 성과급

- 적용대상 : 정관상 정원에 포함한 정규직원(계약직 등)
- 지급시기 : 매 익년도 2월
- 평가방법 : 개인별 근무성적·업무성과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각 법인의 내규로 규정하여 시행
 - 직급별 평정 및 등급별 인원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직급별 전체평정 대상이 4명이하인 경우에는 직급, 직종에 관계없이 통합하여 평정
- 예산편성 : 포상금 과목에 총액으로 계상(정원×1개월 기본급의 109%/필요시 실소요액을 감안하여 증감하여 편성 가능)
 - ※ 정원외 무기계약근로자 및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등에 대해 법인의 사업성격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급 가능(기본급, 지급율 등은 정규직원 지급방법을 참고하여 자체 결정하되, 지급시 기준이 되는 기본급은 비교대상 통상근로자와 형평을 고려하여 지급기준기본급을 설정)
- 지급기준 : 근무성적평정, 업무성과 등에 의한 평가에 따라 4개 등급(수, 우, 양, 가)으로 결정한 지급률로 지급

평정등급	수	우	양	가
인원비율	20%	30%	40%	10%
지 급 률	150%	125%이하	80%이하	50%

- 공사(단)의 사장(이사장)은 법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각 지급등급별 인원비율을 10%포인트 범위 안에서 자체 조정가능
- 지급방법
 - 사장(이사장)이 직원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대상인원과 지급율을 결정하여 지급
 - ※ 평정대상 연도말 기준 설립 6개월미만 법인은 미지급

- 근무평정을 실시한 연도중 입사자는 근무월수만큼 월할계산 지급, 퇴직자는 직전년도 지급 본인의 개인성과급 지급율로 산정한 지급액을 근무월수만큼 월할계산 지급

〈 직급별 지급기준 기본급 〉

- 연봉제 적용자 : 평균기본급(직급별 개인기본급의 합계액을 인원수로 나눈 평균급)
- 연봉제 적용 제외자
 - ① 9급부터 직급이 시작되는 법인
 - 9급 : 4호봉, 8급 : 5호봉, 7급 : 6호봉, 6급 : 10호봉, 5급 : 10호봉, 4급 : 11호봉, 3급 : 11호봉
 - ② 8부터 직급이 시작되는 법인
 - 8급 : 4호봉, 7급 : 5호봉, 6급 : 6호봉, 5급 : 10호봉, 4급 : 11호봉, 3급 : 11호봉
 - ③ 7급부터 직급이 시작되는 법인
 - 7급 : 4호봉, 6급 : 6호봉, 5급 : 10호봉, 4급 : 11호봉, 3급 : 11호봉
 - ④ 6급부터 직급이 시작되는 법인
 - 6급 : 4호봉, 5급 : 6호봉, 4급 : 10호봉, 3급 : 11호봉
 - ⑤ 기능직 및 고용직
 - 해당 직급에 해당되는 일반직급의 기준 호봉을 적용
 - ⑥ 개인성과급을 지급키로 한 계약직
 - 보수중 기본급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 ※ 법인설립 5년미만 법인은 상기기준 적용, 5년이상은 1호봉, 10년이상은 2호봉, 15년이상은 3호봉, 20년이상은 4호봉을 가산하여 지급(단, 동 가산 기준은 가산전 호봉이 12호봉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가능/개인별로 적용 차이 발생)
 - 가산전 호봉이라 함은 평정대상 연도말 개인별 호봉을 의미함

(나) 기관 인센티브 성과급

- 적용대상 : 정관상 정원에 포함한 정규직원(계약직 등)
- 지급시기 : 2009년 12월
- 지급기준 기본급 : 지급일 현재 개인별 기본급(연봉자 포함), 계약직은 월 기본급여
 - 전 직원이 실질적(가울적용 등)으로 완전하게 연봉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본연봉(속인적 성격 수당 등 제외)의 월액으로 지급 가능
- 예산편성 : 기본급 인상 및 신규충원 예상인력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지급액을 참고하여 지급예상액을 고려하여 증감하여 예산 편성 가능
 - ※ 정원외 무기계약근로자 및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등에 대해 법인의 사업성격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급 가능(기본급, 지급율 등은 정규직원 지급방법을 참고하여 자체 결정하되, 지급시 기준이 되는 기본급은 비교대상통상 근로자와 형평을 고려하여 개인별 기본급을 설정)
- 집행방법
 - 각 사업별로 “기관성과급” 과목에 편성하고 지출시에는 이사회 의결 없이 당해 공사·공단의 장의 결정에 따라 지급
- 집행시 유의사항
 - 총인건비 인상율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인건비를 편성·집행한 경우에는 직전하위등급의 지급률 범위까지 조정 가능
 - 연도중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는 월할계산 지급하고 퇴직자에 대해서는 직전연도 기관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율로 월할계산 지급
 - 경영평가 미실시 기관 및 경영평가결과 ‘부진’ 등급 중 경영진단대상 기관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기관성과급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은 타용도로 사용을 제한하되, 불용이 확정될 경우에 한하여 전용 가능

○ 지급기준

(단위 : %)

등 급	지급률 범위	지급률 결정	등급결정자
우 수 정 상 부 진	200초과~300%이하 100초과~200%이하 0~100%이하	지급률범위내에서 결정 : 설립 지방자치단체의 장 ※ 시도지사는 지급률범위내에서 한도 조정 가능	시도 공기업 : 행정안전부장관 시군구 공기업 : 시도지사

※ 구체적인 사항은 「'08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실시계획」에 의함

(3) 특별성과급 운영

(가) 특별성과급 지급대상

- 지방공사·공단의 자체경영혁신을 통한 인력감축, 사업별 위탁계약, 신경영기법 도입 등으로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 지방공사의 영업 및 당기순이익 증가에 따른 특별성과급 지급은 전년도 대비 영업이익 12%이상, 당기순이익 10%이상 모두 증가한 경우에만 지급가능
 - 지방공사의 주요사업(자본예산의 투자사업, 영업비용의 주요 경비 포함) 추진에 있어 동일수준의 성과를 유지하면서 업무 개선 및 제안 또는 신공법 도입 등으로 예산이 절약된 경우
 - 지방공단의 대행사업 추진에 있어 경상경비를 감축한 경우 및 대행 계약에 의한 세입목표를 초과달성한 경우
 - 업무개선 또는 신규 세입원 발굴시에도 대행계약과는 별도로 성과물 (비용절감, 세입증가액)의 일정률을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지급 가능
- ※ 경상경비절약은 단위사업의 자체절약액을 말하며, 예산절감권고 등에 따른 절감액은 제외

- 지급방법·절차 및 시기는 「특별성과금 제도 운영 요령(2002년 예산 편성 보완지침)」을 참조

※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성과금 자체 지급내규에 따라 집행

(나) 지급기준

- 인력감축에 의한 인건비 절감의 경우 감축된 인력의 1년분 인건비 전액
- 전년도 대비 당기순이익 증가분의 10% 범위내(1인당 100만원 이내)
- 주요사업추진에 있어 예산을 절감한 경우 절감된 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1건당 1억원 한도내 지급
- 지방공단의 경상경비절약의 경우 절감된 예산의 30% 범위내 지급
 - 세입초과의 경우 초과분의 10% 범위내 지급(1인당 100만원이내)

(다) 지급방법

- 인건비 절감 및 예산절감의 경우 1인당 지급액은 2,000만원 한도내에서 운영
 - 지급 후 성과급 재원이 남은 경우에는 사무실 장비교체 등 직원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자체 사업비로 활용
- 인건비 절감의 경우 절감된 예산이 전직원에게 균형있게 성과가 배분 되도록 지급
- 당기순이익 발생, 주요사업 예산절약, 경상경비절약의 경우에는 관련 업무에 기여한 공이 많은 직원에게 혜택이 많이 가도록 지급

(라) 지급절차 및 시기

- 각 법인에서는 특별성과금지급운영내규를 제정·운영
 - 성과금 지급청구, 성과금지급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 지급시기

- 인력감축, 주요사업·경상경비절약 : 익년도 3월말
-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증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산승인 익월

○ 지급과목 : 포상금 과목

- 2008년도 당기순이익 발생에 따른 성과금은 당초예산편성시 예상되는 금액을 포상금 과목에 계상
- 기타 예산절약에 의한 성과금은 해당과목에서 절약된 금액을 포상금으로 전용 후 지급

(마) 후속조치

- 감축된 인력의 인건비를 성과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직제에서 해당 인원을 감축하고 익년도 예산에도 감액 반영
 - 사업추가 등 인력추가요인이 없는 한 감축인력 원상복구 불가
 - 결원유지의 경우 추가임용 불가
- 경상비 절약의 경우에는 익년도 대행사업비 계약시 경상비를 감액계약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
 - ※ 지방공단의 경우 대행계약 체결시에 성과금 지급에 관련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 성과금 지급내역을 이사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라. 지방공기업 창의적인 경영혁신 지원

- 지방공기업 혁신 등을 위한 직원교육비의 우선 확보 지원
 - 직무수행 능력 및 소양함양 등을 통한 경영혁신 가속화를 위해 직원 교육비의 우선 확보 지원

마. 비정규직 보수

- 비정규직 근로자의 퇴직금·법정경비 등의 예산과 단순 노무인력의 인건비 단가(외주화 포함) 등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06.8.노동부)”을 준용하여 편성
- 청소, 경비 등 단순노무인력의 임금 수준이 유사·동종 민간분야에 비하여 지나치게 저하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 시중노임단가 인상율을 감안, 예산 집행시까지의 적정 임금인상률 반영
 - ※ 적정임금 인상률 :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결정
- 비정규직 고용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법정부담금 및 법정수당은 비정규직 보수에 포함하여 편성하되
 - 퇴직금·법정수당 및 사회보험료 예산은 보수와 구분하여 편성
- 무기계약근로자의 전환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따른 소요재원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검토

바. 경비편성기준

- 경상경비는 2008년도 수준으로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되, 절감된 예산은 투자재원으로 적극 활용 편성하고, 법정경비, 노후화된 시설·장비 수선유지 및 교체, 인력증원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증액
-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는 당해 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현 사업의 효율적 수행 목적을 제외하고는 단순히 사업의 외연확장 수단으로의 위한 자회사 신설, 관련법인 출자 등은 최대한 억제
 - 특히, 자회사 설립시에는 업무의 효율성, 아웃소싱 효과 등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함

- 전년도에 전용으로 감액 집행된 경비예산은 해당 비목의 예산을 감액 하여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는 억제하여 편성
- 예산·결산·계약·감사·노사·보상업무·경영평가실무담당직원(과장 또는 팀장이하)에 대하여 월 80,000원씩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 가능
- 대학생자녀학자금, 주택대출금, 경조사비 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예산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등을 감안하여 불합리한 부분은 폐지·축소하여 편성
- 건물관리, 전산운영 등 아웃소싱(Out-sourcing)이 가능한 분야는 민간에 위탁하는 등 경비절감 추진
- 업무관련회의경비, 고객에 대한 차 제공 등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는 각 부서업무를 감안하여 적정액 편성

사. 예비비 등 기타

- 제3섹터 법인의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사·공단¹의 공통 기준(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및 ‘민관공동출자법인’예산과목 준용
- 지방공단의 경우 주차장관리에 따른 주차료 등 위탁대행사업의 수입은 공단의 수입이 아니므로 업무위탁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함
 - 공단의 수입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위탁대행사업부담금으로써 이를 세입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편성하되, 사업 종료시 정산하여 미 지급금, 이월액을 제외한 불용액은 자치단체에 반납
 - 대행사업부담금에는 인건비, 각종경비, 대행수수료, 시설유지비 등 포함
 - ※ 공사는 대행사업수행시 일정율의 대행사업수수료를 별도로 대행사업비에 포함할 수 있으며, 정산시 대행사업수수료는 공사의 수익으로 정리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사·공단에 대한 보조금(출연금 포함)은 경영혁신과 감사원 감사지적사항 이행과 연계하여 운영
 - 미이행시 예산삭감 또는 집행 보류

- 포상금에 계상된 개인성과급 예산은 불용으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른 비목으로 전용금지
- 퇴직금누진제는 전면폐지하고, 정부의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계획」에 의거 정년을 조정한 법인은 이를 상향조정할 수 없음
- 인건비·부채상환원리금은 다른 비목으로 전용 불가,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 한도내에서 다른 비목에서 전용 가능
- 예비비는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 및 기채재원에 의한 경비를 제외하고 당년도 세출예산중 법인실정을 감안하여 적정액 계상
 - 예비비는 인건비 또는 보수보전적 경비 및 업무추진비로 사용불가. 다만, 정원증원 등의 경우 예산변경곤란 등 불가피한 때에는 사용 가능
- 국외여비는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없는 해외출장경비 편성 및 집행억제
 - 실무연수 등 선진지 시찰의 경우에 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 협의 후 시행
- 자동화, 공정개선 등 정보기술의 활용을 통하여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전자조달시스템 도입·활용 등 정보화 인프라를 확충·보완하여 경쟁력 향상에 노력
-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5 이내로 하고, 동 출연이외에는 특별출연을 하여서는 안됨
 - 직전 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사전에 미실현이익을 근거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지
-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사기향상을 위해 설립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선택적 복지제도」를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제도도입에 따른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이와 유사한 수당 등을 흡·수통합하여 재원으로 활용

- 외부차입금 축소, 금융비용 최소화 및 수익성 강화 등을 통하여 재무 구조 개선에 노력
 - 사채발행 승인요구시 차입금 축소 등 재무구조개선 계획수립 및 이행 여부를 감안하여 승인 또는 감액 등 조치
- 고객불편해소과제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개혁과제를 적극 발굴·개선 하여 대국민 만족도 제고에 노력
 - 공공성을 사유로 민간경제영역의 사업을 지방공기업 사업으로 선정 하는 사례 금지
- 각 공기업에서는 투자사업의 조기집행을 포함한 분기별 집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다한 예산불용 및 이월을 방지
- 자본예산 중에 계상되는 경비는 사업량 증감 등을 감안하되, 인건비·경비 예산편성기준을 적용
-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철 건설부채의 원리금 상환지원에 있어
 - 일반회계 지출과목을
 - 건설부채 상환을 위한 보조금은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404-02)」 과목으로, 이자상환 지원분은 「공사·공단 경상전출금(309-02)」으로 편성지원토록 조치
-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를 준용하여 운영
- 지방공사·공단에서의 자체노력을 통한 국·도비 확보시 설립 자치단체에서는 지방비부담 등 재정적 지원 우선 조치
- 국회, 감사원, 시민단체, 지방공기업 평가단 등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집행

IV. 事業別 細部編成基準

- 공통기준을 먼저 적용하고 세부기준을 적용
- 지방직영기업의 경우 세부편성기준이 없는 경우 상수도사업의 세부 편성기준을 준용
- 지방공사·공단에서는 본 지침적용이 곤란한 경우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조정편성 가능
- 본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지방공사·공단에서는 유사한 성격의 공사·공단 편성기준 준용

지 방 직 영 기 업

1. 上水道事業

2. 下水道事業

3. 公營開發事業

4. 地域開發基金事業

1 上水道事業

가. 세입

- 급수수익은 요금현실화계획을 반영하되, 2007년 결산결과를 감안 요금 수익을 적절하게 추계
- 회계간 경비부담원칙에 의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부담금 수입 최대한 확보
- 유희자산의 적극적인 활용 및 여유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제고로 영업 외수익 증대
- 자체 가용재원의 최대한 확보로 기채수입 최소화

(1) 사업수익

(가) 영업수익

- 2009년 요금현실화 목표와 개선된 요금체계의 시행을 전제로 예상요금 수입을 계상
 - 요금산정을 위한 총괄원가에는 국고보조금 등 일반회계 지원예산도 포함
- 급수수익의 제잠식 요인(누수, 도수, 계량기불감량, 무상사용량 등)을 정밀분석하여 최대한 증수 노력
- 급수공사수익은 2008년 실적 및 상수도보급계획 등을 감안하여 계상
- 구경별 정액요금은 급수수익에 포함

(나) 영업외수익

- 면밀한 자금운영계획에 의한 여유자금은 항상 정기예금 등 고율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익 증대
- 지방공기업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경비 계상
 - 정상적 운영보조부담액은 영업외수입에 계상(소방용수사용료 등 요금 부담액은 영업수익으로 계상)하고, 시설비부담액은 자본예산의 자본적수입에 계상

※ 일반회계(타회계)의 부담내역

- 일반회계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 선행투자를 위해 일반회계부담으로 기재한 지방채상환원리금 등
 - 공업용수 등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원가이하로 요금을 책정한 경우 요금과 원가와의 차액
 - 소방·공원용수 등 공공시설의 상수도사용에 따른 해당요금 부담액
 - 일반회계(다른특별회계)사업을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대행할 경우의 비용 및 수수료
 -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수료 : 당해수입금 징수에 따른 전산처리비용 등 제반 소요비용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실정에 맞게 자율 결정
- 불용고정자산 매각시 처분액이 장부가액(취득원가-감가상각 충당금)보다 높은 때에는 그 차액을 고정자산처분이익과목에 계상

(다) 특별이익

- 전기의 수익으로 전기에 조정되지 않고 당기에 발견됨으로 그 조정이 이루어지는 수입은 전기손익수정이익에 계상

(2) 자본적 수입

- 당해연도 사업활동에 의한 수익 및 보전재원인 감가상각비 등 비현금 지출경비·전기이월금 등을 최대한 확보
- 비가동불용자산은 전량매각계획을 수립하여 투자재원으로 세입조치 (고정자산매각수입으로 계상)함으로서 보유재산에 대한 활용도 제고
 - 중요자산 취득·처분은 예산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지방공기업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 지방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발행승인분에 한하여 계상
- 시설분담금은 2009년 급수전 증설계획을 감안 계상
- 일반회계가 부담기로 한 지방채상환원금

나. 세출

- 경상적경비는 2008년 예산수준을 감안하여 절감 편성하되, 영업비용은 영업수익규모를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편성
- 수도종사공무원의 전문화,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훈련경비 등 반영
- 상수도 생산시설의 신·증설 전면 재검토, 사업추진의 적정화
 - 정수장 등 수계별·권역별 공동설치 등 시설운영의 효율성 제고
- 배관망 정비, 급수계통별 유량계 설치, 불량계량기 교체 등 유수율 제고사업 적극추진

(1) 수익적 지출

- 사업비용은 그 비용과목에 대응하는 수익과목의 예정수입액을 한도로 하여 계상
- 정상경비는 2008년 절감예산수준으로 계상하되 최대한 감축 운영

(가) 인건비

-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거 지급
 - 상수도사업근무장려수당 : 조례로 설치된 상수도사업관장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 5급 및 5등급이하 : 월 50천원이하
 - 고용직 및 청경 : 월 20천원이하
- <가산급> - 수질검사업무 직접종사공무원
 - 연구관 : 월 40천원이하
 - 연구사 : 월 30천원이하
 - 환경·보건·화공직렬 기술직·연구직공무원 : 월 20천원이하
- 비정규직(상용인부)은 지방조직 감축지침에 따라 그 인원을 최소한으로 축소조정 계상

(나) 물건비

- 제복착용이 불가피한 근무자에 대하여는 피복착용 가능연수를 고려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 운영
- 검침원 등 상시 출장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출장지, 출장시간 등을 감안하여 지급대상범위 및 기준액에 대한 방침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하여 운영

- 급수공사비(신설+개조공사비)는 당해 급수공사 수입액 한도내에서 계상
- 감가상각비 등 비현금지출경비는 당년도분을 전액 계상
- 운영경비를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통합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의 자율성·효율성 제고

(다) 영업외비용

- 차관, 각종 융자금에 대하여 2009년에 변제할 이자는 당초 예산에 전액 계상(지급이자 및 기업채취급제비과목)
- 수도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는 민간이전 또는 민간자본이전과목에 계상
 - 도서공급, 장학금지원 등 경상적 지원금 : 민간이전과목(민간경상보조)에 계상
 - 농로, 농작물재배시설, 마을공동창고, 화장실 신축 등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한 지원금 : 민간자본이전과목(민간자본보조)에 계상

〈주민지원사업비 집행방법〉

- 보조조건을 명시하여 수혜자 또는 수혜단체 등에 직접 교부
 - 자금은 보조조건을 이행한 문서 또는 현지점검 후 사후 지출
 - 지원사업계획을 수혜자 등에게 통보하고 수혜자와 제3자간의 계약 등에 의해 보조조건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에 의해 그 제3자에게 자금 지출
- ※ 집행방법은 지역실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 불용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처분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처분액 < 장부가액)을 고정자산처분손실 과목에 계상

(라) 특별손실

- 수재, 화재 등에 의하여 발행한 손실은 임시손실과목에 계상

(2) 자본적 지출

- 중·장기 상수도종합계획의 상수도 생산(처리)시설의 신·증설 재검토 추진
 - 실제 인구증가 추세에 따른 인구추계를 시설규모에 반영
 - 지역특성에 따른 상수도주민 1인1일 소비기준(농어촌 300ℓ 이하, 도·농복합시 350ℓ 이하, 도시 400ℓ 이하)을 시설규모에 반영
 - 하절기 등 계절적 수요는 예비율(10%이하) 활용
- ※ 시설과다 보유단체는 노후정수장 폐지, 읍·면 소규모 정수장의 통합운영 방안강구
- 상수도시설의 공동설치 운영 등 시설효율화
 - 지방자치단체간 수계별·권역별 시설공동설치·운영 추진
- 유수율 제고를 위한 시설개량사업비 최우선 계상
 - 요금현실화로 인한 여유재원은 노후관 개량사업에 우선 투자
 - 배관망정비, 급수계통별 유량계 설치, 불감계량기 교체
 - 누수탐사장비 구입, 노후·불량 급·배수관 교체 등
- 노후관 통합정비공사의 경우 공사집행편의상 급수관에서 배수관까지 시설비에 일괄계상 가능
 - 결산시 비용계정과 자본계정으로 조정 분개
- 고지대, 변두리지역 농어촌의 미급수지역에 대한 시설확장·개량사업비 반영

2 下水道事業

가. 세입

- 하수사용요금에 대한 지속적인 총괄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추진으로 경영개선에 기여
- 우수처리비, 총괄원가 부족분에 대한 일반회계부담금 철저 확보
-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시 원인자부담금 부과 철저
 - 택지개발 및 APT건설지역 등

(1) 사업수익

- 사용료수입은 전액 본청예산에 계상
- 하수처리장건설재원중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에 따른 이자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국비보조금은 타회계 경상보조금 과목에 해당

(2) 자본적 수입

- 일반회계 등의 건설보조금은 회계별 투자비 부담기준에 의하여 계상 하되, 해당 회계로부터 보조금전출이 확정된 금액에 한하여 계상
- 일반회계가 부담기로 한 지방채상환금은 일반회계로부터 보조금전출이 확정된 금액에 한하여 계상

나. 세출

- 상습침수지역, 영세민밀집지역, 악취발생지역 등에 대한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확장·개량사업 적극추진
-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에 따른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부담금 편성
(하수도사용료징수에 따른 실소요 경비를 부담)
- 하수관거, 처리장 등 국비 및 지방양여금사업의 지방비부담 전액 계상
- 자치구에 대한 예산은 본청예산에 일괄편성하고, 재배정예산으로 사업시행

(1) 사업비용

- 영업비용은 영업수익규모를 감안하여 적의 편성, 정상적경비는 2008년 수준을 감안하여 절감하여 편성
- 자치구의 사업비용 예산은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 과목에 일괄계상 하되, 자치구별 내역을 명기

(2) 자본적 지출

- 하수도 처리시설의 신·증설 재검토 추진
 - 실제 인구증가추세에 따른 인구추세를 시설규모에 반영
 - 수계별·권역별 시설공동설치, 인근 지방자치단체간 공공재산 판매·빅딜
- ※ 예) 서울시와 광명시간 : 하수처리장(서울), 쓰레기소각장(광명)
- 자치구에 대한 자본예산은 각 항목별로 자치구별, 사업별로 예산 편성
 - 하수관거, 종말처리장시설 등에 있어 과도한 이월금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정한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계상

가. 세입

- 투자재원조달시 장기저리자금의 차입을 통한 비용부담의 최소화
- 철저한 원가계산 및 경비절감에 의한 내부 세입확보 효과 창출
-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으로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입 증대
- 임대료수입 현실화, 완성자산(주택·용지)의 분양촉진대책 강구

(1) 사업수익

- 일시불 주택(용지)중 2009년도에 매매계약이 체결될 경우 계약금액을 주택(용지)매출수익으로 계상
- 2008년말 현재 미준공 주택(용지)의 선수매출액중 2009년도에 준공 예정인 주택(용지)의 선수매출은 자금의 수입이 없으나 2009년도 손익 예산에 반영

(2) 자본적 수입

- 토지 또는 주택이 준공일 이전에 매각되는 경우에는 그 분양금 수입액을 유동부채 선수금 수입으로 계상
 - 전기말 현재 준공이전 선수매출액은 2009년도에 준공될 경우 손익 예산의 매출로 계상
- 임대주택보증금은 당해연도에 실현될 수입액을 고정부채 수입과목에 계상

나. 세출

- 원가상승요인을 최대한 억제하여 분양촉진 기여
 - 경상경비 및 일반관리비 절감편성하고, 2008년 지출수준으로 계상
 - 사업부대비 등의 절감편성 및 효율적 집행

(1) 사업비용

- 매출원가는 비용과 수익대응원칙에 의하여 계상
 - 당해년도 일시불조건 매출하는 경우의 용지조성원가 또는 주택매출원가
 - 연부매출의 경우 당해년도 수입연부액 해당원가
- 임대 또는 수탁관리사업비는 해당물건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을 계상
-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매출을 전제로 한 용지조성·분양주택건설 사업이외에 투자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계상

(2) 자본적 지출

- 토지취득비는 감정가격을 근거로 실소요액을 산정하여 예산편성
- 시설비와 자재비는 설계를 근거로하여 실소요액을 예산편성
- 시설부대비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불가피한 최소한의 경비 계상(예산산출기초란에 산출내역을 명기)
- 매출을 전제로 한 용지조성 및 주택건설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건설에 직접 투자되는 비용중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계상하여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

4 地域開發基金事業

가. 세입

- 2008년도의 공채발행 실적을 면밀하게 분석, 발행가능액 계상
- 합리적인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1) 사업수익

- 2009년도에 회수할 융자이자수입은 계산을 명확히 하여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
- 공채발행액중 시효소멸로 2009년도중 상환의무 면제가 예상되는 채무액은 공채발행 및 상환대장을 확인하여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소멸 시효 : 상환기일로부터 원금 10년, 이자 5년)

(2) 자본적수입

- 2009년도 상환기일이 도래되어 회수할 융자원금 전액 계상
 - ※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은 시·도조례에 의거 상환기일도래시 상환을 연기 할 수 없음(연체이자부과)

나. 세출

(1) 사업비용

- 2009년도에 상환할 공채이자는 전액 당초예산에 계상하되, 중도상환 이자 및 선이자는 2008년도 지급실적을 감안하여 계상
- 지역개발기금관리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계상(기금관리요원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2) 자본적 지출

- 2009년도에 상환이 도래하는 공채원금은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

지 방 공 사 · 공 단

5. 시설(환경·경륜)관리공단

6. 지하철분야

7. 도시개발공사

8. 기타공사 및 민관공동출자사업

5 시설(환경·경륜)관리공단

가. 세입

(1) 사업수입

- 영업수익은 2008년 수입실적을 감안하여 계상하되 지자체의 업무를 공단에서 위·수탁하는 때에는 대행사업비용 계산시 위탁대상사업의 직접관리비용, 간접관리비용 및 대상시설물의 감가상각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을 계산하여 위탁대행사업수입에 계상
 - 공단의 수입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위탁대행사업비로 대행사업 수행에 따른 주차료 등 수입은 자치단체 수입이므로 자치단체 세입으로 납입하되, 당해 공단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납입주기(일, 주, 월, 분기 등) 및 납입방법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결정
- 시설임대의 경우 임대료에 전기료,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을 포함 산정, 민간부담금은 임대관리비 수익으로 계상
- 주차료수입 등 자체사업에 의한 수입이 있는 때에는 2008년 수입실적 및 2009년 조정계획 등을 감안하여 계상

(2) 자본적 수입

- 공통기준 및 상수도사업의 편성기준을 준용

나. 세출

- 이용시설을 위한 편익증진시설확충으로 서비스 제고
- 자립경영기반조성을 위한 절감·긴축예산운용

(1) 사업비용

- 인건비는 공단보수 및 연봉제 규정에 의해 계상
- 복리후생비는 복리후생규정에 따라 편성하되 직책수행비 또는 직급보조비에 대하여는 자체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예산편성·집행
 - 직책수행비 또는 직급보조비 등 인건비성경비는 복리후생비 과목에 계상
- 업무성과에 의한 성과급 운영 철저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세대상에 포함된 ‘부동산임대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대해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

(2) 자본적 지출

- 시설비는 설계를 근거로 계상
- 이용시민의 안전 및 서비스증진을 위한 시설개량비 최우선 계상

6 地下鐵公社

가. 세입

- 승객유치활동 강화와 무임승차근절로 운수수입 증대
- 광고물 적극 유치 등 부대사업수입 제고방안 강구
- 채무상환, 영업결손보전을 위한 설립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최대한 확보
- 유허자산의 효율적 활용으로 영업외수입 증대
- 부채 및 적자해소를 위한 특별대책 강구

(1) 사업수익

- 운수수익은 2008년도 실적 및 역세권별 교통량 증가요인, 기타 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 금액 계상
- 임대수입 및 부대사업수익은 대상수입원을 적극 발굴 계상
- 불용결정된 저장품 등에 대하여 재활용 또는 매각계획을 수립, 보유 자산 활용 제고

(2) 자본적 수입

- 경영합리화에 의한 경상비절감·당해년도 보전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외부조달자금 최소화
- 가용 불용자산에 대한 매각처분으로 투자재원확보 및 보유자산 활용도 제고

나. 세출

(1) 영업비용

- 인건비는 적정결원을 감안 계상하되 경상적경비는 2008년 수준으로 절감계상
- 경상경비 및 전력비 등 지하철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의 합리적인 절감으로 원가인상요인 최소화
- 업무추진비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한도범위내 계상
- 복리후생비는 복리후생규정에 따라 편성하되 직책수행비 또는 직급보조비에 대하여는 자체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예산편성·집행
 - 직책수행비 또는 직급보조비 등 인건비성경비는 복리후생비 과목에 계상

(2) 자본적 지출

- 시민서비스 증진을 위한 지하철사업의 편익시설·안전시설 확충에 중점 투자
- 부채절감을 위한 특별대책 강구
 - 보전재원, 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최대한 확보 사채추가발행 최소화
 - 민간위탁 등 경영합리화 적극추진, 절감된 예산은 부채상환에 최우선 사용
- 시설비·시설부대비는 설계 및 관련법령의 기준에 따라 실소요액 계상
 - 기채원금은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

가. 세입

- 철저한 원가계산에 의한 세입현실화
- 외부조달자금의 장기저리자금 확보로 부담 최소화
- 미분양 토지 및 주택의 분양촉진방안 강구
- 분양중도금, 미수금 등 관리철저

(1) 사업수익

- 2009년도 준공예정인 토지 및 주택의 선수매출액은 손익계산에 계상
- 임대대상시설확충 및 임대료의 현실화로 임대수입증대 및 미수금 발생 방지

(2) 자본적수입

- 재정자금·국민주택기금·지역개발기금·은행차입금 등 장기차입금은 사채 승인 및 자금내시된 금액을 계상
- 임대주택보증금은 당해연도 실현가능한 수입을 계상
- 자본금 및 잉여금수입은 자치단체 등에서 전입이 확실한 금액을 계상

나. 세출

(1) 사업비용

- 영업비용은 영업수익규모를 감안하여 적의 계상하되, 정상적경비는 2008년 집행수준으로 절감 편성
- 용지매출원가 및 주택판매원가는 매출수익 인식기준에 따라 매출수익에 대응하는 원가계상
-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는 보수 및 연봉제규정 등이 정한 자체 기준에 따라 편성
- 업무추진비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부서단위 또는 사업단위로 계상하되 개인에 대한 월정액 지급은 불가
 - 직책수행비 또는 직급보조비는 복리후생비 과목에 편성하되 자체지급 기준을 정하여 예산편성
 - 업무추진비의 집행방법은 공통기준의 집행방법을 적용
- 지급이자는 매출을 전제로 한 용지조성·주택건설 이외의 사업에 투자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 계상

(2) 자본적 지출

- 토지취득비는 감정가격을 근거로 실소요액 계상
- 시설비 및 자재비는 설계를 근거로 실소요액 반영
- 시설부대비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편성하되 불가피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
- 매출을 전제로 한 용지조성·주택건설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건설에 직접 투자되는 비용중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은 재고자산의 지급이자 등에 계상하여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

8 기타공사 및 민관공동출자사업

가. 수입

(1) 사업수익

- 영업수익은 과거년도 실적, 수입증가요인 및 기타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정 금액 계상
- 부대사업 수익은 대상 수입원을 적극 발굴로 수입 제고

(2) 자본적수익

- 경영합리화에 의한 경상경비절감 및 당해연도 보전재원을 최대한 확보

나. 지출

(1) 영업비용

- 인건비는 공사보수 및 연봉제시행규정에 의거 계상
- 경상경비 및 사업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의 합리적인 절감 집행
- 업무추진비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접대비 한도 범위내 계상
- 법인특성을 감안하여 업무와 관련한 회의비 적정 계상 운영
- 복리후생비는 복리후생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및 집행

(2) 자본적 지출

- 시설비는 설계를 근거로 실 소요액 계상
- 고객서비스증진 및 이용시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비 최우선 계상

V. 행정 사항

1 예산편성절차 및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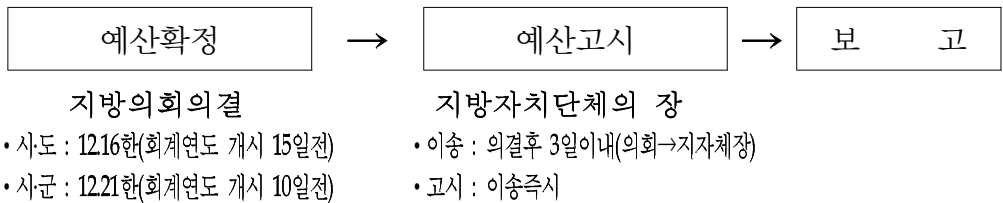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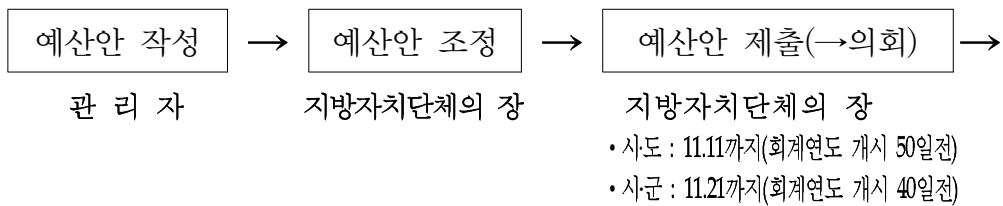
□ 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26조, 제65조

-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은 의회의 의결로, 지방공사·공단 예산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됨

□ 예산편성 및 확정절차

<지방직영기업>

- 예산확정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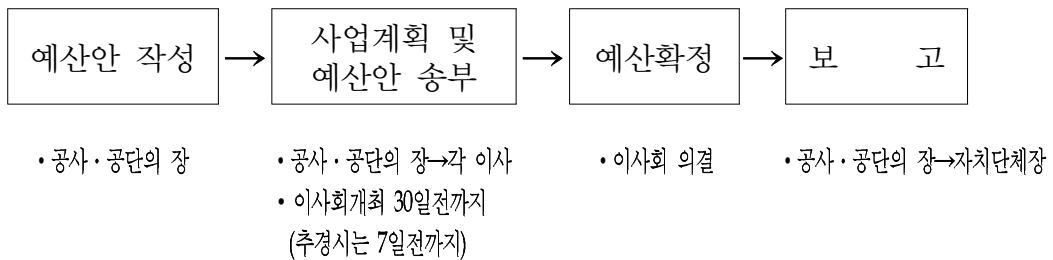
- 예산안 제출시 부속서류

- 사업운영계획
-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사항별 설명서

- 급여비명세서
- 계속비에 관한 조서
-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조서
- 예정대차대조표 및 예정손익계산서(전년도 및 당해연도)

<지방공사·공단>

○ 예산확정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예산에 관한 공통지침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명령을 명할 수 있음
 - ※ 공통지침위반사례 : 지자체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인력의 증가·급여의 인상·수당 항목 신설 등
- 시정명령을 받은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재의결을 받아야 함

2 豫算編成 結果報告

- 예산편성결과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 시달하는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디스켓 또는 전자우편으로 지정된 기일내에 보고
- 보고주체 및 시기
 - 시·도 → 행정안전부 : 예산이송(보고)즉시
 - 시·군·구 → 시·도지사 : 예산이송(보고)즉시
 - ※ 시·군·구 예산은 시·도지사가 취합하여 행정안전부에 보고
- 보고서식 : 별도시달

VI. 예산과목구조 및 과목해소

〈 概 要 〉

○ 2009 예산과목구조의 특징은

- 기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의 과목구조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 예산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일부 반영하여 예산과목의 신설, 과목해소 이동 및 통일 등을 하였음

○ 예산과목이 사업별로 세분되어 있지 않거나 이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 지방직영기업 : 상·하수도사업 준용
- 지방공사·공단 : 기능이 유사한 지방공사·공단의 예산과목을 준용,
필요시 기업회계기준,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등의 관련규정을 원용

目 次

1. 上・下水道事業	93
2. 公營開發事業	128
3. 地域開發基金	145
4. 施設(駐車・環境・競輪)管理公團	150
5. 地下鐵分野	163
6. 都市開發公社	178
7. 民官共同出資事業	195

1

上·下水道事業

가. 豫算科目構造

사 업 예 산			자 본 예 산		
관	항	세 항	관	항	세 항
600 상(하)수도 사업수익	610 영업수익	611 급 수 수 익 (사 용 료 수 익)	100 자본적 수 입	120 고정자산 매각수입	121 토 지
		612 급수공사수익 (우수처리부담금)			122 입 목
		613 기타영업수익			123 건 물
					124 기계장치
	620 영업외 수 익	621 수입이자			125 차량운반구
		622 타회계 전입금수익			126 공기구비품
		623 외화환산이익			127 기타가동설비자산
		624 고정자산처분이익		140 투자자산 수입	141 대여금
		625 기타영업외수익			142 기타투자자산수입
	630 특별이익	631 전기손익 수정이익		220 고정부채 수입	221 외국차관
		632 기타특별이익			222 공 채
700 상(하)수도 사업비용	710 영업비용	711 원수 및 취수비(관커비)			223 지역개발기금
		712 정수비(펌프장비)			224 정부차입금
		713 배·급수비(처리장비)			225 은행차입금
		┌713 배수비┐			226 기타고정부채
		└714 급수비┘		320 자본잉여 금수입	321 시설분담금
		715 일반관리비			322 타회계건설보조금
		716 징수및수용가관리비			323 공사부담금
		717 급수공사비	420 기 타 자본적수입	421 기타자본적수입	
		718 감가상각비			
		719 기타 영업비용			
			100 자본적 지 출	120 가 동 설비자산	121 토 지
					122 입 목
					123 건 물

※ ()내는 하수도사업 과목, 기타는 상·하수도 공통적용과목임

사 업 예 산			자 본 예 산		
관	항	세 항	관	항	세 항
	720 영업외 비 용	721 지급이자 722 기업채취급제비 723 자산감모손실 724 고정자산처분손실 725 기타영업외비용			124 구 축 물 125 기계장치 126 차량운반구 127 공기구비품 128 기타가동설비자산
	730 특 별 손 실	731 임시손실 732 전기손익수정손실 733 기타특별손실		130 비가동 설비자산	131 건설중인자산 132 광역사업건설중인자산
				150 무형자산	151 무형자산
				180 투자자산	181 투자자산
				220 고정부채 상 환 금	221 외국차관 222 공 채 223 지역개발기금 224 정부차입금 225 은행차입금 226 기타고정부채
				410 민간자본 이 전	412 민간자본이전
				420 기타자본 적 지 출	421 기타자본적 지출
	800 예비비	810 예 비 비		800 예비비	810 예 비 비

과 목		해 소
관·《항》 〈세항〉·목	부 호	
상·하수도 사업수익	600	상·하수도특별회계별로 해당과목 선정 예산 편성
《영업수익》	610	
* 상·하수도 요금 통합관리 〈상수도급수수익〉	611	급수조례에 의한 상수도 업종별 사용료 수입
가 정 용	611-1	○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 수입(조정액)
업 무 용	611-2	○ 업무용 상수도 "
영 업 용	611-3	○ 영업용 "
욕탕용 1종	611-4	○ 욕탕용 1종 "
욕탕용 2종	611-5	○ 욕탕용 2종 "
전용공업용	611-6	○ 전용공업용 "
		※ 구경별 정액요금은 해당업종별 요금수입으로 계상
〈하수도사용료수익〉	611	○ 하수도사용조례에 의한 하수도 업종별 사용료수입
가 정 용	611-1	○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 수입
업 무 용	611-2	○ 업무용 하수도 사용료 수입
영 업 용	611-3	○ 영업용 "
욕탕용 1종	611-4	○ 욕탕용 1종 "
욕탕용 2종	611-5	○ 욕탕용 2종 "
산 업 용	611-6	○ 산 업 용 "
		※ 자치단체별로 하수도사용조례상의 업종으로 “목”설정 변경 가능
* 상·하수도 요금 업종통합원료시 〈상·하수도〉	611	
가 정 용	611-1	○ 가정용 상·하수도 사용료 수입
일 반 용	611-2	○ 일반용 상·수도 "
대중탕용	611-3	○ 대중탕용 상·하수도 "
전용공업용·산업용	611-4	○ 전용공업용, 산업용 상·하수도 "
〈상수도급수공사수익〉	612	상수도 수용가로부터 신설 급수공사 및 기설공사의 개조에 따른 급수공사 수입
신설공사수입	612-1	○ 신설급수공사에 따른 자재대, 시공비 및 기타 수입
개조공사수입	612-2	○ 기설공사의 개조공사에 따른 자재대, 시공비 및 기타 수입

과 목		해 소
관·〈항〉〈세항〉·목	부 호	
<하수도빗물처리 부담금 수익>	612	
빗물처리부담금	612-1	○ 하수도사업의 빗물처리에 따른 일반회계 등 부담금
<기타 영업수익>	613	상기과목이외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생긴 수익
수수료수입	613-1	○ 급수공사 및 급수조례에 의한 각종 수수료 수입
가압료수입	613-2	○ 가압료 수익
원·정수판매 수 입	613-3	○ 타 시·군에 대한 원·정수 판매수익
잡 수 입	613-4	○ 상기 과목이외의 기타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620	
<수입이자>	621	
일반이자수입	621-1	○ 금융기관의 각종 예금이자 및 적립금운용에 따른 이자 수입,유가증권 이자수입
대여금이자수입	621-2	○ 타회계등 대여금 이자수입
<타 회 계 전입금수익>	622	지방공기업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회계간 비용부담원칙)에 의하여 일반회계 또는 타 특별회계가 의무적 으로 부담하는 경상적 경비 - 공통기준 참조
일반회계전입금	622-1	○ 타회계 부담금수입중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수입
타특별회계 전 입 금	622-2	○ 타회계 부담금수입 중 일반회계 이외의 기타 특별회계가 부담하는 수입, 상수도의 경우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계상
시·도보조금	622-3	○ 시·도로부터 전입된 경상보조금
국고보조금	622-4	○ 국고로부터 전입된 경상보조금
기타전입금	622-5	○ 상기과목이외의 기타전입금

과 목		해 소
관·《항》 〈세항〉·목	부 호	
<와화환산이익>	623	
외화환산이익	623-1	○ 환차이익중 당해년도 수입해당액
<고정자산 처분이익>	624	
고정자산처분 이익	624-1	○ 고정자산의 매각처분 등으로 발생한 수익, 매각이익만 계상하고 장부가액은 자본예산수입에 계상(투자자산 처분이익 포함)
<기 타 영업외수입>	625	
기본재산임대 수입	625-1	○ 기본재산인 토지, 건물, 임야, 기타 재산의 임대 및 그에 부수되는 수입
불용품매각수입	625-2	○ 불용품으로 결정된 불용물품 매각수입
변상금및위약금	625-3	○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변상금 수입과 약정위반 으로 인한 위약금 수입
유가증권처분 이익	625-4	○ 입찰 및 하자보증증권 등 유가증권의 처분이익
잡 수 입	625-5	○ 상기 이외의 기타 영업외수입(가산금 별도계리시 가산금 포함)
《특별이익》	630	
<전기손익 수정이익>	631	
전기손익수정 이익	631-1	○ 전기의 수익으로 조정되지 않고 당기에 발견됨으로써 그 조정이 이루어지는 수입(예 : 과년도 요금추징액 등의 수입)
<기 타 특별이익>	632	
기타특별이익	632-1	○ 채무면제이익등 기타 특별이익

과 목		해 소
관·《항》 〈세항〉·목	부 호	
상·하수도 사 업 비 용	700	
《영업비용》	710	※ 기능별 원가계산을 위해 영업비용 구분에 따른 〈세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해당목별로 예산 계상 상수도사업의 경우 711<원수 및 취수비> - 정수장 직전의 송수관까지의 비용 712<정 수 비> - 정수장 운영 관리비용 713<배 수 비> - 배수지, 송·배수관, 가압장 운영비용 714<급 수 비> - 급수관, 계량기 등 급수시설운영비 715<일반관리비> - 특별회계운영·지원경비(본청소관경비) 716<장수 및 수용기관리비> - 검침, 요금고지 등 요금과징비용 하수도사업의 경우 711<관 거 비> - 하수관리 운영유지비 712<펌프장비> - 유수지 및 배수펌프장 운영비 713<처리장비> - 하수처리장 운영유지비 715<일반관리비> - 하수도사업관리부서의 제반경비 ※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징수 위탁비용 계상

과 목		해 소
관·《항》 〈세항〉·목	부 호	
<인력운영비>	100	각 사업별 기능별 예산의 해당 세항에 계상
인 건 비	101	01 기본급
		1.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및 제32조에 의한 지방공무원 봉급 가. 예산편성 당시의 정원 또는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 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직급별 평균호봉』을 산정 편성 다. 조직 및 기능개편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2008년도 보수표를 기준으로 편성
		2.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에 의한 봉급을 지급받는 각종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지급 가. 정근수당 : 연 2회 계상
		02 수당
		1. 2008년도 지방공무원보수·수당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편성
		03 정액급식비
		1. 2008년도 지방공무원보수·수당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편성
		04 교통보조비
		1. 2008년도 지방공무원보수·수당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편성
		05 명절휴가비
		1. 2008년도 지방공무원보수·수당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편성
		06 가계지원비
		1. 2008년도 지방공무원보수·수당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편성
		07 연가보상비
		1. 2008년도 지방공무원보수·수당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편성
		08 기타직보수
		1.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하여 채용하는 직원에 대한 보수(상여금수당 포함, 이하같음)
		2. 지방공무원임용령 규정에 의한 시보공무원이 될 자에 대한 보수
		3. 청원경찰법 및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에 의한 청원경찰의 보수
		4.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각종 위원회 상임위원 및 간사 등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5. 의무소방대 설치법에 의한 의무소방대원의 보수
		6.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비정규 직원에 대한 보수

과 목		해 소
관·《항》 〈세항〉·목	부 호	
		09.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산편성 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 환경미화원 가) 시가지·가로·공원청소 및 쓰레기 수거등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단, 정규시간에 근무하는 건물 및 청사 청소원 등은 제외 2) 기타 무기계약근로자 가) 지방자치단체가 연중 상시 고용하는 인부 나) 일당은 직무의 내용, 성격, 기술자격등에 따라 지정, 통계 기관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범위내에서 전년도 집행단가 등을 고려하여 적용 다) 계속 지급하고 있는 상여금(연간 400% 수준) 및 근로 기준법상의 각종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월차수당등) 지급 라) 사환 등 임금고시가격의 적용이 지역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편성 나. 무기계약근로자의 국민연금(퇴직금) 및 퇴직전환금, 부상치료비 다. 현업부서 무기계약근로자의 피복비 라. 무기계약근로자의 여비 및 급량비, 국민건강보험부담금, 고용보험료부담금, 산업재해보험료 2. 환경미화원등 무기계약근로자 고용 및 예산편성방법 가. 무기계약근로자 고용시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후 고용 나. 무기계약근로자 관리는 조직관리부서에서 통합 관리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 기간제근로자 등 예산편성 가. 인부임 및 간식비, 부상치료비, 피복비, 인부고용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경비 단, 사무 보조인부와 시설부대비를 수반하는 건설사업의 인부임은 계상할 수 없음 ※ 특정 사업수행을 위한 인부임은 사업완료후 반드시 사역 중단 나. 소요예산은 고용목적 및 내용에 따라 산정

과 목		부 호	해 소
관·《항》 〈세항〉·목			
			2. 기간제근로자를 어떠한 명분으로도 상시 고용하는 등 편법으로 사용할 수 없음 3. 부분근무 및 업무대행 공무원과 대체인력운영지침(중앙인사위 예규 제61호, 2005.3.10)에 의하여 채용되는 대체인력 근로자임금
직무수행경비	102	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2. 예산편성 및 집행방법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경비』 및 『국가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의함
		02 직급보조비	1. 직책수행을 위해 직급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2. 예산편성 및 집행방법 : 직급보조비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등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에 의함
		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2. 예산편성 및 집행방법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 『국가세출예산집행지침(특정업무수행경비)』에 의함 가. 일반회계의 대민활동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병급 불가 나. 국내훈련기관에 파견자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 1) 국내훈련기관에 1개월이상 파견된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기관 중 연구 및 자료수집등에 소요되는 업무수행경비를 원소속 기관에서 월정 직책급의 지급액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 가능 2) 다만, 직급보조비를 제외한 102-01(직책급업무수행경비)를 지급 받거나 파견 받은 기관에서 이와 유사한 경비를 지급받을 경우에는 이를 병급 할 수 없음
<운영경비>	200		
일반운영비	201		1. 일반운영비는 자치단체의 행정활동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이면서 경상적 소모적 경비로 기관의 운영과 관련한 경비만을 편성 하여야 하며, 일체의 자본적 지출항목은 편성할 수 없음

과 목		해 소
관·《항》 〈세항〉·목	부 호	
		2. 자산을 형성하는 자본적지출 항목은 자본적지출 해당과목에 계상
		01 사무관리비
		1. 일반수용비
		가.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1) 당직용 침구 구입 및 세탁비
		2) 관보구독료 및 법령추록 구입비
		3) 기본사무용품비 : 부서내 일반사무비와 기타용품비
		4) 일반수수료, 행정 등 도서구입비
		나. 필기구, 용지대등 사무용 잡품비
		다.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양식, 전단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라. 현수막, 간판 등의 안내·홍보물 제작비 및 기관(관서)의 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등 제작비
		마.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자산취득비에 계상하기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모성 물품구입비
		바. 신문, 잡지, 관보, 팜플렛, 마이크로필름 등의 구입비
		사. TV, 신문, 잡지 등에 의한 광고료 및 광고료
		1) 물품 및 용역등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광고료는 해당 물품 및 용역등의 구입 비목에 계상
		2) 보도사례금은 계상할 수 없음
		아. 기계·기구·잡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선비는 시설비에 계상
		자. 슬러지 처리비용 계상
		카. 차관물자용역대
		1) 외국차관으로 직접 도입되는 물자대
		2) 차관자금에서 직접 지급되는 것으로서 국내·외에서 수행되는 조사, 연구등 용역대 및 해외훈련비
		타. 기타
		1) 물품위탁취급수수료(자산취득시는 해당자산에 포함) 및 업무 대행수수료
		2) 소송료(등기료는 해당자산에 포함)
		3) 전문검정기관에 의뢰하는 검정료, 토지·건물평가등의 감정료, 수질검사 시험·콘크리트 가도시험등의 시험료

과 목		해 소
관·《항》 〈세항〉·목	부 호	
		4) 하역료·승선료·관세등의 외자조작비(자산취득시는 해당 자산에 포함) 5) 고속도로 통행료, 주치료 및 차고료 6) 물품의 운송대(자산취득시는 해당자산에 포함) 7)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및 하차료 8) 외국환관리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 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 수수료와 공모지방채발행 제경비 9) 국선변호사 및 수입·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외국어 통역비 10) 속기료, 원고료, 측량수수료등 각종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수수료(현상모집의 경우등 현상금이 수수료적일때에는 포함하고 측량수수료의 경우 자산취득시 해당자산에 포함) 11)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 2. 위탁교육비 가. 공무원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관련 경비 나. 지방공무원의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등 공공의 교육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 ※ 지방공무원이 퇴근후 대학(방송통신대학 포함)·대학원에 다니거나, 재학할 경우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국내위탁교육훈련에 의하지 않은 개별적인 학위과정에 대한 지원은 불가 3. 운영수당 가. 위원회 참석수당 1)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 2) 법령, 조례등에 수당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관계규정에 정해진 금액을 계상 3)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안에서 별도계상 가능 나. 심사수당 1) 법령,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일·숙직수당 1) 일·숙직 명을 받고 근무하는 자에 대한 수당 2) 자체 설정한 기준단가에 의거 일·숙직 담당부서에 기관 단위로 계상 라. 공무원교육 외래강사료

과 목		해 소
관·《항》 〈세항〉·목	부 호	
		1) 교육기관 강사료 가) 공무원교육원에 출강하는 외래강사료 나)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안에서 별도 계상 가능 2) 자체교육 강사료 가) 자체교육에 초빙한 외래강사에 지급하는 강사료 나) 강사료는 교육담당부서에 일괄 계상 - 교통비, 숙박비에 대한 실비는 따로 계상할 수 있음 다) 소속공무원이 담당업무 또는 교관 요원으로 지정된 자체 교육강사인 경우 강사료는 지급하지 않음 마) 기타 월정액으로 지급되지 않는 제수당 마. 직원능력개발비 1)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사설 어학원 등록시 보조경비 편성 2) 직원교육 담당부서에 일괄 계상 3) 지급방법, 지급대상분야, 지급인원 등 기준은 자체설정운영 가능 4. 피복비 가. 공무원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상시착용(작업복포함) 피복,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 나. 교육기관에서 공무원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피복비 및 민간인에게 대여하는 피복비 다. 상시피복을 직접 제조·지급할 경우에는 피복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 5. 급량비 가. 공무원에게 급여하는 다음의 경비 1) 주식대 2) 부식대 3) 주식 및 부식 취사에 필요한 연료대 4) 연초대 5) 합숙인 경우에는 상기(1-4) 이외의 숙박비를 포함 6) 1항으로부터 4항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운반비 및 공고료등) 7)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8) 주·부식물을 조리 및 취사하는데 필요한 소모성 소도구 구입비

과 목		해 소
관·《항》 〈세항〉·목	부 호	
		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 1)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2) 각종 훈련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3) 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 4)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는 경우의 매식비 5) 야간근무자등 급식비 가) 정규시간 개시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에 대한 급식제공 경비. 단,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나) 을지연습 비상훈련 참가자에 대한 급식제공 경비 6) 휴일근무자 급식비 가) 휴일특별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급식비. 단,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나) 휴일특별근무일수는 지난 회계년도 실적을 감안 1인 1일 1식(기준) 적용(부서단위로 계상) 6. 임차료 가.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나.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및 무상 임차시의 청소비 1) 각종 시험 및 교육은 각급 교육기관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청소비 등 실비지급) 2)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등의 회의장을 이용 다.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이용료 라. 버스, 승용차 등 차량임차료 - 각종 행사용 차량은 자체보유 차량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임차료 계상 마. 각종 시설 및 장비의 운용리스료
		02 공공운영비 1. 공공요금및제세 가. 우편물 발송대 나. 전보료 및 전화료, 회선사용료 다. 철도요금으로 지불되는 물품 등의 운송대 라. 전기료, 가스료, 상·하수도료

과 목		해 소
관·《항》 〈세항〉·목	부 호	
		마. 자동차세, 오물수거료등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지불하는 제세 바. 무선허가신청료 및 검사료 사. 한국상·하수도협회비(수도법 제39조) 등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등의 부담금 아. 기 타 1) 소송사건에 있어서 제공하여야 할 공탁금과 기타공과금 2) 보험(공제) 계약에 의한 해상보험료, 화재보험료, 손해 보험료, 차량보험료, 배상공제료, 기타보험료 3) 소방차량 보험료 예산편성시 가입보험의 특약조건, 차량의 구입연도, 사고유무등 과거 보험료 집행 실적을 감안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 4)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2. 연료비 가. 냉·난방시설(부속포함)의 유지경비와 연료대(점화용포함) 및 연통 구입비(부대경비포함) 단, 난로구입비는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계상 나.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3. 시설장비유지비 가. 시설장비유지보수비는 형성된 자산 즉, 일반유형자산, 주민 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차량선박, 전산프로그램 등의 자산을 유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 나. 유지보수비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은 물론 이에 해당되지 않는 재무회계의 유형자산 및 전산프로그램을 모두 포함하여 이에 대한 유지보수비 일체를 계상 다. 유지보수비에는 해당자산의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에 대해서는 미계상(자본적지출 항목에 별도 계상) 라. 유지보수 공사중 감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비도 본 항목에 계상 마.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유지보수 1) 각종 보수공사비 및 부대비용, 감리비등 일체 2) 도장공사비 및 도장비 일체 3) 각종 수리비 및 수선비 일체 4) 각 자산의 부속품 및 소모품 교체비용 5) 기타 유지보수비 일체 ※ 일반유형자산 : 건물,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 기구, 집기비품, 기타일반유형자산등

과 목		해 소
관·《항》 〈세항〉·목	부 호	
		주민편의시설 :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및미술관, 동물원, 수목원 및식물원, 공연및문화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의료시설, 기타주민편의시설등 사회기반시설 : 도로, 도시철도, 상하수도시설, 하천부속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및축산폐수시설, 재 활용시설, 농수산업기반시설, 댐, 기타사회기반시설 등 바.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사. 통신시설(민방위경보시설 포함) 및 기상관측장비(단, 대체비 는 노임, 제비용포함) 유지비 아. 원동기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육상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자. 전산프로그램이 완료된 이후나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보급받아 사용할 경우 이러한 전산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비 4. 차량선택비 - 차량유류대, 차량정비 유지비 및 차량 소모품비 - 선택유지비(기타 수상운반구 포함) 5. 공무원의료비 가. 의무실·양호실 등 자체의료시설 의약품·소모성의료기구 구입비 나. 공상치료비 등
		03 행사운영비 1.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가. 초청장·홍보유인물·현수막·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 일반 수용비 나.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다.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 2.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 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 다양한 행사의 경우 민간위탁 가능 ※ 다만, 민간위탁관련 예산은 합리적인 산출기준에 따라 편성하고, 민간위탁시 계약관련 법령 준수 ※ 부서연찬회 관련경비는 편성 불가
여 비	202	01 국내 및 월액여비 1.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할구역내 출장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범위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지급기준을 정하여 운영

과 목		해 소
관·《항》 〈세항〉·목	부 호	
		2.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국내출장여비 가. 유사업무를 위한 중복출장 계상 금지 나.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관의 현장 체제비는 시설부대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계상 금지 다.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등록비 예산은 사무관리비에 계상 3.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장의 국내출장여비(청경등) 4. 공무원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경비 5.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자치단체별로 대상부서와 지급기준을 정하여 운영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여행하는 경우의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29④에 의거 지급
		02 국외여비
		1.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외출장여비 - 중앙부처의 계획에 의거 시행하는 국외출장여비 포함 계상 2. 국외여비 집행방법 : 『공무원여비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함
업무추진비	203	1.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편성 및 집행 -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 2. 기타 업무추진비는 월정액으로 지급가능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잡비 2. 예산편성 및 집행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의 기준액에 의해 계상 ※ 동문회비나 학위취득 축하연등 개인적용도 사용 금지
		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에 한하여 편성 및 집행 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는 정원가산금 기준액에 따라 별도 계상

과 목		해 소
관·《항》 〈세항〉·목	부 호	
		03 시책업무추진비 1.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 2. 예산편성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편성 3. 예산집행 가.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실제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 -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 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어떠한 경우라도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음 ※ 개인적 사용금지 및 월정액으로 지급 금지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 제잡비 가. 실과소 운영에 따른 공통경비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절대 사용할 수 없음 - 실과소 전체 직원의 사기양양 경비등으로 사용 나. 과 및 과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담당관실에 대하여도 지급하며, 과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기관장이 4급이하인 지방단일기관도 1과로 인정하여 지급 가능함 다. 시·도 및 시·군·구의 실과가 없는 사업소등의 경우에도 지급 2. 예산편성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한 금액
재 료 비	206	01 일반재료비 1. 제품 또는 생산에 소비되는 물적재화에 관한 비용(재료소비에 의한 주요재료비, 보조재료비, 매입부분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종자 및 자재운송에 따른 조작비 2.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3.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와 사료 구입비 4.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재료비 기타 5.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 실습에 소요되는 소모성기계·기구, 기재, 약품, 비료 및 종축 등의 구입비 02 약품비 1. 상수도 생산급수에 소요되는 직접생산비로서 징수처리에 필요한 모든 약품구입비 및 운송비

과 목		해 소
관·《항》 〈세항〉·목	부 호	
		2. 하수정화처리에 필요한 약품구입비 및 운송비
		03 원수구입비
		1.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급하는 원수를 구입하여 공급할 경우에 소요되는 원수구입대금
		04 정수구입비
		1.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급하는 정수를 구입하여 공급할 경우에 소요되는 정수구입대금
		05 동력비
		1. 상수도 생산급수에 소요되는 직접생산비로서 취수 및 가압 송수용 전동기 운영에 따른 전기사용요금. 단, 사무실용 전기료는 공공운영비목(공공요금 및 제세)에 계상
		2. 하수정화처리에 직접 소요되는 전기사용요금. 단 사무실용 전기료는 공공운영비목(공공요금 및 제세)에 계상
		3. 원동기, 동력장치, 증장비 등 직접생산설비가동에 소요되는 유류대
		4.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상 환금은 절약시설투자에 따른 공공요금(전기료 등)의 절약액 범위내 집행 가능
수선교체비	207	01 급수계량기교체비
		1. 유효기간경과수도계량기 및 고장수도계량기구, 수도계량기 교체에 소요되는 경비
		2. 하수배출량 계측을 위한 계측기구입비 및 설비에 소요되는 경비
		02 수도관 교체비
		1. 기 시공된 급수관중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된 급수관의 교체비용(자재비 및 시공비, 기타 경비 포함)
		03 감리비
		1. 누수복구 및 누수도로 굴착복구 등에 따른 감리비 계상
		04 지원사업성 시설비
		1. 주민 및 타회계 지원을 위한 수도시설 설치에 따른 소요 경비 계상

과 목		해 소
관·《항》 〈세항〉·목	부 호	
		05 기타교체비
		1. 직접생산을 위한 건물, 구축물, 기계, 기구, 집기 및 기타 공작물 등의 소규모 수선비 교체 개량 등 정상적 수선(재료비, 설계비 포함) - 원상회복 및 기능유지 목적 ※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를 연장시키거나 현실적으로 가치를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의 시설비목에 계상
연구개발비	208	1. 자본적지출(자산형성)과 관련된 부대경비 성격의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연구용역비는 유무형자산의 분류에 포함하여 해당 편성목에 계상
		01 연구용역비
		1.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계속적인 연구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적 비용
		02 시험연구비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시험과 관련되는 시약 등 소모성 비용에 국한 ※ 시험연구와 관련된 기계, 기구, 기자재, 약품, 비료 및 종축 등의 구입은 자산취득비에 계상
<경상이전>	300	
일반보상금	301	01 사회보장적수혜금
		1. 법령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수혜금 및 보철구 제작비
		2.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회보장적수혜금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저소득 계층에 지원하는 사회보장적수혜금
		4.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02 장학금 및 학자금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국고대여 장학금은 제외) 가. 통·리장 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에 의한 통·리장 자녀장학금 1) 적용대상 : 통·리장의 자녀(중·고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과 목		해 소
관·《항》 〈세항〉·목	부 호	
		2) 지급액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에 의한 기준 공납금 나.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 적용대상 : 조례규정에 의거 새마을지도자 자녀(중·고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2) 지급액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에 의한 기준 공납금 다.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03 민간인국외여비
		1.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민간인에게 위촉하여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 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시의 여비
		04 외빈초청여비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외빈초청경비중 여비 단, 연회비, 선물비, 환송연행사 등 기타부대경비는 업무추진비로 계상 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인사에 대한 소요경비 나. 항공료, 숙박료, 식비 및 관내시찰여비의 실소요액을 계상 2. 예산집행방법 : 『국가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함
		05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 병역법 제26조 내지 제33조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의 보수 - 병역의무자중 국가의 공익목적 수행을 위하여 소집되어 자치단체에 복무하는 자에 대한 보수 2. 병역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에게 지급하는 중식비, 교통비, 기타 경비각 사업별, 기능별 예산의 각 세항에 계상
		06 행사실비보상금
		1.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실비) - 급량비는 매식비 기준단가 이내로 함 2. 체육행사, 문화재행사, 세미나·공청회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단순 참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3. 국가단위행사에 참석을 위한 여비 4. 산업시찰·견학·참여를 위한 실비
		07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1.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예술단원·운동부에 대한 인건비
		08 기타보상금

과 목		해 소
관·《항》 〈세항〉·목	부 호	
		1.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2. 법령·조례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3.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치료비
이주및재해 보 상 금	302	01 민간인이주보상금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댐건설 등 대규모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이주자에게 대가없이 (토지의 매입에 의하지 않고 토지를 제공받는 경우 포함)지급 하는 이주 정착비 등 이주 보상비 - 이주정착지 조성 등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과목에 계상 02 민간인재해보상금 1. 재해대책을 위하여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2. 재해예방 및 복구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의 식비, 동원장비 유류대 3. 재해예방 및 복구에 참여한 민간인 상해치료비
		01 포상금 1.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경비 나. 배우자를 동반할 경우 배우자에 대한 산업시찰 경비 2. 공로연수비 가. 공로연수로 파견된 공무원의 국내 또는 해외연수비 나. 배우자를 동반할 경우의 배우자에 대한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경비 3.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경비 4. 국제기술협력규정에 의한 해외파견공무원의 학자금 5.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 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6. 지방재정법 제48조에 의한 예산성과금 및 영육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한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7. 선택적복지제도 시행경비 02 성과상여금
포상금	303	

과 목		해 소
관·《항》 〈세항〉·목	부 호	
	연금부담금등	1.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6조의2에 의한 성과상여금
		01 연금부담금
		1.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02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보전금	1. 공무원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01 배상금등
		1. 손해보상금, 국가배상금
		2. 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
		3.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금
	출연금	02 민간검침활동지원비
		1. 팀장급 민간검침원(주부, 통장 등)에 대한 활동지원비
		01 공공기관출연금
		1.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경비 -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민간이전	2. 지방재정법 제15조에 의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출연금 다만, 보험성격의 재해복구(관공선포함) 및 배상공제 관련예산은 공공 운영비 과목에 계상
		02 민간출연금
		1.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에 지원하는 경비 - 장학재단출연금
		03 자치단체출연금
		1.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자치단체간에 지원하는 경비
		04 국외출연금
		1.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해외에 지원하는 경비
		01 민간경상보조
		1.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민간경상보조를 받은 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과 목		해 소
관·《항》 〈세항〉·목	부 호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 2. 지방재정법 제17조의 보조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02 사회단체보조금
		1. 지방재정법 제17조 또는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로서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으로 정한 경비(단, 국고 또는 시·도비보조금에 의한 경우의 보조금은 한도액에서 제외) 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방침을 정하여 운영 3. 대상단체 가.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다.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라.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마.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바.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4. 지원범위 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법령·조례의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음 나. 자본적 경비는 제외
		03 민간행사보조
		1.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가. 단체운영비(사무실 임대료, 상근직원 인건비등) 지원 불가 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집행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예산편성 금지
		04 민간위탁대행사업비
		1.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 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이외의 부담경비 - 시가지·도로 청소대행사업비등

과 목		해 소
관·《항》 〈세항〉·목	부 호	
		2.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의 사업비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수반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타에 지급하는 교부금 4.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의 사업비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수반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타에 지급하는 교부금 6.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05 보험료지원비 1.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한 민간에 대한 보험가입비 지원금, 통·반장 등 자생단체에 대한 보험가입비 등 06 연금지급금 1. 기타직보수에 계상하는 기타직 보수지급 대상자에 대한 퇴직금 2.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 급여 07 이차보전금 1. 특정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 대출 금리 또는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환차손 포함)
자치단체등 이전	308	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 지방자치단체의 경상적인 사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의 경상적인 사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02 자치단체간부담금 1. 지방재정법 제25조의 규정등에 의한 시·군·구에서 시·도에 부담금으로 부담하는 경비 2. 자치단체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등한 자치단체 상호간 부담경비 3. 당해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비 및 비용부담금

과 목		부 호	해 소
관·《항》 〈세항〉·목			
			03 기타부담금
			1. 법령에 의거 국가등에 부담해야 할 경비 2. 광역 교통시설 부담금 징수액중(40% 해당) 건설교통부 소관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부담하는 경비 3. 지방의회·자치단체장 선거에 따른 위탁사무비등 부담금
공기관등 대행사업비	309	01 공기관등대행사업비	1. 광역사업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사업을 공기관에 대행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경비 2.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대행위탁사업 제반경비
국외이전	310	01 국외경상이전	1. 국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 교포 교육경비 2. 외국(자치단체) 및 외국기업체 등에 지급하는 경상적경비 3. 법령, 조약, 협정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외국기관, 국제기관, 외국인 또는 외국과 공동으로 설립된 기관 및 조합에 대하여 지방비에서 직접 지급할 국제부담금 및 조약 또는 협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된 부담금
급수공사비	717		1. 상수도사업의 급수공사수익이 대응하는 급수공사비 - 급수공사수익 범위내에서 계상
급수공사비	717-1	01 신설공사비	1. 급수공사중 신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비, 시공비 및 기타 부대 경비(설계비, 여비 등 포함)
		02 개조공사비	1. 급수공사중 개조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비, 시공비 및 부대경비 (설계비, 감리비, 여비 등 포함)
감가상각비	718		
감가상각비	718-1		1. 입목, 토지를 제외한 유형고정자산 및 무형고정자산이 그 사용 및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점차 감소하는 것을 내용 기간 중 비용으로 계상 -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분 계산 계상

과 목		해 소
관·《항》 〈세항〉·목	부 호	
기타영업비용	719	
행사관련시설비	719-1	1. 행사장 각종시설 및 장치 등 시설에 따른 경비 - 행사개최를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 등으로 임시적, 일회성 시설물 설치·구축경비
영업외비용	720	
자급이자	721	
자급이자	721-1	1. 일시차입금, 공채, 정부차입금(재정자금 등), 외국차관금, 타회계 차입금 등에 대한 발생이자 2. 차관 및 외자투자유치 약정수수료 등 3. 각종 이자에서 발생하는 이차보전금
시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이자	721-2	1.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융자금에 대한 시·도상환이자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이자	721-3	1.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융자금에 대한 시·군·구상환이자
기업채취급재비	722	
기업채취급재비	722-1	1. 공채발행 등에 따른 인쇄비, 수수료 등 관련비용
자산감모손실	723	
자산감모손실	723-1	1. 재고자산의 멸실로 인한 감손, 고정자산의 제각손을 계상
고정자산처분손실	724	
고정자산처분손실	724-1	1. 고정자산의 매각 등의 처분결과 손실발생금액(처분가액이 장부 가액보다 적은경우 그 차이)
기타영업외비용	725	
기타영업외비용	725-1	1. 영업외비용중 위의 과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비용(재고자산 매각손실, 유가증권처분손실, 기타 잡손실 등)
특별손실	730	
임시손실	731	
임시손실	731-1	1. 임시로 발생한 거액의 손실
전기손익수정손실	732	
전기손익수정손실	732-1	1. 전년도에 귀속되어야 할 비용이 발생 또는 지급되는 금액(과오납금 등)

과 목		부 호	해 소
관·《항》 〈세항〉·목			
국고보조금 반환금	732-2		1. 과년도 국고에 의한 경상적 보조금을 수익으로 처리하였을 경우 정산잔액의 당년도 반환액 ※ 당년도 경상보조금의 정산잔액은 해당과목에서 반환
시·도비보 조금반환금	732-3		1. 과년도 시·도비에 의한 경상적 보조금을 수익으로 처리하였을 경우 정산잔액의 당년도 반환액 ※ 당년도 경상보조금의 정산잔액은 해당과목에서 반환
기타특별손실	733		
기타특별손실	733-1		1. 정수장, 배수지, 하수처리장 등의 폐쇄로 인한 철거비용 2. 기타 상기비용에 계상되지 않은 특별한 손실비용 계상
예 비 비	800		
예 비 비	810		
예비비	811		1. 사업예산중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은 경비를 제외한 금액중 각 공기업의 형편을 감안하여 적정액 확보
자본적수입	100		
고정자산매각수입	120		
토 지	121		
자산매각수입	121-1		1. 용도폐지된 고정자산의 매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계상 2. 계상방법 · 매각대금<장부가액 : 매각금액 전액계상,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사업예산의 고정자산 처분손실비목에 계상 · 매각대금>장부가액 : 장부가액을 계상, 차액은 사업예산의 고정자산 처분이익 비목에 계상
입 목	122		
자산매각수입	122-1		1. 가동설비자산중 용도폐지된 불용 입목매각 수입
건 물	123		
자산매각수입	123-1		1. 가동설비자산중 용도폐지된 불용건물 매각수입
기계장치	124		
자산매각수입	124-1		1. 가동설비자산중 용도폐지된 불용기계장치 매각수입
차량운반구	125		
자산매각수입	125-1		1. 가동설비자산중 매각결정된 불용차량 매각수입

과 목		해 소
관·《항》 〈세항〉·목	부 호	
공기구비품	126	
자산매각수입	126-1	1. 용도폐지된 공기구비품 매각수입
기타가동설비자산	127	
자산매각수입	127-1	1. 상기 이외의 기타 가동설비자산 매각수입
투자자산수입	140	
대여금	141	
장기대여금	141-1	1. 수용가대상 상환기간이 1년이상인 장기대여금의 당년도 원금 회수분 계상
기타투자자산수입	142	
기타투자자산수입	142-1	1. 임차보증금, 영업보증금, 임대료반환금 등 계상
고정부채수입	220	
외국차관	221	
차입금	221-1	1. 외국차관 차입금
공 채	222	
매출공채	222-1	1.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출방법에 의해 발행하는 지방채수입액
교부공채	222-2	1. 사업추진에 참여하는 건설업체에게 공사비의 일정액에 대하여 공채를 인수토록 하여 차입되는 자금
모집공채	222-3	1.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증권시장에서 공채를 모집하여 차입되는 자금
지역개발자금	223	
시도융자금수입	223-1	1. 시·도 상하수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자금으로부터의 융자금 수입
시군구융자금수입	223-2	1. 시·군·구 상하수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자금으로부터의 융자금 수입
정부차입금	224	
차입금	224-1	1. 정부 재정융자금 차입금 등 정부차입금 수입
은행차입금	225	
차입금	225-1	1. 은행 등 일반 금융기관 차입금수입
기타고정부채	226	
차입금	226-1	1. 기타 차입금 수입
자본적잉여금수입	320	
시설분담금	321	

과 목		부 호	해 소
관·《항》 〈세항〉·목			
시설분담금	321-1	1. 상수도급수조례 및 하수도사용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자가 부담하는 시설분담금 수입	
타회계건설보조금	322		
국고보조금	322-1	1. 자본적 투자비용의 보전목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타회계건설 보조금	322-2	1. 자본적 투자비용의 보전목적으로 일반회계 또는 기타특별회계가 의무적으로 부담하거나 지원하는 보조금수입	
시도비보조금	322-3	1. 자본적 투자비용의 보전목적으로 시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수입	
기타건설보조금	322-4	1. 자본적 투자비용의 보전목적으로 타회계로부터 지원받은 상기 과목 이외의 보조금 수입	
공사부담금	323		
타회계공사 부담금	323-1	1.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거 상·하수도시설비용을 일반회계 또는 타회계가 부담하는 수입	
타자치단체 공사부담금	323-2	1.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거 다른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수입	
기타공사부담금	323-3	1. 상하수도법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공사원인자가 부담하는 수입	
기타자본적수입	420		
기타자본적수입	421		
기타자본적수입	421-1	1. 고정자산 매각수입, 고정부채수입, 공사부담금수입, 타회계건설 보조금을 제외한 기타의 자본적 수입	
자본적지출	100		
가동설비자산	120		
토 지	121		
자산취득비	405-01	1.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매입비 2. 건물 및 대단위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의 보상비와 동 공사로 인한 손실(경영권, 광업권, 이전비 및 이농비 등)에 대한 보상비 3. 상기사유로 인한 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토지매입에 소요되는 기타 부대경비 4. 대체농지조성비 등	
입 목	122		

과 목		해 소
관·《항》 〈세항〉·목	부 호	
시설비	401-01	1. 기본조사설계비 · 사업타당성 조사 및 교통, 환경영향평가 조사비와 주요 설계시행 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량공사비산정에 필요한 경비 2. 실시설계비 ·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공사현장에서 공사집행이 가능한 설계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3. 공모설계비 · 터키방식 등 설계를 공모하는 경우 소요되는 제반 경비
감리비	401-02	1. 조정, 조립 등에 대한 시설비(인건비, 재료비 포함) 2. 시설비 또는 도로 및 하천항만 등의 대수선비와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공사감리비 3. 감리비는 건설공사감리 대가기준 또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업무보수기준 범위내에서 집행하여야 함
시설부대비	401-03	1. 시설비 또는 도로 및 하천항만 등의 대수선비와 재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로서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각종부담금 · 공사용기계, 물자도입에 따르는 조작비 및 통관수수료 단, 외자를 수반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외자조작비 및 통관수수료를 해당목에 계상 · 재산취득에 따르는 여비, 용지매수 및 시공관리에 직접 필요한 일용잡급,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현장체재비 및 피복비(작업복, 명찰, 헬멧, 완장, 장화, 장갑) 등 · 공고료, 시험 및 직접공사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 · 재산취득에 따른 감정료, 측량수수료 · 공사계약 수수료와 공사감독에 따르는 임차료(차량 또는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포함) 및 수수료 · 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르는 최소한의 의식비 ·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한 보상비 또는 복구비 (예) ① 도로굴착시 민간건물 손상, ② 전주를 세우는데 따른 농작물 피해, ③ 공사인부의 경미한 치료비 2. 당해시설공사의 계약체결, 감정평가 및 현장지도·감독 경비 등 당해 시설공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경비에 한해서 지출하며, 당해 공사와 직접관계가 없는 관서운영비적 경비는 시설부대에서 집행할 수 없음 3. 공사감독관은 책임관리대상사업이 아닌 일반공사대상사업인 경우에만 파견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의 현장체재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예산계상 또는 집행

과 목		해 소
관·《항》 〈세항〉·목	부 호	
		< 지급기준 > · 현장도착일로부터 6일미만 현장에서 체재하는 경우에는 국내 여비규정의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 현장도착일로부터 6일이상 현장체재의 경우에는 1일부터 5일 까지는 국내여비규정의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고, 5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매 초과일수마다 15,000원을 지급하되 시설부대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하여야 함 · 현장체재를 요하지 않는 공사감독관의 경우에는 국내여비규정 제17조(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 공사현장과 근무처와의 왕복교통비는 국내여비규정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자산취득비	405-01	사업용 입목매입비
건 물	123	
시설비	401-01	1. 사업용 건물 신·증축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등 계상(입목과목해소 참조) 2. 건물개조 등 건물의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수선비 ※ 대수선비의 성격 - 수익적지출의 영업비용중 시설장비유지비 및 수선비와 구분되는 대규모의 수선경비이며 -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현실적으로 가치를 증가시키는 수선경비임 - 따라서 당해 고정자산의 원상만을 회복하거나 기능유지만을 위한 소규모의 수선경비는 이 목에 계상하지 않고 수익적 지출의 시설장비유지비목과 수선비목(직접생산설비의 수선비)에 계상
감리비	401-02	1. 건물 신·증축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	401-03	1. 입목시설부대비 참조
자산취득비	405-01	1. 사업용 건물매입비
구축물	124	
시설비	401-01	1. 구축물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입목과목해소 참조 2. 구획정리사업 및 구경확대 등 현저한 가치증대를 수반하는 송·배수관 교체비
감리비	401-02	1. 입목감리비 참조
시설부대비	401-03	1. 입목시설부대비 과목해소 참조

과 목		해 소
관·《항》 〈세항〉·목	부 호	
기계장치	125	
시설비	401-01	1. 기계장치 시설에 따른 장치비로 입목시설비 과목해소 참조 2. 기계장치 대규모 교체비
감리비	401-02	1. 입목감리비 과목해소 참조
시설부대비	401-03	1. 입목 시설부대비 과목해소 참조
자산취득비	405-01	1. 사업용 기계장치 매입비
차량운반구	126	
자산취득비	405-01	1. 사업용차량 및 기타의 육상·수상운반구 구입비
대수선비	405-02	1. 차량운반구의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자본형성비용 계상
공기구비품	127	
자산취득비	405-01	1. 내용연수가 5년 이상이거나 취득원가가 30만원이상인 공구, 기구 및 비품구입비 계상 단, 내용연수 5년미만이거나 취득원가가 30만원미만인 경우는 수익적 지출의 수용비 및 수수료목에 계상
대수선비	405-02	1. 공기구비품의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자본형성비용 계상
도서구입비	405-03	1. 자본형성적 도서구입비 계상
기타가동설비자산	128	
자산취득비	405-01	1. 상기 이외의 기타 가동설비자산 취득비
비가동설비자산	130	
건설중인자산	131	1. 이 계정은 당년도에 공사 미준공으로 해당자산으로의 대체가 불가한 투자비를 별도 구분 계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2. 계속비사업으로 시행되는 확장사업 투자비는 이 계정에 계상하며, 3. 당기중에 준공 가동되는, 일반 확장사업과 계속사업의 최종년도 분에 대한 투자비는 120가동설비자산의 해당 각 과목에 구분 계상
시설비	401-01	1. 장기확장 투자사업비중 시설투자비로 기본조사설계비·실시설계비·시설비 계상(입목시설비과목 참조)
감리비	401-02	1. 감리비
시설부대비	401-03	1. 장기확장 투자사업비중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405-01	1. 장기확장 투자사업비로서 시설에 소요되는 토지매입비·기계장치 등 구입비

과 목		해 소
관·《항》 〈세항〉·목	부 호	
광역사업건설 중인자산	132	
공공기관등에 대한대행사업비	403-02	1. 자치단체간의 광역투자사업비중 부담금적 성격을 가진 사업비로 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제반경비(토지매입비, 시설비, 기계장치 등 구입비 포함)
무형자산	150	
무형자산계정	151	1. 법률상의 권리 또는 이것에 준하는 것과 사실상 가치가 있는 비용
무형자산취득비	151-1	1. 무형고정자산 가. 법률상의 권리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전화가입권 등 기타통시시설 가입권 - 전화가입권등 통신시설가입권은 기업회계등(재무제표상 무형고정 자산으로취급)의 경우에는 시설비에 계상 나. 법률상 권리가 아닌 장래의 수익을 예상한 경영상의 권리로서의 영업권
전산개발비	151-2	1.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S/W 개발비 2. 범용 S/W 구입비
투자자산	180	
투자자산	181	
투자유가증권	181-1	1. 장기간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국채, 지방채 매입
장기대여금	181-2	1.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회수되는 대여금 대여
보증금	181-3	1. 전세금 및 전세권 전신전화가입권 보증금(임차보증금, 영업보증금) 등 · 전신전화가입을 위한 전화기구입은 고정자산 공기구비품 과목에 계상, 교환기·전화 통신시설 등은 기계장치 과목에 계상
기타투자자산	181-4	1. 장기금융상품, 장기성매출채권, 콘도회원권 등 상기항목이외의 투자자산
고정부채상환금	220	
외국차관	221	
외국차관상환금	601-01	1. 외국차관 원금상환금
공 채	222	
상환금	601-01	1. 공채상환금(교부공채상환금 포함)

과 목		해 소
관·《항》 〈세항〉·목	부 호	
지역개발기금	223	
시도상환금	601-01	1.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에 대한 시·도의 상환금
시군구상환금	601-02-	1.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에 대한 시·군·구의 상환금
정부차입금	224	
상환금	601-01	1. 재정자금 등 정부차입금 원금상환금
은행차입금	225	
상환금	601-01	1. 금융차입금 원금상환금
기타고정부채	226	
기타고정부 채상환금	601-01	1. 기타 부채 등에 따른 원금상환금
민간자본이전	410	
민간자본이전	412	
민간자본보조	412-01	1.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2. 수도권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중 농로·창고시설·화장실·오수처리시설 등 민간의 자본형성 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비
민간대행 사업비	412-02	1.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의 사업비, 단 시설물의 건설 및 이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 자본형성적 경비에 한함 2.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수반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타에 지급하는 교부금
기타자본적지출	420	
기타자본적지출	421	
기타자본적지출	421-1	1. 가동설비자산, 비가동설비자산, 고정부채상환금, 무형고정자산 이외 자산이 증가되는 것을 계상
반환금	421-2	1. 과년도 자본적수입으로 처리했던 각종 보조금, 공사부담금의 당년도 반환 정산잔액
이익정산금	421-3	1. 상·하수도특별회계에 출자한 일반회계 등에 대한 이익 납부금 및 지방공기업법 제17조제3항에서 규정한 전출금

과 목			해 소
관·《항》 〈세항〉·목	부 호		
자치단체 자본보조	421-4	1. 중앙정부로부터의 지방양여금 등 교부자금의 산하 자치단체로 재 교부하는 자본금 계상	
시설투자 충당금	421-5	1. 시설비의 계속적인 집중투자를 위한 익년도 시설투자적립 비용의 계상	
예 비 비	800		
예비비	810		
예비비	811	1. 자본예산중 기채재원에 의한 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의 적정 금액계상	

2 公營開發事業

가. 豫算科目構造

사 업 예 산			자 본 예 산		
관	항	세 항	관	항	세 항
600 공영개발 사업수익	610 영업수익	611 용지매출수익	100 자 본 적 수 입	120 고정자산 매각수입	121 토 지
		612 주택판매수익			122 입 목
		613 임대사업수익			123 건 물
		614 관리사업수익			124 차량운반구
		615 기타영업수익			125 공기구비품
	620 영 업 외 수 익	621 이자수익		140 투자자산 수입	126 기타고정자산
		622 타회계전입금수익			141 투자자산
		623 외화환산이익			
		624 고정자산처분이익			
		625 기타영업외수익			
	630 특별이익	631 전기손익수정이익		210 유동부채 수 입	211 선 수 금
		632 기타특별이익			
700 공영개발 사업비용	710 영업비용	711 용지매출원가		220 고정부채 수 입	221 장기차입금
		712 주택판매원가			222 타회계차입금
		713 임대사업비			223 공 채
		714 관리사업비			224 외국차관
		715 업무관리비			225 기타고정부채
		716 경상이전		320 잉 여 금 수 입	321 자본잉여금
		717 감가상각비			
		718 기타영업비용			
				330 기타자본적 수 입	331 기타자본적 수입

사 업 예 산			자 본 예 산		
관	항	세 항	관	항	세 항
	720 영 업 외 비 용	721 지급이자및기업채 취급제비 722 자산감모손실 723 기타영업외비용 724 고정자산처분손실 725 대행사업비	100 자 본 적 지 출	110 재고자산	111 용지조성사업비 112 분양주택건설비 113 지급이자등
	730 특별손실	731 임시손실 732 전기손익수정손실 733 기타특별손실		120 임대주택 건설중인자산	121 장기임대주택건설비 122 영구임대주택건설비
				130 가동설비 자 산	131 토 지 132 입 목 133 건 물 134 구 축 물 135 기계장치 136 차량운반구 137 공기구비품 138 임대주택관리 139 기타고정자산
				140 비 가 동 설비자산	141 건설중인자산
				150 투자자산	151 투자자산
				160 무형자산	161 무형자산
				170 유동부채 상 환	171 선수금상환

사 업 예 산			자 본 예 산		
관	항	세 항	관	항	세 항
				180 고정부채 상 환 금	181 장기차입금상환 182 타회계차입금상환 183 공채상환 184 외국차관상환 185 기타고정부채상환
				190 기타자본적 지 출	191 기타자본적지출
	800 예비비	810 예비비		800 예비비	810 예비비

과 목		해 소
관·《항》 〈세항〉·목	부 호	
공영개발 사업수익	600	
《영업수익》	610	1. 공영개발 사업수익을 용지매출, 주택분양, 임대수익, 관리수익 등 으로 구분 결정
<용지매출수익>	611	
택지매출수익	611-1	1. 일시불로 당해 사업년도분 수익실현 가능한 택지조성시 매출수익
공단용지 매출수익	611-2	1. 일시불로 당해 사업년도중 수익현실이 가능한 공단용지 조성시 매출 수입
연부용지 매출수익	611-3	1. 1년이상 연부로 매출하는 용지매출수입 중 당해 사업년도에 수입되는 연부액 계상
기타용지 매출수익	611-4	1. 상기 과목이외의 용지매출 수입
<주택판매수익>	612	
주택판매수익	612-1	1. 일시불로 당해사업년도중 수익현실 가능한 주택매출 수입
연부주택 판매수익	612-2	1. 1년이상 연부로 매출하는 주택매출수익 중 당해 사업년도에 수입되는 연부액 계상
<임대사업수익>	613	
주택임대수익	613-1	1. 주택임대에 따른 임대료 수입중 당해 사업년도 해당수입분만 계상
용지임대수익	613-2	1. 용지임대에 따른 임대료 수입중 당해 사업년도 실현가능한 수 입분만 계상
기타임대수입	613-3	1. 기타 시설물(상가등)에 다른 임대료 수입중 당해 사업년도 실 현가능한 수입분만 계상
<관리사업수익>	614	
관리사업수익	614-1	1. 주택수탁·관리운영에 따른 제수입
<기타영업수익>	615	
기타영업수익	615-1	1. 상기과목 이외의 기타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620	
이자수익	621	
수입이자	621-1	1. 금융기관의 각종 예금이자 수입
유가증권이자	621-2	1. 국채, 지방채 등 유가증권에 대한 이자수입

과 목		해 소
관·《항》 〈세항〉·목	부 호	
타회계전입금수익	622	지방공기업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회계별 비용 부담원칙)에 의하여 일반회계 또는 기타특별회계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수입(수익적 수지보전 목적)
일반회계전입금	622-1	1. 타회계 전입금수입중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수입
기타특별회계 전입금	622-2	1. 타회계 전입금수입중 일반회계 이외의 기타특별회계가 부담하는 수입
외화환산이익	623	
외화환산이익	623-1	1. 환차이익중 당해년도 수익해당액을 계상
고정자산처분이익	624	
고정자산처분이익	624-1	1. 고정자산의 매각처분 등으로 발생한 고정자산 매각차액
기타영업외이익	625	
유가증권처분이익	625-1	각종 유가증권 처분시 발생한 이익
불용품매각이익	625-2	불용품으로 결정된 저장품 처분이익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	625-3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이한 변상금 수입과 약정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수입
기타영업외수익	625-4	상기 이외의 기타 영업외수입
특별이익	630	
전기손익수정이익	631	
전기손익수정이익	631-1	과년도 수익 조정액 등의 수입
기타특별이익	632	
기타특별이익	632-1	상기 이외의 특별이익(대지정산금 수입 등)
사업비용	700	
영업비용	710	용지매출원가 및 주택판매원가는 당년도 수익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재고자산의 각 비목, 인건비·물건비의 각 비목중 해당되는 과목을 선정하여 예산편성
용지매출원가	711	
택지매출원가	711-1	영업수익중 택지매출수입에 대응하는 원가
공단용지 매출원가	711-2	영업수익중 공단용지 매출수입에 대응하는 원가

과 목		부 호	해 소
관·《항》 〈세항〉·목			
용지연부 매출원가	711-3	영업수익중 용지연부매출 수입에 대응하는 원가	
기타용지 매출원가	711-4	영업수익중 상기이외의 용지매출수입에 대응하는 원가	
주택판매원가	712		
주택판매원가	712-1	완공주택을 일시불로 매출하는 경우 이에 관련된 완공주택 건설 원가를 계상	
주택연부 판매원가	712-2	영업수익중 주택연부 분양수입에 대응하는 원가	
임대사업비	713		
임대사업비	713-1	영업수익중 임대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을 계상{임대주택자금의 거치 이자, 화재보험료, 수선유지비(대수선비 제외) 등}	
임대사업 감가상각비	713-2	임대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관리사업비	714		
관리사업비	714-1	주택관리운영에 따른 제경비를 계상	
업무관리비	715	공통기준 및 상·수도사업 과목해소 적용	
인건비	101	01 기본급 02 수 당 03 정액급식비 04 교통보조비 05 명절휴가비 06 가계지원비 07 연가보상비 08 기타직보수 09 무기계약자근로자보수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직무수행경비	102	01 직책급여업무수행경비 02 직급보조비 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운영경비	201	01 사무관리비 02 공공운영비 03 행사운영비	

과 목		부 호	해 소
관·《항》 〈세항〉·목			
여 비	202	01 국내 및 월액여비 02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203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재 료 비	206	01 일반재료비 02 약품비 03 원수구입비 04 정수구입비 05 동력비	
연구개발비	207	01 연구용역비 02 시험연구비	
경상이전	716		
일반보상금	301	01 사회보장적수혜금 02 장학금 및 학자금 03 민간인국외여비 04 외빈초청여비 05 공익근무요원보상금 06 행사실비보상금 07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08 기타보상금	
이주 및 재해보상금	302	01 민간인이주보상금 02 민간인재해보상금	
포상금	303	01 포상금 02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등	304	01 연금부담금 02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보전금	305	01 배상금등	
출연금	306	01 공공기관출연금 02 민간출연금	

과 목		부 호	해 소
관·《항》 〈세항〉·목			
			03 자치단체출연금 04 국외출연금
민간이전	307		01 민간경상보조 02 사회단체보조금 03 민간행사보조 04 민간위탁대행사업비 05 보험료지원비 06 연금지급금 07 이차보전금
자치단체등이전	308		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02 자치단체간 부담금 03 기타부담금
공기관등대행 사업비	309		01 공기관등대행사업비
국외이전	310		01 국외경상이전
감가상각비	717		
감가상각비	717-1		입목, 토지를 제외한 유형고정자산 및 무형고정자산이 그 사용 및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점차 감소하는 것을 내용기간 중 비용으로 계상
기타영업비용	718		
행사관련시설비	718-1		상수도 과목해소 참고
영업외비용			
지급이자및기 업채취급제비	721		
지급이자	721-1		1. 매출을 위한 용지조성, 주택건설 이외의 사업에 사용된 일시차입금, 지방채, 재정자금 등 정부차입금, 외국차관, 타회계차입금 등에 대한 발생이자 2. 차관 약정수수료 등 3. 각종 이자에서 발생하는 이차보전금
시·도지역개발기 금융자금상환이자	721-2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융자금에 대한 시·도상환이자

과 목		해 소
관·《항》 〈세항〉·목	부 호	
시·군·구지역개발 기금융자금상환이자	721-3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융자금에 대한 시·군·구상환이자
기업채취급제비	721-4	공채발행 등에 따른 인쇄비, 수수료 등 관련비용
자산감모손실	722	
자산감모비	722-1	재고자산의 멸실로 인한 감손, 고정자산의 제각손을 계상
기타영업외비용	723	
기타영업외비용	723-1	영업외비용중 위의 과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비용(재고자산매각 손실, 유가증권처분손실, 기타 잡손실 등)
고정자산처분손실	724	
고정자산처분손실	724-1	고정자산매각 등의 처분결과 손실발생금액(처분가액-장부가액)
대행사업비	725	
대행사업비	725-1	대행사업에 따른 직접비, 간접비
특별손실	730	
임시손실	731	
임시손실	731-1	임시로 거액의 손실이 발생한 금액
전기손익 수정손실	732	
전기손익 수정손실	732-1	전년도에 귀속되어야 할 비용이 발생 또는 지급되는 금액 (과오납금 등)
기타특별손실	733	
기타특별손실	733-1	상기과목이외에 해당하는 특별손실 금액(미해결토지매입비 등)
예비비	800	
예비비	810	
예비비	811	사업예산 중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중에서 사업성격에 따라 자율적 결정하여 계상
자본적수입	100	
고정자산매각수입	120	
토 지	121	

과		목	해 소
관·《항》 〈세항〉·목	부 호		
매각수입	121-1	고정자산중 용도폐지된 불용토지 매각수입	
입 목	122		
매각수입	122-1	고정자산중 용도폐지된 불용입목 매각수입	
건 물	123		
매각수입	123-1	고정자산중 용도폐지된 불용건물 매각수입	
차량운반구	124		
매각수입	124-1	고정자산중 매각결정된 불용차량 매각수입	
공기구비품	125		
매각수입	125-1	고정자산중 매각결정된 공기구비품 매각수입	
기타고정자산	126		
매각수입	126-1	상기외의 기타 고정자산 매각수입	
투자자산수입	140		
투자자산	141		
장기대여금회수	141-1	장기대여금중 당년도에 회수되는 용자금 원금회수	
임대주택보증금	141-2	임대주택의 보증금회수	
기타투자자산	141-3	기타투자자산수입	
유동부채수입	210		
선수금	211		
선수금	211-1	용지 및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미리 전부, 또는 일부를 받는 자금(수익실현시, 용지매출수익 또는 주택판매수익으로 대체)	
고정부채수입	220		
장기차입금	221		
정부차입금	221-1	1. 정부 재정용자금 등 정부차입금 수입	
국민주택기금	221-2	1. 국민주택 건설자금 및 대지조성자금 차입액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수입	221-3	1. 시·도의 지역개발기금 차입액	

과 목		해 소
관·《항》 〈세항〉·목	부 호	
지역개발기금 시군구융자금수입	221-4	1. 시·군·구의 지역개발기금 차입액
일반은행 차 입 금	221-5	1. 일반은행에서 차입하는 건설자금(상환기간 1년이상인 것)
타회계차입금	222	
일반회계차입금	222-1	1. 일반회계에서 차입하는 자금(상환기한이 1년이상인 것)
특별회계차입금	222-2	1. 타특별회계에서 차입하는 자금(상환기간이 1년이상인 것)
공 채	223	
매출공채	223-1	1.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출방법에 의해 발행하는 지방채수입액
교부공채	223-2	1. 사업추진에 참여하는 건설업체에게 공사비의 일정액에 대하여 공채를 인수토록 하여 차입되는 자금
모집공채	223-3	1.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증권시장에서 공채를 모집하여 차입되는 자금
외국차관	224	
차 관	224-1	외국차관 차입금
기타고정부채	225	
기타고정부채	225-1	1. 기타 차입금수입 등
잉여금수입	320	
자본잉여금	321	
국고보조금	321-1	영구임대주택 건설자금 및 자본금 투자비용의 보전목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 수입
타회계보조금	321-2	자본적 투자비용의 보전목적으로 일반회계 또는 기타특별회계가 지원하는 보조금 수입
기타자본적수입	330	
기타자본적수입	331	
기타자본적수입	331-1	상기이외의 기타자본적수입
자본적지출	100	
재고자산	110	
용지조성사업비	111	택지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총비용(당해년도 완공시 판매용 토지 미완공시 미완성토지로 계리하고 수익실현시 용지매출원가로 대체)

과 목		해 소
관·《항》 〈세항〉·목	부 호	
시설비	401-01	1.기본조사설계비 가. 사업타당성 조사 및 교통, 환경영향평가, 문화유적조사비와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량사업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2. 실시설계비 가. 시설과 재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로서 실시설계비 3. 토지보상(매입)비 및 지장물보상, 기타 보상비 등 4. 용지조성시설비(인건비, 재료비 등 포함) 5. 용지조성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
감리비	401-02	○ 시설비 또는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공사감리비
시설부대비	401-03	○ 시설비 또는 재산취득비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로서 ・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자금 ・ 공사용기계, 물자도입에 따르는 조작비 및 통관수수료 단, 외자를 수반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외자조작비 및 통관 수수료를 해당목에 계상 ・ 재산취득에 따르는 여비, 용지매수 및 시공관리에 직접 필 요한 일용잡급,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현장체재비 및 피복비(작업복, 명찰, 헬멧, 완장, 장화, 장갑 등) ・ 공고료, 시험 및 직접공사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 ・ 재산취득에 따른 감정료, 측량수수료 ・ 공사계약 수수료와 공사감독에 따른 임차료(차량 또는 선 박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포함) 및 수수료 ・ 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른 최소한의 의식비 ・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한 보상비 또는 복구비 (예) ㉞ 도로굴착시 민간건물 손상 ㉞ 전주를 세우는데 따른 농작물 피해 ㉞ 공사인부의 경미한 치료 ・ 공사감독관 파견 및 체재비 지급기준은 상수도사업의 과목해소 적용
분양주택건설비	112	분양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총비용(당해년도 완공시 완성주택, 미완 공시 미완성주택으로 계리하고 수익실현시 주택판매 원가로 대체)
시설비	401-01	<용지조성 사업비> 해소 참조

과 목		부 호	해 소
관·《항》 〈세항〉·목			
감리비	401-02		<용지조성 사업비> 해소 참조
시설부대비	401-03		<용지조성 사업비> 해소 참조
지급이자등	113		
지급이자등	113-1		매출을 위한 용지조성 및 분양주택건설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건설에 직접 투자된 비용중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임대주택 건설중인자산	120		
장기임대 주택건설비	121		장기임대주택건설을 위한 토지취득·택지조성·건축비 계상
시설비	401-01		<용지조성사업비>의 과목 참조
감리비	401-02		<용지조성사업비>의 과목 참조
시설부대비	401-03		<용지조성사업비>의 과목 참조
영구임대 주택건설비	122		영구임대주택건설을 위한 토지취득, 택지조성, 주택건설비
시설비	401-01		<용지조성사업비>의 과목 참조
감리비	401-02		<용지조성사업비>의 과목 참조
시설부대비	401-03		<용지조성사업비>의 과목 참조
가동설비자산	130		매출이나 분양목적이 아닌 업무용 고정자산으로서 당해 년도중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자산
토지	131		
자산취득비	405-01		사업용 토지매입비
입목	132		
시설비	401-01		<용지조성사업비>의 과목 참조
감리비	401-02		<용지조성사업비>의 과목 참조
시설부대비	401-03		<용지조성사업비>의 과목 참조
자산취득비	405-01		<용지조성사업비>의 과목 참조
건 물	133		

과 목		해 소
관·《항》 〈세항〉·목	부 호	
시설비	401-01	<용지조성사업비>의 과목 참조
감리비	401-02	○ 업무용 건물 대수선비(자재비 포함)는 시설비에 계상 ※ 대수선비 · 수익적지출의 영업비용중 운영경비내 시설장비유지비 및 수선비와 구분되는 대규모의 수선경비이며 ·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를 증가시키거나 현실적으로 가치를 증가시키는 수선경비임 · 따라서 당해 고정자산의 원상만을 회복하거나 기능유지만을 위한 소규모의 수선경비는 이 목에 계상하지 않고 수익적 지출의 운영경비내에 수선비목(직접생산설비의 수선비)에 계상
시설부대비	401-03	<용지조성사업비>의 과목 참조
구축물	134	<용지조성 사업비><건물>의 해소 참조
시설비	401-01	업무용구축물 대수선비
감리비	401-02	업무용구축물 대수선비
시설부대비	401-03	업무용구축물 대수선비
기계장치	135	
시설비	401-01	<용지조성 사업비> 세항 참조 업무용 기계장치 대수선비
감리비	401-02	<용지조성 사업비> 세항 참조 업무용 기계장치 대수선비
시설부대비	401-03	<용지조성 사업비> 과목 참조
자산취득비	405-01	업무용 기계장치 매입비
차량운반구	136	
자산취득비	405-01	업무용 차량운반구 구입비
공기구비품	137	
자산취득비	405-01	내용년수 5년 이상의 공기구비품 구입비(내용년수 5년미만의 공기구비품은 수익적지출의 일반수용비목에 계상)
임대주택관리	138	
시설비	401-01	장기 영구임대주택의 대수선비(임대사업비의 경미한 수선비 제외) -

과 목		해 소
관·《항》 〈세항〉·목	부 호	
		자재비, 인건비, 기타 부대비용 포함 계상
기타고정자산	139	
자산취득비	405-01	상기이외의 기타 고정자산취득비
비가동설비자산	140	매출이나 분양목적이 아닌 업무용 고정자산으로 당해년도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자산(완공시 가동설비자산으로 대체)
건설중인자산	141	매출을 전제로 하지 않는 고정자산의 건설에 투자되는 토지매입, 건설사업비
시설비	401-01	<용지조성 사업비>의 시설비 과목 참조
감리비	401-02	<용지조성 사업비>의 감리비 과목 참조
시설부대비	401-03	<용지조성 사업비>의 시설부대비 과목 참조
투자자산	150	
투자자산	151	
투자유가증권	151-1	국채, 지방채 매입금
장기대여금	151-2	입주자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융자액(농촌주택, 재해주택에 대한 융자금)
보증금	151-3	전세권, 전신회화가입권, 임차보증금, 영업보증금 등
기타투자자산	151-4	상기이외의 투자자산
무형자산	160	
무형자산	161	
영업권등	161-1	영업권, 산업재산권, 광업권, 어업권, 차지권 등 권리취득비용
개발비	161-2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소프트개발비 포함)
기타무형자산	161-3	상기이외의 무형자산
유동부채상환	170	
선수금상환	171	
선수금상환	171-1	선수금상환(해약에 한함)
고정부채상환	180	
장기차입금상환	181	

과 목		부 호	해 소
관·《항》 〈세항〉·목			
정부차입금 상 환	181-1	정부재정융자금 등 정부차입금 상환액	
국민주택 기금상환	181-2	국민주택건설자금 상환액	
시·도지역개 발기금상환금	181-3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에 대한 시·도의 상환금	
시·군·구지역 개발기금상환금	181-4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에 대한 시·군·구의 상환금	
일반은행 차입상환	181-5	일반은행차입금 상환액	
타회계차입금상환	182		
일반회계 차입금상환	182-1	일반회계차입금 상환액	
타특별회계 차입금상환	182-2	타특별회계차입금 상환액	
공채상환	183		
매출공채상환	183-1	매출공채 상환액	
교부공채상환	183-2	교부공채 상환액	
모집공채상환	183-3	모집공채 상환액	
외국차관상환	184		
외국차관상환	184-1	외국차관 상환액	
기타고정부채상환	185		
임대주택 보증금상환	185-1	임대주택보증금 상환액	
기타고정 부채상환	185-2	고정부채중 상기이외의 부채상환	
기타자본적지출	190		
기타자본적지출	191		
국고보조금 반 환 금	191-1	국고보조금의 사업정산결과에 의한 반환금	

과 목		부 호	해 소
관·《항》 〈세항〉·목			
시·도비보 조금반환금	191-2		시·도비 보조금의 사업정산결과에 의한 반환금
기타반환금	191-3		기타 지원금의 사업정산결과에 의한 반환금
이익정산금	191-4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출자한 일반회계 등에 대한 이익 납부금 및 지방공기업법 제17조제3항에서 규정한 전출금
기타자본적 지 출	191-5		상기이외의 자본적지출
예비비	800		
예비비	810		
예비비	811		자본예산중 기재재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사업성격에 자율결정 계상

가. 豫算科目構造

사 업 예 산			자 본 예 산				
관	항	세 항	관	항	세 항		
600 지역개발 기금사업수익	610 영업수익	611 융자금이자수입	100 자 본 적 수 입	110 투자자산 수 입	111 융자금회수수입		
		612 기타영업수익					
	620 영 업 외 수 익	621 예금이자수입		120 고정부채 수입	121 지방채매출수입		
		622 타회계전입금수입			122 타회계차입금수입		
		623 기타영업외수입			123 기타고정부채수입		
	630 특별이익	631 전기손익수정이익		130 잉여금수입	131 자본잉여금수입		
		632 채무면제이익					
		633 기타특별이익					
	700 지역개발 기금사업 비 용	710 영업비용		711 기금관리비	100 자 본 적 지 출	140 기타자본적 수 입	141 기타자본적수입
				712 지급이자			
720 영업외비용		721 지급이자	110 투자자산	111 기금융자금			
		722 기타영업외비용		112 기타투자자산			
730 특별손실		731 임시손실	120 고정부채 상 환 금	121 지방채상환금			
		732 전기손익수정손실		122 기타고정부채상환금			
		733 기타특별손실	150 무형자산	151 무형자산			
800 예 비 비		810 예 비 비		160 기타자본 적 지 출		161 기타자본적지출	
800 예 비 비		810 예 비 비		800 예 비 비		810 예 비 비	

과 목		해 소
관·《항》 〈세항〉·목	부 호	
지역개발기금 사업수익	600	
영업수익	610	
융자금이자수입	611	
시·도수입자	611-1	시·도에 대한 기금융자금에서 발생하는 당해년도 이자수입
시·군·구수입 이 자	611-2	시·군·구에 대한 기금융자금에서 발생하는 당해년도 이자수입
기타수입자	611-3	기타 공사·공단등에 대한 기금융자금에서 발생하는 당해년도 이자수입
기타영업수입	612	
기타영업수입	612-1	기타 영업수입
영업외수익	620	
예금이자수입	621	
예 금 이 자	621-1	적립기금운용 등 금융기관 등의 각종 예금이자
타회계전입금수입	622	
일반회계전입금	622-1	일반회계의 정상적 비용부담 전입액을 계상
타특별회계 전 입 금	622-2	타회계 부담금 수입중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상경비 보조수입
기 타 영 업 외 수 입	623	
변 상 금 및 위약금수입	623-1	법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 변상금 수입과 약정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수입(융자금상환 연체이자 등)
잡 수 입	623-2	기타 영업외 수익(지역개발기금에서 다른 지방채를 관리하는 경우 일반회계의 상환이자 차액 보전부담금)
특별이익	630	
전기손익수정 이 익	631	
전기손익수정 이 익	631-1	전기의 수익으로서 전기에 조정되지 않고 당기에 그 수익을 발견 함으로써 그 조정이 이루어지는 수입
채무면제이익	632	
채무면제이익	632-1	지방채발행액중 상환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공채상환원리금 중 그 채권시효가 소멸되어 상환의무가 면제됨으로서 발생한 수입

과 목		부 호	해 소
관·《항》 〈세항〉·목			
	기타특별이익	633	
	기타특별이익	633-1	
지역개발기금사업 비	용	700	
영	업 비 용	710	
	기 금 관 리 비	711	상·수도사업 과목해소 준용하여 소관경비를 계상
	인 건 비	101	매출기관 관리 및 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소용되는 제비용 계상
	직무수행경비	102	"
	운 영 경 비	201	"
	여 비	202	"
	업무추진비	203	"
	재 료 비	206	"
	연구개발비	208	"
	민 간 이 전	307	"
	지 급 이 자	712	"
	지 급 이 자	712-1	고정부채 차입(지방채발행 등)에 따른 지급이자로서 당해년도에 상환할 이자는 당초 예산에 전액 계상
	선 급 이 자	712-2	중도상환이자, 공채월말기준 발행에 따른 선이자 계상
영	업 외 비 용	720	
	지 급 이 자	721	
	지 급 이 자	721-1	일시차입금 등, 기금조성용 지방채가 아닌 차입금액에 대한 지급 이자 발생액을 계상
	기타영업외비용	722	
	기타영업외비용	722-1	수수료 등을 적정 계상
특	별 손 실	730	
	임 시 손 실	731	
	임 시 손 실	731-1	임시로 거액의 손실이 발생한 금액
	전기손익수정손실	732	
	전기손익수정손실	732-1	전년도에 귀속되어야 할 비용이 발생되어 지급되는 금액
	기타특별손실	733	

과 목			해 소
관·《항》 〈세항〉·목	부 호		
	기타특별손실	733-1	상기과목 이외의 해당금액
예 비 비		800	
예 비 비		810	
예 비 비		811	세출예산중 적정금액 계상
자 본 적 수 입		100	
투자자산수입		110	
용자금수수입		111	
시·도용자금회수수입	111-1		시·도에 대한 지역개발기금의 용자금액중 상환도래 회수금중 원금수입
시·군·구용자금회수수입	111-2		시·군·구에 대한 지역개발기금의 용자금액중 상환도래 회수금중 원금수입
기타용자금수입	111-3		기타 공사·공단등에 대한 지역개발기금의 용자금액중 상환도래 회수금중 원금수입
고정부채수입		120	
지방채매출수입		121	
차입금	121-1		지방채(지역개발공채) 매출에 의한 차입금 수입
타회계차입금수입		122	
타회계차입금수입	122-1		일반회계 또는 타 특별회계에 의한 차입금 수입
기타고정부채수입		123	
기타고정부채수입	123-1		상기이외의 고정부채 수입
잉여금수입		130	
자본잉여금수입		131	
일반회계출연금	131-1		시·도조례에서 정한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10%이상 출연금 수입
타회계출연금	131-2		지역개발기금의 보전 및 자본형성을 목적으로 일반회계 또는 타 특별회계가 출자하는 자금
타회계보조금	131-3		일반회계 또는 타 특별회계로부터의 자본적 보조금 수입
기타자본적수입		140	
기타자본적수입		141	
기타자본적수입	141-1		상기 이외의 기타자본적 수입
자본적지출		100	

과 목		해 소
관·《항》 〈세항〉·목	부 호	
투자자산	110	
기금용자금	111	
시·도용자금	111-1	시·도에 지역개발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용자하는 금액 •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의료원사업, 공영개발사업, 도시고속 화·도심우회도로사업 등에 용자하는 금액 • 기타 경영수익사업에 용자하는 금액 － 상기이외의 지역개발사업에 용자하는 금액
시·군·구용자금	111-2	시·군·구에 지역개발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용자하는 금액
기타용자금	111-3	기타 공사·공단등에 대하여 용자하는 금액
기타투자자산	112	
기타투자자산	112-1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기금융상품·투자유가증권·장기성 매출채권 전신전화가입권 입차보증금 등
고정부채상환금	120	
지방채상환금	121	
상환금	121-1	지방채발행액중 2009년도에 상환할 원금
기타고정부채상환금	122	
기타상환금	122-1	금융자금 등 기타차입금의 상환금
무 형 자 산	150	
무 형 자 산	151	영업권 차지권 전산프로그램개발비 등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 할 수 있는 권리
개 발 비	151-1	전산프로그램개발 등 연구·용역비용
기타자본적지출	160	
기타자본적지출	161	
이익정산금	161-1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출자한 일반회계 등에 대한 이익금 납부
기타자본적지출	161-2	기타 자본적지출
예 비 비	800	
예 비 비	810	
예 비 비	811	세출예산중 적정금액 계상

4 施設(駐車・環境・競輪)管理公團

가. 豫算科目構造

사 업 예 산			자 본 예 산		
관	항	세 항	관	항	세 항
660 공단사업 수 익	610 영업수익	611 자체사업수익	100 자 본 적 수 입	110 투자자산	111 대여금
		612 대행사업수익			112 기타투자자산
		613 기타영업수익			
	620 영 업 외 수 익	621 이자수익		120 고정자산 매각수입	121 토 지
		622 외화환산이익			122 입 목
		623 자치단체보조금			123 건 물
		624 고정자산처분이익			124 기계장치
		625 기타영업외수익			125 차량운반구
	630 특별이익	631 전기손익수정이익			126 공기구비품
		632 기타특별이익			127 기타고정자산
700 공단사업 비 용	710 영업비용	711 일반관리비	220 고정부채 수 입	221 외국차관	
		712 기관성과급		222 공 채	
		713 대행사업비		223 사 채	
		714 기타영업비용		224 기타고정부채	
	720 영 업 외 비 용	721 지급이자 및 사업채 취급제비		310 자 본 금	311 자본금
				320 자본잉여 금 수 입	321 시비보조금
					322 타회계보조금
					323 자치단체보조금
110 투자자산	111 대여금				
	112 전신전화가입권				
	113 기타투자자산				
120 유형자산	121 토 지				
	122 입 목				
	123 건 물				

사 업 예 산			자 본 예 산		
관	항	세 항	관	항	세 항
		722 자산감모손실 723 고정자산처분손실 724 기타영업외비용			124 구 축 물 125 기계장치 126 차량운반구 127 공기구비품 128 건설중인자산
	730 특별손실	732 임시손실 733 전기손익수정손실 734 기타특별손실		150 무형자산	151 무형자산
	740 법인세등	741 법인세 등		190 유동부채 상 환 금	191 단기차입금상환금 192 유동성장기채무상환금 193 선수금
				220 고정부채 상 환 금	221 외국차관 222 공 채 223 사 채 224 기타고정부채
				420 기타자본 적 지 출	421 타회계보조금 422 기타자본적지출
	800 예 비 비	810 예 비 비		800 예 비 비	810 예 비 비

과 목		해 소
관·《항》 〈세항〉·목	부 호	
공단사업수익	600	
《영업수익》	610	자치단체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입은 자치단체세입으로 납부
<자체사업수익>	611	공단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의 수익
상가임대수익	611-1	공단자체사업으로 운영하는 상가 임대수익
주차료수익	611-2	공단자체적으로 직영하는 주차장 주차료수익
견인차량 관리수익	611-3	각종 차량견인으로 및 보관료 수익
상가관리비수익	611-4	공단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지상, 지하등 상가관리비 수익
공원관리수익	611-5	공원관리수익(입장료, 위탁료, 주차료 등)
수영장관리수익	611-6	수영장관리수익(")
체육시설 관리수익	611-7	각종 체육시설 관리수익(")
장묘관리수익	611-8	장묘관리수익(화장료, 매장료, 수수료 등)
광고수익	611-9	각종 광고료수익
가로등수익	611-10	가로등 관리수익
기타수익	611-11	상기이외의 자체사업수익
대행사업수익	612	주차관리공단 등에게 지자체에서 업무 위·수탁시의 포괄적으로 부담하는 위탁대행수수료 등 부담금수입
직접관리비수입	612-1	단체장이 위·수탁한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관리비수입
간접관리비수입	612-2	단체장이 위·수탁한 사업수행에 따른 공통경비 등 간접관리비 수입
기타영업수익	613	
기타영업수익	613-1	상기 과목이외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생긴 수익
영업외수익	620	
이자수익	621	
예금이자	621-1	적립기금 운용 등 각종 예금이자수입
외화환산이익	622	
외화환산이익	622-1	상수도 과목 해소 참조
자치단체보조금	623	

과 목			해 소
관·《항》 〈세항〉·목	부 호		
자치단체보조금	623-1	자치단체의 보조금(사채이자보전 등)	
고정자산 처분이익	624		
고정자산 처분이익	624-1	고정자산의 매각처분등으로 발생한 수입(비업무용동산, 부동산을 포함한 고정자산의 매각차익과 투자자산의 처분이익 포함)	
기타영업외수익	625		
임대관리수익	625-1	임대자산관리에 따른 제반비용 수익	
불용품매각수익	625-2	불용품으로 결정된 저장품 매각수익	
변상금 및 위약금수익	625-3	법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 변상금수입과 약정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수익	
유가증권 처분이익	625-4	입찰 및 하자보증증권등 유가증권처분이익	
잡수익	625-5	상기이외의 기타영업외수익(가산금 별도 계리시 가산금 포함)	
특별이익	630		
전기손익 수정이익	631		
전기손익 수정이익	631-1	전기손익수정이익	
기타특별이익	632		
기타특별이익	632-1	채무면제이익등 기타특별이익	
공단사업비용	700		
영업비용	710		
일반관리비	711	가능별원가계산을 위한 영업비용구분에 따라 공단사업을 전반적으로 관리수행하는 제반경비	
인건비	100	공단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참조	
급 여	101	공단보수규정에 의한 직급별 평균 급여산정, 결원율을 감안 예산 계상 연봉대상자의 기본연봉총액 계상	
제수당	102	공단보수규정에 의한 상여수당 등 제수당	
기타직보수	103	정관상 정원에 반영된 계약직근로자의 보수, 상여금, 법정수당	
무기계약자 근로자보수	104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보수, 상여금 및 법정수당	

과 목		부 호	해 소
관·《항》 〈세항〉·목			
기간제근로자 보 수	105	정원외의 업무관련 계약직, 임시직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상여금 및 법정수당	
퇴직급여	106	종사자 퇴직급여 총당금 종사자 퇴직보험료 국민연금전환금 등 계상	
경 비	200		
복리후생비	201	1. 공단 복리후생규정에 의거 편성 - 자체지급 기준이 정하여진 경우에 직책급수행비 및 직급보조비 계상 가능 2. 종사자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 의료보험료, 산재·고용보험료 3. 직장동호인회 활동지원, 직원휴양시설이용료 등 4.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시행경비	
여비교통비	202	1. 국내여비 2. 국외여비 3. 외빈초청여비	
통신비	203	1. 전화요금(이동전화, PCS사용료포함) 2. 전용회선 사용료 3. 케이블TV수신료 4. 무선호출기사용, 무선국 전파사용료	
수도광열비	204	1. 수도·전기·가스 등 연료대 비용 계상 2.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상 환금은 절약시설투자에 따른 공공요금(전기로 등)의 절약 액 범위내에서 집행가능 3.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냉난방 시설 교체에 의한 설비투자상환금은 시설교체에 따른 범위내에서 집행가능	
공공요금및 제 세	205	우편·운송요금·오물수거료, 법령에 의해 지불·부담하는 제세 (자동차세 포함)	
일반수용비	206	1. 사무용 각종 소모품비 2. 전산소모품 3. 방역용 약품 구입비 4. 소모성 소규모 비품구입비 5. 업무용 S/W구입비 6. 쓰레기 봉투대금	

과 목		해 소
관·《항》 〈세항〉·목	부 호	
피복비	207	1. 작업복, 위생복, 근무복 등 피복 구입 또는 제조경비 2. 침구류 구입 3. 안전모, 안전화, 작업화 등 개인장구 구입비
도서인쇄비	208	1. 각종 사무용 인쇄비 2. 정기간행물 구독, 도서구입비 3. 사진(슬라이드) 인화료
지급임차료	209	1. 건물, 토지 등의 임차료 2. 차량임차료 3. 회의장 임차료
수선유지비	210	건물 및 각종장비 수선유지비(수선유지에 필요한 재료구입 등 포함)
차량유지비	211	차량유지 및 차량유류대
보험료	212	화재보험료 등 각종 보험료
지급수수료	213	1. 각종검사수수료 2. 위탁판매수수료 3. 결산감사수수료 및 세무조정수수료 4. 심사수당(경륜공단) 5. 방역소독비
업무추진비	214	1.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서 정한 접대비 한도내에서 공단의 업무수행을 위한 제경비 계상 2. 부서별 또는 업무단위별로 계상하되, 개인에게 월정액 지급은 불가 3. 집행방법은 공통기준 참조
교육훈련비	215	각종 교육훈련 관련 경비
재료비기타	216	1. 소모성 공기구류, 식·음료재료비 2.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 구입 3. 제품 또는 생산에 소요되는 재료구입 자재운송에 대한 조작비 4. 동물, 식물 및 종자구입비와 사료구입비
행사등잡비	217	1.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 등 업무수행과 관련한 활동비 2. 각종행사 및 홍보비용, 회의비, 간담회, 워크숍, 직원격려 등 지출비용 계상 3. 일·숙직수당, 고객접대용 다과구입 등 기관·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 ※ 경륜공단의 경우 행사비(217-1), 제잡비(217-2) 과목으로 구분 편성가능

과 목		해 소
관·《항》 〈세항〉·목	부 호	
		· 행사비 : 특별경륜 및 고객사은행사경품 및 시상용품 구입, 공익목적의 문화·체육행사개최 및 지원경비, 고객 확보를 위한 현장홍보활동비 및 이벤트 행사비용, 친선경륜개최경비, 경륜선수의 밤 행사비 등 · 제접비 : 경륜입원 선수보조금, 투표사고 공단부담금, 공정관련 선수조사비, 일·숙직수당 등
감가상각비	218	건물 건축물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 법령에 의한 당해연도분 감가상각비
광고선전비	219	신문, 방송광고 선전비
연구개발비	220	1. 신규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사업타당성 분석 2. 시험연구, 조사분석비 3. 전산 S/W 개발
위탁관리비	221	1. 청소·경비·세탁·시설물관리 등의 비용 계상 2. 해당 용역업체의 직접적인 위탁관리비용
보상비	222	1. 교육 세미나, 공청회 등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여비 2. 세미나, 공청회, 체육행사, 예술행사 등의 발표자 등 출연자에게 지급하는 반대급부적 사례금 (단순 참가자에게는 지급 불가) 3. 산업시찰, 견학 등에 참여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여비 등 실비 4. 업무관련 민간인 피해보상금(경륜선수 재해시 상해보험한도 초과분에 대한 사고처리비 등) 5. 공익근무요원에게 지급하는 급식비, 피복비, 교통비 등 계상 6. 경륜선수 자전거수리보상금, 헬멧보상금 7. 부정경륜제보자 보상금, 체육시설물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포상금	223	1. 종업원에 대한 포상금 및 포상품 구입비 2. 개인성과급 3. 예산절감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금 계상 4. 경륜선수상금, 특별경륜시상금, 경륜선수포상금 및 상품구입비
배상금	224	1. 배상책임보험 면책금 2. 손해배상, 망실, 도난, 법령에 의한 승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공탁금등	225	1. 법령에 의해 지불·부담하는 국내부담금 2. 협회비 등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3. 소송사건 공탁금 및 국고채당금, 임대차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과 목		해 소
관·《항》 〈세항〉·목	부 호	
기관성과급	712	
기관성과급	712-1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기관성과급 계상
대행사업비	713	
대행사업비	713-1	위탁대행사업에 따른 관리비용으로 711일반관리비(자체사업비)을 기준으로 해당 과목 선정 예산 계상
기타영업비용	714	
기타영업비용	714-1	상기과목 이외의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720	상수도 과목해소 준용
지급이자 및 사업채취급제비	721	
지급이자	721-1	장기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사업채취급제비	721-2	사채발행에 따른 수수료 등 제비용
자산감모손실	722	
자산감모비	722-1	상수도과목 해소 참조
고정자산처분손실	723	
고정자산처분손실	723-1	
기타영업외비용	724	
운동부운영비	724-1	운동팀 운영에 관련된 제반비용
기부금	724-2	불우복지시설 및 각종 행사개최 지원 목적의 기부금
기타영업외비용	724-3	상기과목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영업외비용
보조금반환금	724-4	국고 지방비이 정상보조금 정산잔액 반환금
대행사업반환금	724-5	대행사업비 정산잔액 반환금
특별손실	730	
임시손실	732	
임시손실	732-1	상수도 과목 해소 참조
전기손익 수정손실	733	
전기손익 수정손실	733-1	상수도 과목 해소 참조

과 목			해 소
관·《항》 〈세항〉·목	부 호		
보조금반환금	733-2	과년도 국고·지방비의 경상보조금 정산잔액 반환금	
대행사업반환금	733-3	과년도 대행사업비 정산잔액 반환금	
기타특별손실	734		
기타특별손실	734-1	상수도 과목 해소 참조	
법인세등	740		
법인세등	741		
법인세등	741-1	세무결산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 등 계상	
예비비	800		
예비비	810		
일반예비비	810-1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액에 충당 하기 위한 자금 2. 사업예산중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은 경비를 제외한 적정금액 계상	
인력증원보 급예비비	810-2	신규채용 등 인력증원에 따른 소요인건비	
정현원차보 급예비비	810-3	정·현원 차이에 따른 소요인건비	
자본적수입	100		
투자자산	110		
대여금	111		
장기대여금	111-1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기대여금(대학생자녀학자금대여금 등) 회수액	
기타투자자산	112		
기타투자자산	112-1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기예금상품, 투자유가증권, 임차 보증금 등 수입액	
고정자산매각수입	120		
토지	121		
자산매각수입	121-1	고정자산중 용도폐지된 불용토지 매각수입	
입목	122		
자산매각수입	122-1	고정자산중 용도폐지된 불용입목 매각수입	

과 목		해 소
관·《항》 〈세항〉·목	부 호	
건물	123	
자산매각수입	123-1	고정자산중 용도폐지된 불용건물 매각수입
기계장치	124	
자산매각수입	124-1	고정자산중 용도폐지된 불용기계장치 매각수입
차량운반구	125	
자산매각수입	125-1	고정자산중 용도폐지된 불용차량 매각수입
공기구비품	126	
자산매각수입	126-1	용도폐지된 공기구비품 매각수입
기타고정자산	127	
매각수입	127-1	상기외의 기타고정자산 매각수입
고정부채수입	220	
외국차관	221	
차입금	221-1	공단건설사업비의 조달을 위한 외국차관 차입금
공채	222	
차입금	222-1	공단건설사업비 조달을 위한 공채발행 수입
사채	223	
사채	223-1	사채발행수입
기타고정부채	224	
차입금	224-1	공단건설사업비 조달을 위한 금융기관등 기타 차입금 수입
자본금	310	
자본금	311	
보통주자본금	311-1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한 자본금(현금 및 현물)
증자자본금	311-2	지방자치단체에서 증자등을 위하여 출자한 자본금
자본잉여금수입	320	
국고보조금	321	
국고보조금	321-1	자본적 투자비용의 보전목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자치단체보조금	322	
자치단체보조금	322-1	자본적 투자비용의 보전목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과 목		해 소
관·《항》 〈세항〉·목	부 호	
기타자본적수입	420	
기타자본적수입	421	
기타자본적수입	421-1	공단사업을 위한 상기이외 기타자본적 수입금
자본적지출	100	
투자자산	110	
대여금	111	
대여금	111-1	대학생자녀학자금으로 무상용지하는 경우의 대여금 등 계상
전신전화가입권	112	
전신전화가입권	112-1	전신전화가입권리(시설·장비취득비 제외)
기타투자자산	113	
기타투자자산	113-1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기예금상품, 투자유가증권, 임차보증금, 영업보증금 등
유형자산	120	상수도 과목 해소 참조
토지	121	
자산취득비	405-01	상수도 과목 해소 준용
입목	122	
시설비	401-01	상수도 과목 해소 준용
감라비	401-02	상수도 과목 해소 준용
시설부대비	401-03	상수도 과목 해소 준용
자산취득비	405-01	상수도 과목 해소 준용
건 물	123	
시설비	401-01	상수도 과목 해소 준용
감라비	401-02	상수도 과목 해소 준용
시설부대비	401-03	상수도 과목 해소 준용
자산취득비	405-01	상수도 과목 해소 준용
건축물	124	
시설비	401-01	상수도 과목 해소 준용

과 목		부 호	해 소
관·《항》 〈세항〉·목			
	감리비	401-02	상수도 과목 해소 준용
	시설부대비	401-03	상수도 과목 해소 준용
	자산취득비	405-01	상수도 과목 해소 준용
	기계장치	125	
	시설비	401-01	상수도 과목 해소 준용
	감리비	401-02	상수도 과목 해소 준용
	시설부대비	401-03	상수도 과목 해소 준용
	자산취득비	405-01	상수도 과목 해소 준용
	차량운반구	12	
	자산취득비	405-01	상수도 과목 해소 준용
	공기구비품	127	
	자산취득비	405-01	상수도 과목 해소 준용
	건설중인자산	128	
	시설비	401-01	상수도 과목 해소
	감리비	401-02	상수도 과목 해소 준용
	시설부대비	401-03	상수도 과목 해소 준용
	자산취득비	405-01	상수도 과목 해소 준용
	무형자산	150	
	무형자산	151	
	무형자산	151-1	영업권, 산업재산권, 광업권, 차지권, 차입비 등
	개발비	151-2	1.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순익을 확실하게 기여할 수 있는 것 2. 전산소프트웨어 개발 및 구입비 계상
	유동부채상환	190	
	단기차입금상환금	191	
	단기차입금 상환금	191-1	1년이내에 지급 또는 상환해야 할 상환금

과 목		해 소
관·《항》 〈세항〉·목	부 호	
유동성장기 채무상환금	192	
유동성장기 채무상환금	192-1	장기부채중 유동성 장기채무에 해당되는 금액
선수금	193	
선수금	193-1	일반적 상거래에 발생한 것에 대한 선수금액
고정부채상환금	220	
외국차관	221	
상환금	601	상수도 과목해소 준용
공채	222	
상환금	601	상수도 과목해소 준용
사채	223	
상환금	601	상수도 과목해소 준용
기타고정부채	224	
상환금	601	
기타자본적지출	420	
타회계보조금	421	
반환금	421-1	시비 정산잔액
기타자본적지출	422	
기타자본적지출	422-1	상기이외 기타 자본적 지출
예비비	800	
예비비	810	
예비비	811	자본예산규모를 감안 적정금액 계상

5 地下鐵公社

가. 豫算科目構造

사 업 예 산			자 본 예 산		
관	항	세 항	관	항	세 항
600 지 하 철 사업수익	610 영업수익	611 운수사업수익	100 자 본 적 수 입	110 투자자산	111 대여금
		612 부대사업수익			112 기타투자자산
		613 기타사업수익		120 고정자산 매각수입	121 토 지
		614 대행사업수익			122 입 목
	620 영 업 외 수 익	621 이자수익			123 건 물
		622 임대료수익			124 기계장치
		623 보조금 등 수익			125 차량운반구
		624 외환환산이익			126 공가구비품
		625 고정자산처분이익			127 기타가동설비자산
		626 기타영업외수익		220 고정부채 수 입	221 외국차관
	630 특별이익	631 전기손익수정이익			222 공 채
		632 기타 특별이익			223 타회계차입금
700 지 하 철 사업비용	710 영업비용	711 매출원가			224 도특자금
		712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225 사채
		713 대행사업비			226 기타 고정부채
				310 자 본 금	311 자 본 금
				320 자본잉여금 수 입	321 자본잉여금수입
					322 타회계보조금
					323 공사부담금
				420 기타자본적 수 입	421 기타자본적수입

관	항	세 항	관	항	세 항
	720 영 업 외 비 용	721 지급이자및기업채 취급제비 722 자산감모손실 723 고정자산처분손실 724 기타영업외비용	100 자 본 적 지 출	110 유동자산	111 재고자산
				120 투자자산	121 투자자산 122 기타투자자산
	730 특별손실	731 임시손실 732 전기손익수정손실 733 기타 특별손실		130 유형자산	131 토 지 132 입 목 133 건 물 134 구 축 물 135 선로설비 136 전로설비 137 기계장치 138 차량운반구 139 공기구비품 140기타기동설비자산
	740 법인세등	741 법인세 등		150 무형자산	151 무형자산
				190 유동부채 상 환 금	191 단기차입금 192 유동성장기채무 193 선수금

관	항	세 항	관	항	세 항
				220 고정부채 상 환 금	221 외국차관 222 공 채 223 타회계차입금 224 도특자금 225 사 채 226 기타고정부채
				420 기타자본 적 지 출	421 타회계보조금 422 기타자본적지출
	800 예 비 비	810 예 비 비		800 예 비 비	810 예 비 비

과 목		해 소
관·《항》 〈세항〉·목	부 호	
지 하 철 사업수익	600	
영업수익	610	
운수사업수익	611	
운수수익	611-1	지하철 운임수익
부대사업수익	612	
사용료수익	612-1	전용선, 차량, 역공동사용료 수익
광고료수익	612-2	지하철광고계획에 의한 터널과 역구내 및 차내광고수익
부대시설 임대수익	612-3	역구내 상가 및 편의시설 임대수익
기타사업수익	613	
기타사업수익	613-1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 등 상기과목 이외의 영업에 수반되는 잡수입, 여객유치시설수익, 후생복지시설수익 등
대행사업수익	614	
대행사업수익	614-1	대행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
영업외수익	620	
이자수익	621	
일반이자	621-1	예금이자, 유가증권 이자 수입
대여금이자	621-2	타회계 등에 대한 대여금 이자수입
임대료수익	622	
임대료수익	622-1	토지 및 건물의 임대료수익
보조금등수익	623	
타회계부담금	623-1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원가보전목적 등 지출비용의 보전을 목적 으로 하는 다른 단체의 경비부담금 등
보조금	623-2	국비·시비보조금 등 수익적 보조금 수입
외화환산이익	624	
외화환산이익	624-1	환차이익중 당해연도 수익해당액을 계상
고정자산 처분이익	625	
고정자산	625-1	상수도 과목 해소 참조

과 목		부 호	해 소
관·《항》 〈세항〉·목			
	처분이익		
	기타영업외수익	626	
	기본재산 임대수익	626-1	1. 지하철공사 소유자산의 임대료, 임대료에 따른 상·하수도,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 부담금 수입 2. 지하철 공동사용구간의 전기요금부담금 수입
	불용품매각수익	626-2	상수도 과목 해소 참조
	변상금및위약금	626-3	상수도 과목 해소 참조
	유가증권 처분이익	626-4	상수도 과목 해소 참조
	잡 수 입	626-5	상수도 과목 해소 참조
	특별이익	630	
	전기손익 수정이익	631	
	전기손익 수정이익	631-1	상수도 과목 해소 참조
	기타특별이익	632	
	기타특별이익	632-1	상수도 과목해소 준용
	지하철사업 비 용	700	
	영업비용	710	
	매출원가	711	해당비목은 <판매와 일반관리비>의 각 비목을 선정하여 계상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712	
	인건비	100	공사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참조
	급 여	101	1. 공사보수규정에 의한 직급별 급여, 직급별 평균 임금산정 및 결원을 감안 계상 2. 연봉제대상자의 기본연봉액을 총액으로 계상
	제 수 당	102	1. 공사보수규정 등에 규정하고 있는 상여수당 등 제수당 2. 연봉제대상자의 부가급여중 제수당에 해당되는 경비는 별도 계상
	기타직보수	103	정원에 포함된 계약직근로자의 보수, 상여금, 법정수당

과 목		부 호	해 소
관·《항》 〈세항〉·목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104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보수, 상여금 및 법정수당
기간제근로 자보수	105		정원외의 업무관련 계약직, 임시직 등 기간제근로자보수, 상여금 및 법정수당
퇴직급여	106		종업원 퇴직급여 충당금, 종업원 퇴직보험료, 국민연금 전환금 등 계상
경 비	200		
복리후생비	201		1. 공사 복리후생규정에 의거 편성 2. 자체 지급기준이 정하여 진 경우에 직책수행비 및 직급보조비 계상 가능 3. 종업원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 의료보험료, 산재·고용보험료 4. 연봉제대상자의 부가급여중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는 경비 별도 계상
여비교통비	202		국내여비,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공공요금 및 제세	203		1. 우편·운송요금·오물수거료, 법령에 의해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2. 협회비 등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3. 소송사건 공탁금 및 국고채당금, 임대차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수도광열비	204		1.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상환금은 절약시설투자에 따른 공공요금(전기로 등)의 절약액 범위내에서 집행가능 2.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냉난방시설교체에 의한 설비투자상환금은 시설교체에 따른 범위내에서 집행가능
소모품비	207		1. 기본사무용 경비 및 사무용 각종 소모품비(전산소모품 포함) 2. 방역용 약품구입비 3. 소모성 소규모 비품구입비 3. 업무용 전산 S/W구입비 4. 쓰레기봉투 구입비
피복비	208		1. 작업복, 위생복, 근무복 등 피복 구입 또는 제조경비 2. 침구류 구입 3. 안전모, 안전화, 작업화 등 개인장구 구입비
도서인쇄비	209		1. 각종 업무관련 인쇄비, 승차권 제작(용지구입비 포함) 2. 정기간행물 구독, 도서구입비

과 목		해 소
관·《항》 〈세항〉·목	부 호	
지급임차료	210	1. 건물, 토지 등의 임차료 2. 차량임차료 3. 회의장 임차료
수선유지비	211	건물·기계장치 및 각종장비 수선유지비
차량비	212	차량 및 운반구유지 및 유류대
보험료	213	공탁금, 화재보험료 등 각종 보험료
지급수수료	214	1. 청사청소용역 및 경비용역비 2. 방역소독비 3. 각종 검사수수료 4.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 5. 사진(슬이드)인화, 침구세탁료, 산업폐기물수거료 6. 결산감사수수료
업무추진비	215	1. 조세제한특례법 제136조에서 정한 손금인정한도내에서 공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제경비 계상 2. 부서별 또는 업무단위별로 계상하되, 개인에게 월정액 지급은 불가 3. 집행방법은 공통기준 참조
교육훈련비	216	각종 교육훈련 관련 경비
재료비기타	217	1. 소모성 공기구류 2.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 구입 3. 제품 또는 생산에 소요되는 재료구입 자재운송에 대한 조작비 4. 동물, 식물 및 종자구입비와 사료구입비
행사등잡비	218	1.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 등 업무수행과 관련한 활동비 2. 각종행사 및 홍보비용, 회의비, 간담회, 워크샵, 직원격려 등 지출비용 계상 3. 일·숙직수당, 고객접대용 다과구입 등 기관·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
감가상각비	219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 법령에 의한 당해연도분 감가상각비
광고선전비	220	신문, 방송광고 선전비
연구개발비	221	1. 신규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 2. 시험연구, 조사분석비 3. 전산 S/W 개발용역비 4. 경영진단용역

과 목		해 소
관·《항》 〈세항〉·목	부 호	
보상금	301	○ 교육, 세미나, 공청회 등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 량비 및 여비 ○ 세미나, 공청회, 체육행사, 예술행사 등의 출연자에게 지급하는 반대 급부적 사례금(단순참가자에게는 지급 불가) ○ 산업시찰, 견학 등에 참여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여비 등 실비 ○ 여객사상사고처리비, 정액권분실민원관련 피해보상금 ○ 재해복구참여 민간인 식비, 장비유류대, 사고시 치료비
포상금	302	○ 종업원에 대한 포상금 및 포상금 구입비 ○ 개인별 성과급 ○ 예산절감에 따른 성과금 계상
출연금	30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단체 등에 대한 출연금
기관성과급	713	
기관성과급	713-1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기관성과급 계상
대행사업비	714	
대행사업비	714-1	지하철대행사업비
영업외비용	720	
지급이자 및 기업채취급제비	721	
지급이자	721-1	상수도 과목해소 준용
사업채취급제비	721-2	상수도 과목해소 준용
자산감모손실	722	
자산감모손실	722-1	상수도 과목해소 준용
고정자산 처분손실	723	
고정자산 처분손실	723-1	상수도 과목해소 준용
기타영업외비용	724	
기타영업외비용	724-1	상수도 과목해소 준용
보조금반환금	724-2	국비, 지방비의 경상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724-3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과 목		해 소
관·《항》 〈세항〉·목	부 호	
특별손실	730	
임시손실	731	
임시손실	731-1	상수도 과목해소 준용
전기손익 수정손실	732	
전기손익 수정손실	732-1	상수도 과목해소 준용
보조금반환금	732-2	과년도 국비·지방비의 경상보조금 정산잔액 반환금
대행사업반환금	732-3	과년도 대행사업비 정산잔액 반환금
기타특별손실	734	
기타특별손실	734-1	상수도 과목해소 준용
법인세등	740	
법인세등	741	
법인세등	741-1	세무결산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 등
예 비 비	800	
예 비 비	810	
일반예비비	810-1	일반예비비
인력증원 보급예비비	810-2	신규채용 등 인력증원에 따른 소요인건비
정현원차 보급예비비	810-3	정원과 현원간 차이로 인한 소요인건비
자본적수입	100	
투자자산	110	
대여금	111	
장기대여금	111-1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기대여금(대학생자녀학자금 등) 회수액
기타투자자산	112	
기타투자자산	112-1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기예금상품, 투자유가증권, 임차 보증금 등 수입액

과 목		해 소
관·《항》 〈세항〉·목	부 호	
고정자산 매각수입	120	
토 지	121	
자산매각수입	121-1	가동설비자산중 용도폐지된 불용토지 매각수입(매각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계상)
입 목	122	
자산매각수입	122-1	가동설비자산중 매각결정된 불용입목 매각수입(매각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계상)
건 물	123	
자산매각수입	123-1	가동설비자산중 용도폐지된 불용건물 매각수입(매각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계상)
기계장치	124	
자산매각수입	124-1	불용 결정된 기계장치 매각수입
차량운반구	125	
자산매각수입	125-1	가동설비 중 불용 결정된 차량 매각수입(매각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계상)
공기구비품	126	
자산매각수입	126-1	불용결정된 공기구비품 매각수입
기타가동 설비자산	127	
자산매각수입	127-1	상기이외의 기타 가동설비 자산매각수입(매각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계상)
고정부채수입	220	
외국차관	221	
차 입 금	221-1	지하철건설사업의 조달을 위한 외국차관 차입금
공 채	222	
차 입 금	222-1	지하철건설사업의 조달을 위한 공채발행 수입
타회계차입금	223	
차 입 금	223-1	지하철건설사업비 조달을 위하여 일반회계 또는 타특별회계 차입금 수입

과 목		해 소
관·《항》 〈세항〉·목	부 호	
도특자금	224	
차 입 금	224-1	지하철건설사업비 조달을 위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용자되는 차입금 수입
사 채	225	
사 채	225-1	상환기간이 1년이상인 사채의 차입금
기타고정부채	226	
차 입 금	226-1	지하철건설사업비 조달을 위한 금융기관 용자금등 기타 차입금 수입
자 본 금	310	
자본금	311	
보통주자본금	311-1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한 자본금(현금 및 현물)
우선주자본금	311-2	시민주 발행에 의하여 납입된 자본금
증자자본금	311-3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증자등을 위하여 출자한 자본금
자본잉여금수입	320	
자본잉여금수입	321	
출 연 금	321-1	지하철의 기본시설설비 등을 위하여 시·도가 출연하기로 확정된 금액계정
보 조 금	321-2	지하철건설사업비 조달을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보조금 수입
기타자본잉여금	321-3	상기외의 기타 자본잉여금 수입
타회계보조금	322	
타회계보조금	322-1	지하철건설사업비 조달을 위한 타특별회계의 건설보조금
공사부담금	323	
공사부담금	323-1	지하철건설사업에 따른 법령 및 설치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타 특별회계등에서 부담하는 공사 부담금
기타자본적수입	420	
기타자본적수입	421	
기타자본적수입	421-1	고정자산 매각수입, 고정부채수입, 공사부담금수입, 타회계건설 보조금수입 등을 제외한 기타의 자본적수입

과 목		해 소
관·《항》 〈세항〉·목	부 호	
자본적지출	100	
유동자산	110	
재고자산	111	
저장품	111-1	지하철 전동차 및 시설물 유지 보수에 필요한 예비품
투자자산	120	
투자자산	121	
투자유가증권	121-1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국채·지방채(지방공기업법 제69조 관련)
장기대여금	121-2	장기적으로 무상 대여하는 대학생자녀학자금 등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기대여금
기타투자자산	122	
전신전화가입권	122-1	전신전화가입권(시설비·자산취득비 제외)
기타자산	122-2	상기이외의 투자자산
유형자산	130	
토 지	131	
자산취득비	405-01	상수도 과목 해소 참조
입 목	132	
시설비	401-01	상수도 과목 해소 참조
감리비	401-02	상수도 과목 해소 참조
시설부대비	401-03	상수도 과목 해소 참조
자산취득비	405-01	상수도 과목 해소 참조
건 물		
시설비	401-01	상수도 과목 해소 참조 ※ 기존 대수선비에 해당하는 사업은 시설비에 계상
감리비	401-02	상수도 과목 해소 참조
시설부대비	401-03	상수도 과목 해소 참조
자산취득비	405-01	상수도 과목 해소 참조
구 축 물	134	

과 목		해 소
관·《항》 〈세항〉·목	부 호	
시설비	401-01	상수도 과목 해소 참조 ※ 기존 대수선비에 해당하는 사업은 시설비에 계상
감리비	401-02	상수도 과목 해소 참조
시설부대비	401-03	상수도 과목 해소 참조
선로설비	135	지하철 선로설비에 소요되는 비용(선로, 정차장, 터널, 토공 등)
시설비	401-01	상수도 과목 해소 참조
감리비	401-02	상수도 과목 해소 참조
시설부대비	401-03	상수도 과목 해소 참조
자산취득비	405-01	상수도 과목 해소 참조
전로설비	136	지하철 전로설비에 소요되는 비용(통신 전기, 전력, 역무자동화 등)
시설비	401-01	상수도 과목 해소 참조
감리비	401-02	상수도 과목 해소 참조
시설부대비	401-03	상수도 과목 해소 참조
자산취득비	405-01	상수도 과목 해소 참조
기계장치	137	
시설비	401-01	상수도 과목 해소 참조
감리비	401-02	상수도 과목 해소 참조
시설부대비	401-03	상수도 과목 해소 참조
자산취득비	405-01	상수도 과목 해소 참조
차량운반구	138	
자산취득비	405-01	상수도 과목 해소 참조
공기구비품	139	
자산취득비	405-01	상수도 과목 해소 참조
기타가동 설비자산	140	
자산취득비	405-01	상수도 과목 해소 참조
무형자산	150	

과 목		해 소
관·《항》 〈세항〉·목	부 호	
무형자산	151	
영업권 등	151-1	영업권, 산업재산권, 광업권, 어업권, 차지권 등
창업비	151-2	발기인의 보수, 인수수수료, 설립등기비, 주식발행비 등 회사설립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과 개업준비기간 등에 사업인·허가를 획득 하기 위하여 발행한 비용 등
개발비	151-3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소프트웨어 개발비용 및 구입비용 포함)
기타무형자산	151-4	상기과목에 속하지 않는 무형자산
유동부채상환금	190	상수도과목 해소 준용
단기차입금	191	
상 환 금	191-1	1년 이내에 지급 또는 상환해야 할 상환금
유동성장기채무	192	
상 환 금	192-1	장기부채중 유동성 장기채무에 계상된 금액
선 수 금	193	
선 수 금	193-1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것에 대한 선수금액
고정부채상환금	220	
외국차관	221	
상 환 금	221-1	상수도 과목해소 준용
공 채	222	
상 환 금	222-1	상수도 과목해소 준용
타회계차입금	223	
상 환 금	223-1	상수도 과목해소 준용
도특자금	224	
상 환 금	224-1	상수도 과목해소 준용
사 채	225	
상 환 금	225-1	상수도 과목해소 준용
기타고정부채	226	

과목			해 소
관·《항》 〈세항〉·목	부 호		
상 환 금	226-1	상수도 과목해소 준용	
기타자본적지출	420		
타회계보조금	421		
반 환 금	421-1	상수도 과목해소 준용	
기타자본적지출	422		
이익배당금	422-1	공사특별회계에 출자한 일반회계 등에 대한 이익 배당금	
기타자본적지출	422-2	상기이외의 기타자본적지출을 계상	
예 비 비	800		
예 비 비	810		
예 비 비	811	자본예산중 기채재원을 제외한 경비중 적정액 계상	

가. 豫算科目構造

사 업 예 산			자 본 예 산		
관	항	세 항	관	항	세 항
600 공사사업 수 익	610 영업수익	611 용지매출수익	100 자 본 적 수 입	110 투자자산 수 입	111 투자자산
		612 주택판매수익			
		613 임대사업수익			
		614 관리사업수익			
		615 기타영업수익		120 고정자산 매각수입	121 토 지
		616 대행사업수익			122 입 목
		617 경기사업수익			123 건 물
	620 영 업 외 수 익	621 이자수익			124 차량운반구
		622 외화환산이익			125 공기구비품
		623 고정자산처분이익			126 기타고정자산
		624 기타영업외수익			
630 특별이익	631 전기손익수정이익	210 유동부채	211 선 수 금		
	632 기타특별이익		212 기타유동부채		
700 공사사업 비 용	710 영업비용			220 고정부채 수 입	221 장기차입금
					222 타회계차입금
					223 공 채
					224 사 채
					225 외국차관
					226 기타고정부채
				300 자 본 금	311 자 본 금
				320 잉여금수입	321 자본잉여금
				330 기타자본적 수 입	331 기타자본적수입

사 업 예 산			자 본 예 산		
관	항	세 항	관	항	세 항
	720 영 업 외 비 용	721 지급이자및기업채 취급제비 722 자산감모손실 723 고정자산처분손실 724 기타영업외비용	100 자 본 적 지 출	110 재고자산	111 미완성토지 112 미완성주택 113 지급이자 등
	730 특별손실	731 임시손실 732 전기손익수정손실 733 기타특별손실		120 임대주택 건설중인자산	121 장기임대주택건설비 122 영구임대주택건설비
	740 법인세등	741 법인세등		130 가동설비자산	131 토 지 132 입 목 133 건 물 134 구 축 물 135 기계장치 136 차량운반구 137 공기구비품 138 임대주택대수선비 139 기타고정자산
				140 비가동설비자산	141 건설중인자산
				150 투자자산	151 투자자산
				160 무형자산	161 무형자산

사 업 예 산			자 본 예 산		
관	항	세 항	관	항	세 항
				170 유동부채 상 환	171 선수금상환 172 기타유동부채상환
				180 고정부채 상 환	181 장기차입금상환 182 타회계차입금상환 183 공채상환 184 외국차관상환 185 기타고정부채상환
				190 기타자본적 지 출	191 타회계보조금 192 기타자본적지출
	800 예 비 비	810 예 비 비		800 예 비 비	810 예 비 비

과 목		해 소
관·《항》 〈세항〉·목	부 호	
공사사업수익	600	
《영업수익》	610	자치단체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입은 자치단체세입으로 납부
<용지매출수익>	611	공단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의 수익
택지매출수익	611-1	일시불로 당해 사업년도중 수익실현 가능한 택지조성지 매출수익
공단용지 매출수익	611-2	일시불로 당해연도중 수익실현이 가능한 공단용지 조성비 매출 수입
연부용지 매출수익	611-3	1년이상 매출하는 용지매출수입중 당해사업년도에 수입되는 연부액 예상
기타용지 매출수익	611-4	상기 과목이외의 용지매출 수입
주택판매수익	612	
주택판매수익	612-1	일시불로 당해사업년도중 수익실현 가능한 주택매출 수입
연부주택 판매수익	612-2	1년이상 연부로 매출하는 주택매출수입중 당해 사업년도에 수입 되는 연부액 계상
임대사업수익	613	
주택임대수익	613-1	주택임대에 따른 임대료 수입중 당해 사업년도 해당수입분만 계상
용지임대수익	613-2	용지임대에 따른 임대료 수입중 당해 사업년도 실현가능한 수입 분만 계상
기타임대수익	613-3	기타 시설물(상가등)에 따른 임대료 수입중 당해 사업년도 실현 가능한 수입분만 계상
관리사업수익	614	
관리사업수익	614-1	주택 관리운영에 따른 제수입
기타영업수익	615	
기타영업수익	615-1	상기과목 이외의 기타 영업수입
대행사업수익	616	
대행사업수익	616-1	대행사업에 따른 제수입
경기사업수익	617	
경기사업수익	617-1	경기사업수행에 따른 수익 계상
영업외수익	620	

과 목		해 소
관·《항》 〈세항〉·목	부 호	
이자수익	621	
수입이자	621-1	금융기관의 각종 예금이자 수입
유가증권이자	621-2	국채, 정부보증채권, 산업금융채권등 유가증권에 대한 이자수입
외화환산이익	622	
외화환산이익	622-1	환차이익중 당해연도 수익 해당액을 계상
고정자산 처분이익	623	
고정자산 처분이익	623-1	고정자산 매각처분에 따른 매각차익 수입
기타영업외수익	624	
유가증권 처분이익	624-1	각종 유가증권 처분시 발생한 이익
불용품매각이익	624-2	불용품으로 결정된 저장품 처분이익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	624-3	법규의 정하는 바에 의한 변상금 수입과 약정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수입
기타영업외수익	624-4	상기 이외의 기타 영업외수입
특별이익	630	
전기손익 수정이익	631	
전기손익 수정이익	631-1	과년도 수익조정액 등의 수입
기타특별이익	632	
기타특별이익	632-1	상기 이외의 특별이익(대지정산금 수입 등)
공사사업비용	700	
영업비용	710	용지매출 원가 및 주택판매원가 예산편성시는 재고자산의 각 비목, 인건비, 경비의 비목 중 해당 과목을 선정하여 비목별로 계상
용지매출원가	711	
택지매출원가	711-1	영업수익중 택지매출수입에 대응하는 원가
공단용지 매출원가	711-2	영업수익중 공단용지 매출수입에 대응하는 원가

과 목		해 소
관·《항》 〈세항〉·목	부 호	
용지연부 매출원가	711-3	영업수익중 용지연부매출 수입에 대응하는 원가
기타용지 매출원가	711-4	영업수익중 상기이외의 용지매출수입에 대응하는 원가
주택판매원가	712	
주택판매원가	712-1	완공주택을 일시불로 매출하는 경우 이에 관련된 완공주택 건설 원가를 계상
주택연부 판매원가	712-2	영업수익중 주택연부 분양수입에 대응하는 원가
임대사업비	713	
임대사업비	713-1	영업수익중 임대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을 계상 - 임대주택자금의 거치이자, 화재보험료, 수선유지비(대수선비제외), 임대주택감가 상각비 등
관리사업비	714	
관리사업비	714-1	주택관리운영에 따른 제경비를 계상
업무관리비	715	
업무관리비	715-1	관리사업비의 제과목중 해당과목 설정 예산편성
대행사업비	716	
대행사업비	716-1	관리사업비의 제과목중 해당과목 설정 예산편성
인건비	717	공사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참조
급 여	717-1	1. 공사보수규정에 의해 직급별 평균 임금산정 결원율을 참고하여 계상 2. 연봉대상자의 기본연봉액을 총액으로 계상
제수당	717-2	1. 공사규정 등에 의한 상여수당 등 제수당 2. 연봉대상자의 부가급여중 제수당에 해당되는 경비 별도 계상
기타직보수	717-3	정원에 포함된 계약직근로자의 보수, 상여금, 법정수당
무기계약자 근로자보수	717-4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보수, 상여금 및 법정수당
기간제 근로자보수	717-5	정원외의 업무관련 계약직, 임시직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상여금 및 법정수당
퇴직급여	717-6	종사자 퇴직급여 충당금, 종사자 퇴직보험료, 국민연금전환금 등 계상

과 목		해 소
관·《항》 〈세항〉·목	부 호	
경 비	718	
복리후생비	718-1	1. 공사 복리후생규정에 의거 편성 2. 자체 지급기준이 정하여진 경우에 직책수행비 및 직급보조비 계상·집행 3. 종업원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 의료보험료, 산재·고용보험료 4. 연봉대상자의 부가급여중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는 경비 별도 계상 5.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시행경비(사내복지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경우 이를 우선 활용)
여비교통비	718-2	1. 국내여비 2. 국외여비 3. 외빈초청여비
통신비	718-3	1. 전화요금(이동전화, PCS사용료 등 포함) 2. 우편물 발송대 3. 전용회선 사용료 4. 케이블TV수신료 5. 무선호출기사용, 무선국 전파사용료
수도광열비	718-4	1. 수도·전기·가스 등 연료대 비용 계상 2.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상환금은 절약시설투자에 따른 공공요금(전기료 등)의 절약액 범위내에서 집행가능 3.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냉난방시설교체에 의한 설비투자상환금은 시설교체에 따른 범위내에서 집행가능
공공요금및 제세	718-5	1. 우편·운송요금·오물수거료 법령에 의해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2. 협회비 등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3. 소송사건 공탁금 및 국고채당금, 임대차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소모품비	718-6	1. 기본사무경비 및 사무용 각종 소모품비 2. 업무용 전산 S/W구입비 3. 방역용 약품구입비 4. 소모성 소규모 비품구입비 5. 쓰레기 봉투대금

과 목		해 소
관·《항》 〈세항〉·목	부 호	
피 복 비	718-7	1. 작업복, 위생복, 근무복 등 피복 구입 또는 제조경비 2. 침구류 구입 3. 안전모, 안전화, 작업화 등 개인장비 구입비
도서인쇄비	718-8	1. 각종 사무용 인쇄비 2. 정기간행물 구독, 도서구입비
지급임차료	718-9	1. 건물, 토지 등의 임차료 2. 차량임차료 3. 회의장 임차료
수선유지비	718-10	건물 및 각종장비 수선유지비
차량유지비	718-11	차량유지 및 차량유류대
보 험 료	718-12	공탁금, 보험료
지급수수료	718-13	1. 방역소독비, 청소·경비등의 용역비 계상 2. 각종검사수수료 3. 위탁판매수수료 4. 사진(슬라이드)인화, 침구세탁료 5. 회계감사수수료 및 법인세조정 수수료
업무추진비	718-14	1. 조세제한특례법 제136조에서 정한 손금인정한도내에서 공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제경비 계상 2. 부서별 또는 업무단위별로 계상하되, 개인에서 월정액 지급은 불가 3. 집행방법은 공통기준 참조
교육훈련비	718-15	각종 교육훈련 관련 경비(교육여비 포함)
재료비기타	718-16	1. 소모성 공기구류 2.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 구입 3. 제품 또는 생산에 소요되는 재료구입, 자재운송에 대한 조작비 4. 동물·식물 및 동자구입비와 사료구입비
행사등잡비	718-17	1.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 등 업무수행과 관련한 활동비 2. 각종행사 및 홍보비용, 회의비, 간담회, 워크숍, 직원격려 등 지출비용 계상 3. 일·숙직수당, 고객접대용 다과구입 등 기관·부서운영에 소요 되는 제잡비

과 목		해 소
관·《항》 〈세항〉·목	부 호	
감가상각비	718-18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 법령에 의한 당해연도분 감가상각비
광고선전비	718-19	신문, 방송광고 선전비
연구개발비	718-20	1. 신규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 2. 시험연구, 조사분석비 3. 전산 S/W 개발 및 범용 S/W구입비
보 상 금	718-21	1. 교육, 세미나, 공청회 등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여비 2. 세미나, 공청회, 체육행사, 예술행사 등의 발표자 등 출연자에게 지급하는 반대급부적 사례금(단순참가자에게는 지급 불가) 3. 산업시찰, 견학 등에 참여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여비 등 실비 4. 사업관련 민간인 사상사고 등 피해보상금 5. 공익근무요원에게 지급되는 급식비, 피복비, 교통비 등 6. 재해복구참여 민간인 식비, 장비유류대, 사고시 치료비
포 상 금	718-22	1. 종업원에 대한 포상금 및 포상품 구입비 2. 개인성과급 3. 예산절약 및 경영실적에 따라 집행하는 성과급
출 연 금	718-23	법령의 규정에 의한 단체 등에 출연금
기관성과급	719	
기관성과급	719-1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기관성과급 계상
영업외비용	720	
지급이자 및 사업채취급제비	721	
지급이자	721-1	1. 매출을 위한 용지조성, 주택건설 등 공영개발사업이외의 용도에 사용된 일시차입금, 지방채, 재정자금, 외국차관, 타회계차입금 등에 대한 발생이자 2. 차관 약정수수료 등 3. 각종 이자에서 발생하는 이차보전금
기업채취급제비	721-2	사채발행등에 따른 인쇄비, 수수료등 관련비용
자산감모손실	722	
자산감모손실	722-1	재고자산의 멸실로 인한 감소, 고정자산의 제각손을 계상

과 목		해 소
관·《항》 〈세항〉·목	부 호	
고정자산처분손실	723	
고정자산 처분손실	723-1	고정자산 매각등의 처분결과 손실발생금액(처분가액, 장부가액)
기타영업외비용	724	
기 부 금	724-1	불우시설 지원 장학금 지급 등 공익을 목적으로한 각종 비용 계상
기타영업외 비용	724-2	영업외비용중 위의 과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비용(재고자산 매각손실, 유가증권처분손실, 기타 잡손실) 등
특별손실	730	
임시손실	731	
임시손실	731-1	임시로 손실이 발생한 금액
전기손익 수정손실	732	
전기손익 수정손실	732-1	전년도에 귀속되어야 할 비용의 발생 또는 지급하여야 되는 금액 (과오납금 등)
반환금	732-2	과년도 국고·지방비의 경상보조금 정산잔액 반환금
기타특별손실	733	
기타특별손실	733-1	상기과목이외에 해당하는 특별손실 금액(미해결토지매입비등)
법인세등	740	
법인세등	741	
법인세등	741-1	세무결산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등 계상
예비비	800	
예비비	810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액에 충당 하기 위한 자금 2. 사업예산중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은 경비를 제외한 적정금액 계상
일반예비비	810-1	일반예비비
인력증원 보급예비비	810-2	신규채용 등 인력증원에 따른 소요인건비
정현원차 보급예비비	810-3	정원과 현원간 차이로 인한 소요인건비

과 목		해 소
관·《항》 〈세항〉·목	부 호	
자본적수입	100	
투자자산수입	110	
투자자산	111	
대여금회수	111-1	장기대여금중 당년도에 회수되는 용자금원금
보증금	111-2	전세권, 전신전화가입권, 임차보증금, 영업보증금 등 당년도 회수 분계상
단체퇴직 보험금	111-3	종업원의 단체퇴직급여환수금 계상
고정자산매각수입	120	
토지	121	
토지매각수입	121-1	고정자산중 용도폐기된 불용토지 매각수입
입목	122	
입목매각수입	122-1	고정자산중 매각결정된 불용입목 매각수입
건물	123	
건물매각수입	123-1	고정자산중 용도폐지된 불용건물 매각수입
차량운반구	124	
매각수입	124-1	고정자산중 불용결정된 공기구비품 매각수입
공기구비품	125	
매각수입	125-1	고정자산중 불용결정된 공기구비품 매각수입
기타고정자산	126	
매각수입	126-1	상기이외의 기타 고정자산 매각수입
유동부채수입	210	
선수금	211	
선수금	211-1	용지 및 주택을 공급받은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미리 전부, 또는 일부를 받는 자금(수익 실현시, 용지매출 수익 또는 주택판매수익 으로 대체)
기타유동부채	212	
기타유동부채	212-1	계약기간이 1년이내의 임대보증금
고정부채수입	220	

과 목		해 소
관·《항》 〈세항〉·목	부 호	
장기차입금	221	
재정자금	221-1	정부재정 용자금 차입액
국민주택자금	221-2	국민주택 건설자금 및 대지조성자금 차입액
지역개발자금	221-3	시도 지역개발자금 차입액
일반은행차입금	221-4	일반은행에서 차입하는 건설자금(상환기한이 1년이상인 것)
타회계차입금	222	
일반회계차입금	222-1	일반회계에서 차입하는 자금(상환기한이 1년이상인 것)
특별회계차입금	222-2	타특별회계에서 차입하는 자금(상환기간이 1년이상인 것)
공채	223	
매출공채	223-1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출방법에 의해 발행하는 사채수입액
교부공채	223-2	사업추진에 참여하는 건설업체에게 공사비의 일정액에 대하여 공채를 인수토록 하여 차입되는 자금
모집공채	223-3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조달방법으로 증권시장에서 공채를 모집하여 차입되는 자금
사채	224	
사채	224-1	차입후 1년이후에 상환되는 사채 차입금
외국차관	225	
외국차관	225-1	외국차관 차입금
기타고정부채	226	
임대주택보증금	226-1	임대주택의 보증금
기타고정부채	226-2	기타차입금 수입
자본금	300	
자본금	311	
보통주자본금	311-1	지방자치단체등에서 출자한 자본금(현금 및 현물)
우선주자본금	311-2	시민주발행에 의하여 납입된 자본금
증자자본금	311-3	지방자치단체등에서 증자등을 위하여 출자한 자본금
잉여금수입	320	
자본잉여금	321	
국고보조금	321-1	영구임대주택 건설자금 및 자본적 투자비용의 보전목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 수입

과 목		부 호	해 소
관·《항》 〈세항〉·목			
타회계보조금	321-2		자본적 투자비용의 보전목적으로 일반회계 또는 기타 특별회계가 지원하는 보조금 수입
기타자본적수입	330		
기타자본적수입	331		
기타자본적수입	331-1		상기 이외의 기타자본적 수입
자본적지출	100		
재고자산	110		공영개발사업 과목 해소 준용
미완성토지	111		
시설비	401-01		1. 용지조성시의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계상 2. 용지조성과 관련한 농지전용및보존에관한법률에 의한 대체농지 조성비
감리비	401-02		시설비에 따른 감리비 계상
시설부대비	401-03		1. 용지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부대 경비 2. 재산취득에 따른 감정료, 측정수수료 등 용역급부 수수료 3. 예산편성 및 집행방법은 상수도사업 과목해소 참조
미완성주택	112		
시설비	401-01		용지조성사업비 과목해소 참조
감리비	401-02		용지조성사업비 과목해소 참조
시설부대비	401-03		용지조성사업비 과목해소 참조
자급이자등	113		
자급이자등	113-1		매출을 위한 용지조성 주택건설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조성 등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의 발생이자 및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임대주택건설 중인자산	120		
장기임대주택 건설비	121		
시설비	401-01		공영개발사업 과목해소 참조
감리비	401-02		공영개발사업 과목해소 참조

과 목		부 호	해 소
관·《항》 〈세항〉·목			
시설부대비	401-03		공영개발사업 과목해소 참조
지급이지등	402		장기임대주택건설을 위한 차입금의 발생이자 및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영구임대주택 건설비	122		
시설비	401-01		공영개발사업 과목해소 참조
감리비	401-02		공영개발사업 과목해소 참조
시설부대비	401-03		공영개발사업 과목해소 참조
지급이지등	401-04		영구임대주택건설을 위한 차입금의 발생이자 및 이와 유사한 금융 비용
가동설비자산	130		
토지	131		매출을 전제로 하지 않고 업무용 고정자산으로서 당해연도에 사 용이 가능한 자산 조성
자산취득비	405-01		토지매입비
입목	132		
시설비	401-01		재고자산의 용지조성사업비 과목해소참조
감리비	401-02		재고자산의 용지조성사업비 과목해소참조
시설부대비	401-03		재고자산의 용지조성사업비 과목해소참조
자산취득비	405-01		재고자산의 용지조성사업비 과목해소참조
건 물	133		
시설비	401-01		재고자산의 용지조성사업비 과목해소참조
감리비	401-02		재고자산의 용지조성사업비 과목해소참조
시설부대비	401-03		재고자산의 용지조성사업비 과목해소참조
구축물	134		
시설비	401-01		재고자산의 용지조성사업비 과목해소참조
감리비	401-02		재고자산의 용지조성사업비 과목해소참조
시설부대비	401-03		재고자산의 용지조성사업비 과목해소참조
기계장치	135		

과 목		해 소
관·《항》 〈세항〉·목	부 호	
시설비	401-01	재고자산의 용지조성사업비 과목해소참조
감리비	401-02	재고자산의 용지조성사업비 과목해소참조
시설부대비	401-03	재고자산의 용지조성사업비 과목해소참조
자산취득비	405-01	기계장치 등의 취득비
차량운반구	136	
자산취득비	405-01	업무용 차량운반구 구입비
공기구비품	137	
자산취득비	405-01	상수도 과목해소 참조
임대주택 대수선비	138	
시설비	401-01	상수도 과목해소 참조
기타고정자산	139	
자산취득비	405-01	상기이외의 기타 고정자산취득비
비기동설비자산	140	매출이나 분양목적이 아닌 업무용 고정자산으로 당해연도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자산(완공시 기동설비자산으로 대체)
건설중인자산	141	
시설비	401-01	재고자산의 용지조성사업비 과목해소참조
감리비	401-02	재고자산의 용지조성사업비 과목해소참조
시설부대비	401-03	재고자산의 용지조성사업비 과목해소참조
지급이자등	402	건설중인자산(휴게소 등)건설을 위한 차입금의 발생이자 및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투자자산	150	
투자자산	151	
투자유가증권	151-1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국채·지방채(지방공기업법 제69조관련)
장기대여금	151-2	입주자에 대한 국민주택용자금 대학생자녀학자금으로 무상대여하는 금액
보증금	151-3	건물·시설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영업보증금 등
전신전화가입권	151-4	전신전화가입권(시설·자산취득비는 제외)

과 목		부 호	해 소
관·《항》 〈세항〉·목			
단체퇴직급여 보험금	151-5		종업원에 대한 단체퇴직급여 보험가입금
무형자산	160		기계장치 등의 취득비
무형자산	161		
영업권 등	161-1		영업권 산업재산권 광업권 어업권 차지권 등 권리취득비용
창업비	161-2		회사설립을 위한 비용 및 개업준비기간중 발생한 비용
개발비	161-3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소프트웨어 개발비용 포함)
유동부채상환	170		
선수금상환	171		
선수금상환	171-1		선수금상환(해약에 한한다)
기타유동부채 상 환	172		
기타유동부채 상 환	172-1		상가임대보증금 등 1년내 상환한 유동부채 계상
고정부채상환금	180		
장기차입금상환	181		
정부차입금상환	181-1		정부재정융자금 등 정부차입금 상환액
국민주택 기금상환	181-2		국민주택건설자금 상환액
시도지역 개발기금	181-3		시도지역개발기금차입금 상환액
일반은행 차입상환	181-4		일반은행차입금 상환액
타회계차입금 상 환	182		
일반회계 차입금상환	182-1		일반회계차입금 상환액
타회계차입금 상 환	182-2		타특별회계차입금 상환액

과 목		해 소
관·《항》 〈세항〉·목	부 호	
공채상환	183	
매출공채상환	183-1	매출공채 상환액
교부공채상환	183-2	교부공채 상환액
모집공채상환	183-3	모집공채 상환액
외국차관상환	184	
외국차관상환	184-1	외국차관 상환액
기타고정 부채상환	185	
임대주택 보증금상환	185-1	임대주택보증금 상환액
기타고정 부채상환	185-2	고정부채중 상기이외의 부채상환
기타자본적지출	190	
타회계보조금	191	
반환금	191-1	국비·도비(시비) 정산잔액
기타자본적지출	192	
이익배당금	192-1	공사특별회계에 출자한 일반회계 등에 대한 이익 배당금
기타자본적지출	192-2	상기과목이외의 자본적지출
예비비	800	
예비비	810	
예비비	811	자본예산에 대한 예비비

7 民官共同出資事業

가. 豫算科目構造

사 업 예 산			자 본 예 산			
관	항	세 항	관	항	세 항	
660 사업수입	610 영업수익	611 판매사업수익	100 자본적수입	120 고정자산 매각수입	121 토지	
		612 임대사업수익			122 입목	
		613 기타영업수익			123 건물	
	620 영업외수익	124 기계장치				
		621 이자수익			125 기타고정자산	
		622 고정자산처분이익		140 투자자산 수 입	141 장기대여금	
	623 기타영업외수익	142 기타투자자산				
	630 특별이익	210 유동부채 수 입		211 단기차입금		
				212 부가세예수금		
				213 기타유동부채		
	700 사업비용	710 영업비용		711 상품매출원가	220 고정부채 수 입	221 사채
				712 판매외일반관리비		222 장기차입금
713 기관성과급			223 기타고정부채			
720 영업외비용		410 자 본 금	411 자본금			
			721 지급이자	420 자본잉여금 수 입	421 자본잉여금수입	
			722 자산감모손실		422 타회계보조금	
			723 고정자산처분손실		520 기타자본적 수 입	521 기타자본적수입
724 기타영업외비용						
730 특별손실		731 전기손익수정손실				
		732 기타특별손실				
740 법인세등		741 법인세등				

사 업 예 산			자 본 예 산		
관	항	세 항	관	항	세 항
	800 예 비 비	810 예 비 비	100 자본적지출	110 투자자산	111 투자자산 112 기타 투자자산
				120 유형자산	121 토지 122 입목 123 건물 124 구축물 125 기계장치 126 차량운반구 127 기타유형자산
				150 무형자산	151 무형자산
				190 유동부채 상 환 금	191 단기차입금 192 유동성장기부채 193선수금
				220 고정부채 상 환 금	221 사채 222 장기차입금 223 기타고정부채
				420 기 타 자본적지출	421 타회계보조금 422 기타자본적지출
				800 예비비	810 예비비

과 목		해 소
관·《항》 〈세항〉·목	부 호	
사업수익	600	
영업수익	610	
판매사업수익	611	
승차권 판매수익	611-1	고속·시외버스 승차 대표수입
박차료수익	611-2	버스 박차료 수입
주차료수익	611-3	주차장 운영수입
영화관 대표수익	611-4	영화관 입장권 판매수입
농특산물 판매수익	611-5	농특산물 판매수익
구매상품 판매수익	611-6	구매상품 판매수익
택지매출수익	611-7	택지 매출수익
기타판매수익	611-8	상기 과목에 속하지 않는 사업수익
임대사업수익	612	
상가임대료 수입	612-1	상가 임대 시설물에 대한 임대료 수익
상가관리비 수입	612-2	상가 임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비 수익
기타임대 사업수입	612-3	상기 과목에 속하지 않은 임대시설 수익
기타영업수익	613	
기타영업수익	613-1	상기이외의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620	
이자수익	621	
예금이자	621-1	금융기관 자금운용으로 발생한 예금이자 수입
적립금이자	621-2	적립금 운용으로 발생한 예금이자 수입
유가증권이자	621-3	국공채등 채권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수입
대여금이자	621-4	장·단기 대금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수입

과 목		해 소
관·《항》 〈세항〉·목	부 호	
고정자산 처분이익	622	
고정자산 처분이익	622-1	고정자산 처분시 발생한 이익금
기타영업외수익	623	
기타영업외수익	623-1	상기이외의 영업외수익
특별이익	630	
전기손익 수정이익	631	
전기손익 수정이익	631-1	결산이 완료된 전기분에 대한 이익추가 계상액
투자자산 처분이익	632	
투자자산 처분이익	632-1	투자자산 처분시 발생한 이익금
기타특별이익	633	
기타특별이익	633-1	상기과목에 속하지 않는 특별이익
사업비용		
영업비용	710	
상품매출원가	711	
원자재구입비	711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원자재 및 상품구입비
판매외일반 관리비	712	
급여	712-1	○ 공사보수규정에 의한 직급별 평균급여 산정 결원율을 감안 계상 ○ 연봉대상자의 기본연봉액을 총액으로 계상
제수당	712-2	○ 공사보수규정에 의한 상여수당 등 제수당 ○ 연봉대상자의 부가급여중 제수당에 해당하는 경비 별도 계상
기타직보수	712-3	정원에 포함된 계약직근로자의 보수, 상여금, 법정수당
무기계약자 근로자보수	712-4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보수, 상여금 및 법정수당

과 목		해 소
관·《항》 〈세항〉·목	부 호	
기간제 근로자보수	712-5	업무관련 계약직, 임시직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상여금 및 법정수당
퇴직급여	712-6	종사자 퇴직급여 충당금, 종사자 퇴직보험료, 국민연금전환금 등
복리후생비	712-7	○ 공사 복리후생 규정에 의거 편성, 자체 지급기준이 정하여진 경우에 직책급 수행비 및 직급보조비 계상가능 ○ 연봉대상자의 부가급여중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는 경비 별도 계상 ○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시행경비(사내복지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경우 이를 우선 활용)
여비교통비	712-8	○ 국내여비,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일반운영비	712-9	○ 공공요금및제세, 전력수도료, 연료유지비,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피복비 등 ○ 사외이사의 이사회참석 등 업무수행과 관련한 활동비
업무추진비	712-10	○ 부서별 또는 업무단위별로 계상하되, 개인에게 월정액 지급은 불가 ○ 집행방법은 공통기준 참조
연구개발비	712-11	○ 신규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사업타당성 분석 ○ 시험연구 조사분석비 ○ 전산S/W 개발 및 범용 S/W구입비
용역비	712-12	○ 청소·경비 등의 용역비 계상
포상금	712-13	○ 직원에 대한 포상금 및 상품구입비 ○ 개인성과금 ○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따른 성과금 계상
행사등잡비	712-14	○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 등 업무수행과 관련한 활동비 ○ 각종행사 및 홍보비용, 회의비, 간담회, 워크샵, 직원격려 등 지출비용 계상 ○ 일·숙직수당, 고객접대용 다과구입 등 기관·부서운영에 소요 되는 제잡비
기관성과급	713	
기관성과급	713-1	지방공사·공단의 경영평가에 준하여 자치단체에서 경영평가를 실시 한 경우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
영업외비용	720	
지급이자	721	

과 목			해 소
관·《항》 〈세항〉·목	부 호		
지급이자	721-1	장·단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자산감모손실	722		
자산감모손실	722-1	자산의 감모에 따른 손실액 계상	
고정자산 처분손실	723	상수도 과목해소 적용	
고정자산 처분손실	723-1		
기타영업외비용	724		
기타영업외비용	724-1	상기과목 이외의 영업비용	
특별손실	730		
전기손익 수정손실	731		
전기손익 수정손실	731-1	상수도 과목해소 적용	
반환금	731-2	과년도 국고·지방비의 경상보조금 정산잔액 반환금	
기타특별손실	732		
기타특별손실	732-1	상수도 과목해소 적용	
법인세등	740		
법인세등	741	세목결산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 등 결산	
법인세등	741-1		
예비비	800		
예비비	810		
일반예비비	810-1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액에 충당 하기 위한 자금 2. 사업예산중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은 경비를 제외한 적정금액 계상	
인력증원 보급예비비	810-2	신규채용 등 인력증원에 대한 소요 인건비	
정현원차 보급예비비	810-3	정원과 현원간 차이에 대한 해당인건비	

과 목		해 소
관·《항》 〈세항〉·목	부 호	
자본적수입	100	
고정자산 매각수입	120	
토지	121	
자산매각수입	121-1	고정자산중 용도폐지된 불용토지 매각수입
입목	122	
자산매각수입	122-1	고정자산중 용도폐지된 불용입목 매각수입
건물	123	
자산매각수입	123-1	고정자산중 용도폐지된 불용건물 매각수입
기계장치	124	
자산매각수입	124-1	고정자산중 용도폐지된 불용기계장치 매각수입
기타고정자산	125	
자산매각수입	125-1	상기과목 이외의 기타 고정자산 매각수입
투자자산수입	140	
장기대여금	141	
장기대여금	141-1	유동자산에 속하지 않는 장기대여금(대학생자녀학자금 등) 회수액
기타투자자산	142	
기타투자자산	142-1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기예금상품, 투자유가증권, 임차보증금 등 수입액
유동부채수입	210	
단기차입금	211	
차입금	211-1	1년이내에 지급 또는 상환해야 할 차입금
부가세예수금	212	
부가세예수금	212-1	납기도래전 발생된 부가가치세 예수금
기타유동부채	213	
기타유동부채	213-1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것에 대한 예수금
고정부채수입	220	
사채	221	

과 목			해 소
관·《항》 〈세항〉·목	부 호		
사채	221-1	사채발행 수입	
장기차입금	222		
차입금	222-1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차입금	
기타고정부채	223		
차입금	223-1	일반회계 및 타특별회계에서 차입한 차입금(1년이상)	
자본금	410		
자본금	411		
보통주자본금	411-1	의결권이 있는 주식증자 납입금	
우선주자본금	411-2	의결권이 없는 주식증자 납입금	
자본잉여금수입	420		
자본잉여금수입	421		
주식발행초과금	421-1	액면을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할 때 그 초과금	
타회계보조금	422		
국고보조금	422-1	국가, 지자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공사부담금	422-2	건설자금의 일부를 편익을 제공 받는자로부터의 징수금	
기타자본적수입	520		
기타자본적수입	521		
기타자본적수입	521-1	상기 자본적수입 이외의 기타 자본적 수입금	
자본적지출	100		
투자자산	110		
투자자산	111		
장기대여금	111-1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기대여금	
기타투자자산	112		
기타투자자산	112-1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기에금상품, 투자유가증권, 임차보증금, 영업보증금 등	
유형자산	120		
토지	121		
자산취득비	405-1	상수도 과목 해소 적용	

과 목		해 소
관·《항》 〈세항〉·목	부 호	
입목	122	
자산취득비	405-1	상수도 과목 해소 적용
건물	123	
자산취득비	405-1	상수도 과목 해소 적용
건축물	124	
자산취득비	405-1	상수도 과목 해소 적용
기계장치	125	
자산취득비	405-1	상수도 과목 해소 적용
차량운반구	126	
자산취득비	405-1	상수도 과목 해소 적용
기타유형자산	127	
자산취득비	405-1	상수도 과목 해소 적용
무형자산	150	
무형자산	151	
자산취득비	405-1	영업권, 산업재산권, 어업권등 권리취득비용
유동부채상환금	190	
단기차입금	191	
단기차입금 상환금	191-1	1년 이내에 지급 또는 상환해야 할 상환금
유동성장기부채	192	
유동성장기 부채상환금	192-1	장기부채중 유동성 장기부채에 해당하는 금액
선수금	193	
선수금	193-1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것에 대한 선수금
고정부채상환금	220	
사채	221	
상환금	221-1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사채의 차입금
장기차입금	222	
상환금	222-1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금융기관 차입금등

과 목		해 소
관·《항》 〈세항〉·목	부 호	
기타고정부채	223	
상환금	223-1	일반회계 및 타특별회계 차입금 상환액
기타자본적지출	420	
타회계보조금	421	
반환금	421-1	상수도 과목해소 준용
기타자본적지출	422	
주주배당금	422-1	이익잉여금중 주주에게 배당되는 금액
기타자본적지출	422-2	상기 이외의 기타 자본적 지출을 계상
예비비	800	
예비비	810	
예비비	811	자본예산중 기채 재원을 제외한 경비중 적정액 확보

VII. 豫 算 編 成 書 式

- 지방직영기업의 경우 예산편성·집행을 위한 기준경비 등 참고자료는 2009년 지방자치단체편성예산기준 및 자치단체 예산조례를 활용하기 바람
 - 관계법령에 규정된 경비는 반드시 준수하되,
 - 기타 경비는 지방공기업 자체실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별도기준을 정하여 운영이 가능함
- 지방공사·공단은 동 자료를 참고하여 자체기준 설정하여 운영하기 바람

1 豫算書式

- 예산안의 제출에 따른 서류
(지방공기업법 제26조, 동 시행령 제19조, 제20조)

가. 예산안(예산의 내용)

(1) 사업운영계획 : 별첨양식

(2) 예산총칙

- 제1조 총칙
- 제2조 업무의 예정량
-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
-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
- 제5조 계속비
- 제6조 채무부담행위
- 제7조 지방채
- 제8조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 제9조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전용금지과목
- 제10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보조금
- 제11조 이익잉여금의 예정처분
- 제12조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자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 제13조 회전기금의 수입 및 지출예정액에 관한 사항
- 제14조 기타 필요한 사항

(3) 사업예산

- 1) 사업예산 총괄
- 2) 수익적 수입
- 3) 수익적 지출

(4) 자본예산

- 1) 자본예산 총괄
- 2) 자본적 수입
- 3) 자본적 지출

(5) 자금운영계획

나.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예산안에 관한 설명서)

(1)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사항별 설명서

- 예산서의 사업·자본예산으로 같음

(2) 급여비 명세서 : 별첨 양식

(3) 계속비에 관한 조서 : 별첨 양식

(4)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조서 : 별첨 양식

(5) 당해 사업연도(2009년)의 예정대차대조표 및 예정손익계산서와 전사업연도(2009년)의 예정대차대조표 및 예정손익계산서

※ 예산서 작성시 유의사항

○ 예산의 절사와 절상

- 세입은 1,000원 미만을 절사하고
- 세출은 1,000원 미만이라도 절상함

○ 예산의 단위

- 세입·세출 예산서에 표기하는 금액단위는 『천원』으로 함

○ 계량단위

- 모든 계량단위는 『미터법』에 의함

〈예 시〉

2009년도 ○○시 ○○사업특별회계예산서
(지방직영기업)

○○시·도, 시·군

目 次

1. 事業運營計劃

2. 豫算總則

3. 事業豫算

- 事業豫算總括

- 收益的 收入

- 收益的 支出

4. 資本豫算

- 資本豫算總括

- 資本的 收入

- 資本的 支出

5. 資金運營計劃

1. 사업운영계획

가. 상수도사업

□ 총괄

구분		단위	당년도	전년도	증감	비고
1. 보급계획	1) 행정구역총인구(A)	천명				
	2) 급수인구(B)	"				
	3) 보급률 $B/A \times 100$	%				
2. 시설계획	1) 취수용량	천m ³				
	2) 시설용량	"				
	3) 급수전수	전				
	4) 송배수관총연장	km				
	5) 급수관총연장	"				
	6) 노후관교체	"				
3. 생산 및 수급계획	1) 연간총생산량(C)	천m ³				
	2) 1일평균생산량	"				
	3) 연간총급수량(조정)(D)	"				
	4) 1일평균급수량	"				
	5) 1일1인평균급수량	ℓ				
	6) 유수율($D/C \times 100$)	%				
	7) 톤당평균요금 ($\frac{\text{연간급수수입}}{\text{연간조정량}}$)	원				
4. 인력관리 계획	계	명				
	1) 일반직	"				
	2) 별정직	"				
	3) 기능직	"				
	4) 기타직	"				
	5) 무기계약근로자	"				
	6) 기간제근로자등	"				
5. 자산평가액		억원				

□ 주요 투자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역	사업비(백만원)	비 고

□ 생산 및 급수계획

정수장별	시설용량(천㎥)	연간총생산(천㎥)	1일평균생산(천㎥)	가동율(%)
계				

□ 요금조정계획

업종별	당 년 도			전 년 도			인상율 (%)	인상 시기
	사용량	수입액	㎥당 단가	사용량	수입액	㎥당 단가		
계								
가 정 용								
업 무 용								
영 업 용								
욕 탕 1 종								
욕 탕 2 종								
전용공업용								

□ 지방채 발행계획

기채선	금 액	용 도	발행사유	발행조건	발행시기

나. 하수도사업

구	분	단 위	당년도	전년도	증 감	비 고
1. 시설현황	1) 총인구(A) 2) 하수인구(B) 3) 보급률(B/A) 4) 하수처리시설용량 5) 하수관거연장	천명 " % 천톤/일 km				
2. 업무현황	1) 연간총하수발생량 2) 1일평균하수발생량 3) 1인1일평균하수발생량 4) 연간 총하수처리량 5) 1일평균하수처리량 6) 1인1일평균하수처리량 7) 하수처리율(1/4)	천톤 톤 톤 천톤 톤 톤 %				
3. 시설계획	1) 하수처리장시설 2) 하수처리장확장 3) 차집관거연장 4) 하수관거신설 5) 하수관거시설유지관리 6) 톤당평균요금 ($\frac{\text{년간사용료수입}}{\text{년간조정량}}$)	천톤/일 " km m m 원				
4. 인력관리	계 (명)	명				
계 획	1) 일 반 직 (") 2) 별 정 직 (") 3) 기 능 직 (") 4) 기 타 직 (") 5) 무기계약근로자 (") 6) 기간근로자 등 (")	" " " " " "				
5. 자산평가액		억원				

다. 공영개발사업

구	분	단 위	당년도	전년도	증 감	비 고
1. 주택보급 현 황	1) 행정구역총세대수(A) 2) 주택세대수(B) 3) 무주택세대수(C) 4) 주택보급율(B/A×100) 5) 무주택율(C/A×100)	세대 " " % "				
2. 택지조성 및 주택 건설계획	1) 용지조성 및 주택건설계획 ○ 택지조성면적 ○ 공단용지조성면적 ○ 기타용지조성면적 ○ 주택건설면적 2) 평균매출액 ○ 택 지(m²) ○ 공단용지(" ○ 기타용지(" ○ 주 택(" 3) 평균매출원가 ○ 택 지(m²) ○ 공단용지(" ○ 기타용지("	천m³ " " 천m³ (가구) 천원 " " " " " 천원 " " "				
3. 인력관리 계 획	계 1) 일 반 직 2) 별 정 직 3) 기 능 직 4) 기 타 직 5) 무기계약근로자 6) 기간제근로자등	명 " " " " " "				
4. 자산평가액		억원				

라. 지역개발기금

□ 기본운영계획

구 분		단 위	당년도	전년도	증 감	비 고
1. 지 방 채 발행계획	1) 지역개발공채 발행계획	백만원		()		
2. 지 방 채 상환계획	계	"				
	1) 원금상환	"				
	2) 이자상환	"				
3. 기금용자 계 획	계	"				
	1) 상수도사업	"				
	2) 하수도사업	"				
	3) 공영개발사업	"				
	4) 의료원사업	"				
	5) 도시도로사업	"				
	6) 기타사업 등	"				
4. 용 자 금 회수계획	계	"				
	1) 원금회수	"				
	2) 이자회수	"				
5. 일반회계 출연		"				

※ ()내는 최종 추경액을 기입

□ 지역개발 기금운영현황

구 분	2007년말	2008. 10. 1 현재
1. 지방채발행총액(a)	백만원	백만원
2. 지방채상환총액		
○ 지방채상환원금(B)		
○ 지방채상환이자		
3. 지방채미상환액(A-B)		
(상환기간초과분)	()	()
4. 기금용자총액(A')		
5. 용자금회수총액		
○ 용자금회수원금(B')		
○ 용자금회수이자		
6. 용자금미회수액(A'-B')		
7. 기금관리수익		
○ 용자금이자수입		
○ 채무변제수입		
8. 기금관리비용		
○ 지급이자		
○ 기금관리비		
9. 자본금		
○ 이익잉여금(7-8)		
○ 원시자본금		
○ 일반회계출연금	()	()

2. 예산총칙

제1조(총칙) 2009년도 ○○시 ○○사업 특별회계예산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2조(업무의 예정량) 업무의 예정량은 다음과 같다.

※ 사업별로 재화 및 서비스생산공급계획 및 주요건설개량사업 개요기재

(예시 : 상수도사업)

가. 급수전수 ××××전

나. 연간생산량 ××××천m³

다. 1일평균생산량 ××천m³

라. 주요건설개량사업○○○○사업(○○○공사) 사업비 ×××백만원

제3조(수익적수입 및 지출) 수익적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수	입
제1관 ○○사업수입	××××천원
제1항 영업수익	××× "
제2항 영업외수익	××× "
제3항 특별이익	××× "

지	출
제1관 ○○사업비용	××××천원
제1항 영업비용	××× "
제2항 영업외비용	××× "
제3항 특별손실	××× "
제4항 예 비 비	××× "

제4조(자본적수입 및 지출) 자본적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자본적수입액이 자본적지출액에 대하여 금액 ×××천원은 당년도 손익계정 유보 자금 ××천원, 이월이익잉여금 및 당년도 이익잉여금의 예정처분액 ××천원과 기처분 ××적립금 및 ××적립금 ××천원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한다.

수	입
제1관 자본적수입	××××천원
제1항 고정자산매각수입	××× "
제2항 고정부채수입	××× "
제3항 잉여금수입	××× "
제4항 기타 자본적수입	××× "

지	출
제1관 자본적지출	××××천원
제1항 가동설비자산	××× "
제2항 비가동설비자산	××× "
제3항 무형자산	××× "
제4항 투자자산	××× "
제5항 고정부채상환금	××× "
제6항 기타 자본적지출	××× "
제7항 예 비 비	××× "

제5조(계속비) 계속비의 총액과 연할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그 세부내역은 별첨 “계속비조서”와 같다)

관	항	사업명	총 액	년 도	연할액
			천원	20××년도	천원
				20××년도	천원
				20××년도	천원

제6조(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과 기간 및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그 세부내역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사	항	기	간	한	도	액
			년도에서 년도까지			천원

제7조(지방채) 공기업체 발행을 위한 기채의 목적, 한도액, 기채의 방법, 이자율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기채목적	한도액	기채방법	이자율	상환방법
	천원		%	

※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한 지방채 발행계획에 의한 발행총액 기재

제8조(일시차입금)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천원으로 정한다.

제9조(예산전용금지과목) 다음에 계기하는 과목의 경비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그 경비를 전용할 수 없다.

- (1) 기본금 ×××천원
- (2) 업무추진비(타 비목으로부터의 전용금지) ××× "

제10조(타회계로부터의 보조금) ○○○을 위하여 ○○○회계로부터 이 특별회계에 보조하는 금액은 ×××천원이다.

제11조(이익잉여금의 예정처분) 이월이익잉여금 ××처분과 당년도 예정이익잉여금 ××천원 총××천원중 ××천원은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1) 이월결손보조금 ×××천원
- (2) 이익적립금 ××× "
- (3) 감채적립금 ××× "
- (4) 건설개량적립금 ××× "
- (5) 납부금 ××× "

제12조(중요자산취득 및 처분)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그 세부내역은 별첨 “중요자산취득 및 처분조서”와 같다)

구 분	종 류	명 칭	수 량	금 액
1. 취득자산				
2. 처분자산				

제13조(회전기금) ○○회전기금의 한도액은 ×××천원으로 정한다.

2009년 예산총괄표

(단위 : 천원)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운영	
수입계(A)		수입계(A ')		수입계(A ")	
영 업 수 익 영업외수익 특 별 이 익		고정자산매각수입 고 정 부 채 수 입 자본잉여금수입 기타자본적수입		영 업 수 익 영 업 외 수 익 특 별 이 익 이 월 금 수 용 가 미 수 금 기 타 미 수 금 고정자산매각수입 고 정 부 채 수 입 자본잉여금수입 기타자본적수입	
지출계(B)		지출계(B ')		지출계(B ")	
영 업 비 용 영업외비용 특 별 손 실		가동설비자산 건설중인자산 무 형 자 산 투 자 자 산 고정부채상환금 기타자본적지출		영 업 비 용 영 업 외 비 용 특 별 손 실 이월예산자금 미 지 급 비 용 미 지 급 금 가동설비자산 비가동설비자산 무 형 자 산 투 자 자 산 고정부채상환금 기타자본적지출	
예 비 비		예 비 비		예 비 비	
차인(A-B)		차인(A ' -B ')		차인(A " -B ")	

2009년도 지방공사·공단 예산서

지방공사·공단 명

目 次

1. 사업운영계획
2. 예산총칙
3. 예산총괄표
4. 사업예산
 - 사업예산총괄표
 - 수익적수입
 - 수익적지출
5. 자본예산
 - 자본예산총괄표
 - 자본적수입
 - 자본적지출
6. 이월금예산
 - 이월금예산총괄표
 - 이월금수입
 - 과년도 미지급금
7. 자금운영계획
 - 수입자금
 - 지출자금
8. 계속비조서
9. 채무부담행위조서
10. 재고자산 구입 및 사용조서
11. 중요자산 취득 및 처분조서

1. 사업운영계획

가. 지하철공사

구 분		단위	당년도	전년도	증 감	비 고
1. 시설 현황	1) 시설연장 2) 정 차 장 3) 노 선 수 4) 전동차량 보유수 5) 건설기간 6) 건설투자비 7) 차량기지	km 개소 개 량 ~ 억원 개소				
2. 업무 현황	1) 영업구간 2) 열차편성 3) 운영시격 평 시 R · H 4) 운행회수 5) 열차주행거리 6) 연 수송인원 7) 1일 수송인원 8) 1일 운수수입 9) 도시철도 채권발행액 10) 지하철 수송분담율	km 량/회 분 분 회/일 km 백만명 천명 천원 백만원 %				
3. 건설	1) 건설연장 2) 건설기간장 3) 건설투자비 4) 정차장설치(신설) 5) 전동차구입 6) 차량기지신설	km ~ 억원 개소 량 개소				
4. 인력 관리 계획	계	명				
	1) 일반직 2) 별정직 3) 기능직 4) 기 타 직 5) 무기계약근로자 6) 기간제근로자 등	" " " " " "				
	※ 노조원수	"				
5. 자산평가액		억원				

나. 도시개발공사

구 분		단위	당년도	전년도	증 감	비 고
1. 주택보급 현 황	1) 행정구역총세대수(A) 2) 주택세대수(B) 3) 무주택세대수(C) 4) 주택보급율 $B/A \times 100$ 5) 무주택율 $C/A \times 100$	세대 " " % "				
2. 택지조성 및 주택 건설계획	1) 용지조성 및 주택건립계획 ○ 택지조성면적 ○ 공단용지조성면적 ○ 기타용지조성면적 ○ 주택건립면적 2) 평균매출액 ○ 택 지(m^2 당) ○ 공단용지(") ○ 기타용지(") ○ 주 택(") 3) 평균매출원가 ○ 택 지(m^2 당) ○ 공단용지(") ○ 기타용지(")	천 m^2 " " " 천 m^2 (가구) 천원 " " " " " 천원 " " "				
3. 기타사업 계 획		"				
4. 인력관리 계 획	계 1) 일 반 직 2) 기 능 직 3) 기 타 직 4) 무기계약근로자 5) 기간제근로자 등	명 " " " " "				
5. 자산평가액		억원				

다. 시설관리공단

구 분		단위	당년도	전년도	증 감	비 고
1. 시설 현황	1) 공영주차장수	면/개소				
	2) 주차빌딩수	"				
	3) 상가관리	개소/m²				
	4) 공원관리	개소				
	5) 견인차량 보유대수	대				
	6) 수영장관리	m²/개소				
	7) 장묘관리	m²/개소				
	8) 가로등관리	개/노선/동				
2. 업무 현황	1) 1일주차대수	대/일				
	2) 연간 주차요금수입	백만원				
	3) 연간 상가관리수입	"				
	4) 연간 공원관리수입	"				
	5) 연간 주차위반 견인수입	"				
	6) 견인차량 1일견인실적	대/일				
	7) 연간 수영장관리수입	백만원				
	8) 연간 장묘관리수입	"				
	9) 연간 가로등 관리수입	"				
3. 건설 계획	1) 주차장 신설·확장	면/개소				
	2) 장묘장 신설·확장	m²/개소				
	3) 견인차량 구입보강	대				
	4) 상가시설 확장	m²/개소				
	5) 장묘시설 확장	m²/개소				
4. 인력 관리 현황	계	명				
	1) 임 원	"				
	2) 일 반 직	"				
	3) 기 능 직	"				
	4) 기 타 직	"				
	5) 무기계약근로자	"				
	6) 기간제근로자등	"				
	노 조 원 수	"				
5. 자산평가액		억원				

라. 주차관리공단

구 분		단위	당년도	전년도	증 감	비 고
1. 시설 현황	1) 주차장수	개소				
	2) 주차면수	면				
	3) 주차빌딩	면/개소				
	4) 견인차량 보유대수	대				
	- 대형(5톤이상)	"				
	- 중형(3.5톤이하)	"				
	- 소형(2.5톤이하)	"				
2. 업무 현황	1) 1일주차대수	대				
	2) 연간 주차요금수입	백만원				
	3) 주차장 가득율	%				
	4) 주차회전율(1일1면당)	대				
	5) 1인당 주차관리면수					
	- 노상주차장	면				
	- 노상주차장	"				
	- 주차빌딩	"				
	6) 주차위반 견인수입	천원/년				
	7) 견인차량 1일 견인실적	대/일				
3. 건설 계획	1) 주차장 신설·확장	대/일				
	- 노상주차장	면				
	- 노외주차장	"				
	2) 견인차량 구입보강	대				
4. 인력 관리 현황	계	명				
	1) 임 원	"				
	2) 일 반 직	"				
	3) 기 능 직	"				
	4) 기 타 직	"				
	5) 무기계약근로자	"				
	6) 기간제근로자등	"				
	※ 노조원수	"				
5. 자산현황		억원				

2. 예산총칙

제1조(총칙) 2009년 지방공사 ○○의 예산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2조 2009년 지방공사 ○○의 예산은 다음과 같다.

○ (관) 및 (항)별로 작성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합 계		합 계	
소 계		소 계	
1. 사업수익 가. 영업수익 나. 영업외수익 다. 특별이익		1. 사업비용 가. 영업비용 1) 재료비 2) 인건비 3) 의료교육연구비 4) 관리비 5) 수탁진료사업비 나. 영업외비용 다. 특별손실 라. 법인세등 마. 예 비 비	
소 계		소 계	
2. 자본수입 가. 투자자산 나. 고정자산매각수입 다. 고정부채수입 라. 자본및잉여금수입 1) 자본잉여금 2) 이익잉여금 3) 기타자본적수입		2. 자본지출 가. 투자자산 나. 유형자산 다. 무형자산 라. 부 채 1) 유동부채 2) 고정부채 마. 기타자본적지출 바. 예 비 비	
소 계		소 계	
3. 이월금수입 가. 이 월 금 나. 미 수 금 다. 기타미수금		3. 과년도미지급금 가. 미지급금 나. 미지급비용	

제3조 사업수익 ○○○천원에 대하여 사업비용 ○○○천원의 부족액 ○○○천원과 자본수입 ○○○천원에 대하여 자본비용 ○○○천원의 부족액 ○○○천원은 이월금수입 ○○○천원중 과년도 미지급금 ○○○천원을 제외한 잔액 ○○○천원으로 충당한다.

제4조 사장은 출연금을 제외한 예산을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규정 제○○조에 의하여 계정과목 상호간에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인건비, 부채상환금, 업무추진비는 전용할 수 없다.

제5조 사장은 사업에 대한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고 그 한도액은 ○○○천원으로 한다.

제6조 출연금을 제외한 예산은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제2조의 자본예산중 공사, 제조 또는 구매중에 있는 예산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을 위하여 ○○○로부터 지방공사○○에 보조하는 금액은 ○○○천원이다.

제8조 사채발행과 관련 기채의 목적, 한도액, 기채의 방법, 이자율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기채목적	한도액	기채방법	이자율	상환방법
	천원		%	

제9조 계속비의 세부내역은 별첨 “계속비조서”와 같다.

제10조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과 기간 및 한도액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서”와 같다.

제11조 중요자산 취득 및 처분은 별첨 “중요자산취득 및 처분조서”와 같다.

제12조 사장은 예기치 않은 상환 변동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

2008년 ××월 ××일

지방공사 ×××사장 ×××